

2009年 8月 博士學位論文

골프産業 認識에 따른 政策滿足度에 關한 研究

朝鮮大學校 大學院 土 木 工 學 科 朴 漢 生



골프産業 認識에 따른 政策滿足度에 關한 研究

A Study on Policy Satisfaction according to recognition of Golf Industry

2009 年 8 月 25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土 木 工 學 科 朴 漢 生



골프産業 認識에 따른 政策滿足度에 關한 研究

指導教授 吳 在 和

이 論文을 工學博士學位 申請論文으로 提出함.

2009 年 4 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土 木 工 學 科 朴 漢 生



차 漢 生의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委員	長	朝鮮大學校	教授	 (印)
委	員	全南大學校	教授	 (印)
委	員	朝鮮大學校	教授	 (印)
委	員	朝鮮大學校	教授	(印)
委	員	朝鮮大學校	教授	(印)

2009年 6月

朝鮮大學校 大學院



목 차

표 목 차j	iv
그 림 목 차	vi
ABSTRACT	⁄iii
1.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선행연구 동향	3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2. 골프장 시설에 관한 이론고찰	7
2.1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	7
2.1.1 도시관리계획 주민 제안	10
2.1.2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11
2.1.3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13
2.1.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5
2.2 골프장 입지 및 시설기준 2	20
2.2.1 설치 가능 용도지역	20
2.2.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	21
2.2.3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24
2.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6
2.3 골프장시설의 입지특성 2	28
2.3.1 토지의 적성평가 개념	28

2.3.2 평가체계Ⅱ 평가절차	31
2.3.3 토지의 적성평가 단위	38
3. 골프장 현황 및 시설입지 특성	46
3.1 골프장 및 내장객 현황	47
3.1.1 국내 골프장 현황	47
3.1.2 골프장 내장객 현황	53
3.2 골프장 입지특성 분석	55
3.2.1 시설입지특성 사례 및 DB구축	5
3.2.2 우선보전입지 분석	60
3.2.3 개발가능지역 분석	62
3.2.4 시설의 입지특성 분석 결과	65
4. 골프산업 인식에 따른 산업정책 만족도	68
4. 골프산업 인식에 따른 산업정책 만족도 4.1 설문조사 및 요인분석	
	68
4.1 설문조사 및 요인분석	68 68
4.1 설문조사 및 요인분석 ····································	68 68 71
4.1 설문조사 및 요인분석 4.1.1 설문조사 개요 4.1.2 요인분석 결과	68 68 71 76
4.1 설문조사 및 요인분석 4.1.1 설문조사 개요 4.1.2 요인분석 결과 4.2 골프산업에 대한 인식차이 고찰	68 68 71 76 76
4.1 설문조사 및 요인분석 4.1.1 설문조사 개요 4.1.2 요인분석 결과 4.2 골프산업에 대한 인식차이 고찰 4.2.1 인구통계학 특성별 산업인식 차이	68 71 76 76 82
4.1 설문조사 및 요인분석 4.1.1 설문조사 개요 4.1.2 요인분석 결과 4.2 골프산업에 대한 인식차이 고찰 4.2.1 인구통계학 특성별 산업인식 차이 4.2.2 참여 장소별 산업인식 차이	68 68 71 76 76 82 83
4.1 설문조사 및 요인분석 4.1.1 설문조사 개요 4.1.2 요인분석 결과 4.2 골프산업에 대한 인식차이 고찰 4.2.1 인구통계학 특성별 산업인식 차이 4.2.2 참여 장소별 산업인식 차이 4.2.3 골프산업인식에 대한 소결	68 68 71 76 76 82 83 84
4.1 설문조사 및 요인분석 4.1.1 설문조사 개요 4.1.2 요인분석 결과 4.2 골프산업에 대한 인식차이 고찰 4.2.1 인구통계학 특성별 산업인식 차이 4.2.2 참여 장소별 산업인식 차이 4.2.3 골프산업인식에 대한 소결 4.3 골프산업 정책에 대한 만족도 고찰	68 68 71 76 76 82 83 84 84



4	.4	골프	산업	정책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90
	4.4	.1	골프	산업인	식과 정] 책만족도	관계	 90
	4.4	1.2	산업의	인식에	따른	정책만족도	: 소결	 94
5.	결	론		••••••				 ·· 95
참	7.	문	허.					 98



표 목 차

丑	2.1 도시계획시설 분류	. 8
丑	2.2 광역시설 분류	. 8
丑	2.3 체육시설(골프장) 사업추진절차	9
丑	2.4 지형도면의 작성	14
丑	2.5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및 고시	14
丑	2.6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17
丑	2.7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18
丑	2.8 골프장규모별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	25
丑	2.9 골프장업 필수시설 기준	27
丑	2.11 토지의 적성평가체계 비교	30
丑	2.12 보전대상지역 기준 및 자료	32
丑	2.13 개발가능지역 평가지표	32
丑	2.14 대체가능 평가지표	33
丑	2.15 평가지표 조사방법	33
丑	3.1 국내 골프장 현황	48
丑	3.2 연도별 골프장 현황	49
丑	3.3 지역인구분포별 골프장 현황	50
丑	3.4 행정구역별 골프장 공급과잉 분석	52
丑	3.5 국가별 골프장 현황비교	53
丑	3.6 연도별 골프장 내장객수 및 증감률	54
丑	3.7 지역별 골프장 이용객 추이 및 증감률	55
丑	3.8 사례골프장 일반 현황	56
丑	3.9 지목별 토지현황	57
丑	3.10 소유별 토지현황	58
끂	3.11 데이터별 사용용도	59



丑	3.12 생태자연도상위등급 비율 및 점수	63
丑	3.13 공적규제지역 비율 및 점수	64
丑	3.14 보전대상지역 분석결과	66
丑	3.15 종합적성등급	66
丑	3.16 토지적성평가 종합	67
丑	4.1 조사대상자의 특성	69
丑	4.2 골프산업인식 관련 변수	70
丑	4.3 골프산업정책 만족도 관련 변수	71
丑	4.4 다변량분석의 적용 기법	72
丑	4.5 골프산업인식의 요인분석 결과	74
丑	4.6 골프산업정책 만족도의 요인분석결과	75
丑	4.7 성별에 따른 산업인식	76
丑	4.8 연령에 따른 산업인식의 차이	78
丑	4.9 월수입에 따른 산업인식의 차이	7 9
丑	4.10 골프경력에 따른 산업인식	81
丑	4.11 참여 장소에 따른 산업인식의 차이	82
丑	4.12 성별에 따른 산업정책의 만족도	84
丑	4.13 연령에 따른 산업정책의 만족도	85
丑	4.14 월수입에 따른 산업정책의 만족도	86
丑	4.15 골프경력에 따른 산업정책의 만족도	88
丑	4.16 참여 장소에 따른 골프장의 만족도	89
丑	4.17 인프라 구축 만족도의 다중회귀분석결과	91
丑	4.18 정보기술개발 만족도의 다중회귀분석결과	92
$\overline{\Omega}$	/ 10 시자 하미 및 트기으키 마조디이 디즈히긔 브서	œ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6
그림	2.1 도시관리계획 절차	9
그림	2.2 그린벨트구역내 관리계획 절차	10
그림	2.3 주민 제안 처리절차	11
그림	2.4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	13
그림	2.5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15
그림	2.6 단계별 집행계획	16
그림	2.7 사업집행을 위한 보상계획	16
그림	2.8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19
그림	2.9 토지의 적성평가 개념	29
그림	2.10 토지의 적성평가 절차	31
그림	2.11 필지를 기반으로 한 DB구축	40
그림	2.12 격자를 기반으로 한 DB구축	41
그림	3.1 지역별 골프장 공급현황	48
그림	3.2 골프장 현황 및 인구구성비 적용	50
그림	3.3 골프장 및 내장객 증가전망	53
그림	3.4 지목별 토지현황	58
그림	3.5 소유별 토지현황	58
그림	3.6 생태자연도 분석도	61
그림	3.7 임상도 분석도	61
그림	3.8 표고 분석도	62
그림	3.9 경사 분석도	62
그림	3.10 생태자연도상위등급 비율	64
그림	3.11 공적규제지역 비율	64
그림	3.12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65



그림	3.13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6
그림	3.14	종합적성등급	67
그림	3 15	투지적성평가 종합	67



ABSTRACT

A Study on Policy Satisfaction according to recognition of Golf Industry

By Park, Han-Saeng

Advisor: Prof. Oh, Jae-Hwa

Major in Civi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grasped the location trend of golf course facilities to check the suggestion of harmony that corresponds to the constant progress of golf industry policy and demand of increased golf population, formation of sympathy of the nation and harmony with the realistic situation in the growth of golf industry, clarified difference in recognition of golf industry in order to clarify the influence that demographic and statistical property, participating place and recognition has on the satisfaction in golf industry. The result is as follows.

1. Analyzing the trend of location of golf course, the propensity to be located in farming and management area which hardly have the pertinent matters of preserving area was checked notably. The result of evaluation was judged to be C for which management plan can be established.

However, if all areas on ecological nature among preserving area is included in separate management area, it is possible to prepare separate preservation measure so as to minimize the development and to make it included in the area drafted for urban control plan.



2. The recognition of golf industry as per demographic and statistical property was found to be higher industrial recognition in all factors for men than women. There was difference in industrial recognition factor of economy, sociality, culture, exchange and environments with respect to age and golf career.

It seems that men are still more interested in the property of golf industry with recognition than women and higher accessibility. Age emerges as important variable. It seems that recognition of golf industry is gradually popularized from older class to youngsters. Thus, golf course with low price like popular golf course seems necessary.

3. When it comes to satisfaction per demographic and statistical property, men are more satisfied than women. In the age, 50s' are most satisfied in the industrial policy. The class with average income of Won 6~8 million is most satisfied in infra construction,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market expansion and investment inducement. With respect to satisfaction in industrial policy as per golf career, the longer career is, the more they are satisfied in the policy of golf industry.

When people are in social position where they are socially stabilized with leisurely life and economic abundance, they show high recognition of golf industry and satisfaction in policy. It was found that those earning more than Won 8 million a month require better environment and the golf customers with shorter career are less satisfied. Thus, the policy that enables novices to easily approach the market of golf industry is urgent.

4. The satisfaction in golf industry depending on the participating place shows notable difference in infra construction,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market expansion and investment inducement.



It was found that the customers of golf course are more satisfied than those of golf exercise center. Thus, the distinct strategy to enhance the satisfaction of customers in golf exercise center would be necessary to induce more customers to golf industry. The distinction in economic policy rather than institutional aspect would be necessary by opening the accessibility from golf exercise center to golf course.

5. When it comes to the opinion on the policy satisfaction in golf industry recognition, it is found that they are more satisfied in policy if golf industry recognition is higher. With respect to satisfaction in golf industry policy as per demographic and statistical property, participating place, golf industry recognition, the gender, age, average income and golf career were the main variables in demographic and statistical property.

Thus, it is judged that the strategy of golf industry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by considering that economy and environment are influential factors in the variables of golf industry recognition.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골프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골프장 영업실적 이외 부지에 대한 부동산적 가치, 회원권 등으로 골프장 건설은 황금알을 낳는다라고 인식될 만큼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 보통 골프장은 18홀 규모를 건설하는데 부지비용을 포함 700억~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므로 대기업 위주로 건설되고 있다(GMI 골프디자인, 2006).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생활개선, 고용증대 효과, 농·수산물 판매촉진, 외국 골프관광객 유치에 따른 외화획득, 건설 및 기자재, 골프용품, 연관산업 육성, 유휴국토 개발과 가용국토 확대, 산림녹화 및 조경미화 등(손종열 등, 1998; 양봉식, 2004; 이보형, 1999)의 추가적인 부가가치가 창출되므로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해 매우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골프장유치에 대한 지나친 과잉경쟁 문제, 골프장산업의 관계법령 정비문제, 시설 및 장비규정 그리고 유관부처와의 협조구축 등의 현안이 제시(지민준, 2007; 기획재정부, 2007)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세제개선문제에만 소폭 개선됐을 뿐 국가기반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골프장산업의후속적 추진정책은 미비한 것이 국내 골프장산업의 현실이다(주영환, 2007; 한정훈, 2007).

골프산업의 일반적인 인식은 골프를 선호하는 개인적인 욕구 추구 및 골프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비판적 시각 측면이 병존하고 있다.

골프애호가들이나 골프 관련 사업자들은 골프 경기가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운동경기로서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점차 그 수요가 증대되는 주요한 레저 분야라는 점에서 향후 건전한 스포츠 분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골프 산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90년대 말부터 스포츠산업의 단순한 한분야로서 골프산업이 인식되는 것에서 벗어나 최근 스포츠 산업의 경향은 건강과 체력 증진 또는 오락 등의 전통적인 관습에서 벗어나 경제적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분류되어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하여 이윤의 극대화를 얻고자 하는 스포츠 산업 측면의 가치로 전환하고 있는 것도 골프산업의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에 환경 보호 측면이나 지역주민들은 골프장이 자연환경 훼손과 환경오염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고, 골프가 일부 특수계층을 위한 사치성 스포츠로서 사회수성원간 계층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주목하여 상반된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송윤경, 2000). 또한 골프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나 산업적인 요소에 중심을 두고 논지를 전개하다보니 국민의 다수를 위한 공공적인 측면의 정책의 부재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스포츠 산업정책에 있어서 1990년 초까지만 해도 스포츠 산업정책이 전무후무하였으며 그나마 몇몇 시행정책들도 정치상황에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 온 것도오늘날 골프산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초래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골프산업의 폭발적인 성장 시기에 골프산업정책이 복지사회의 이념구현 및 국민생활체육 기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의 스포츠 참여에 대한 욕구충족뿐만 아니라, 골프인구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제시하여 골프산업의 정책이 산업의 요소의 기반아래 공공적인 정책적인 요소가 가미된 골프산업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골프인구의 증대에 따른 수요에 상응하면서 국민의 공감대 형성 및 현실적인 여건과의 조화에 대한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골프산업에 대한 인식 차이를 규명하고 인구통계적인 특성, 참여 장소, 골프산업에 대한 인식이 골프산업 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여 골프산업 인식에 따른 골프산업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규명하여 이를 토대로 체계화되고, 과학적이며, 검증된 자료를 근거로 적합한 골프산업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선행연구 동향

도시계획시설의 입지와 관련한 일련의 연구들은 입지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최적입지를 선정하는 계량적 분석 및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주로 도시계획 시설을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접근성과 형평성에 중점을 두고 입지 사항을 주요 논점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사례 시설인 골프장시설의 개별 입지 와 관련한 국내외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포괄적 차원에서 골프장 관련 선행연구와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입지 방법론에 관한 개별 시설의 주요 실증연구 및 골프장 시설의 입지를 평가하는데 주로 이용되는 토지적성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형주(2003)와 한정훈(2005)은 골프산업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에서 소득이 높은 고소득자가 인프라구축과 정보기술개발에서 더 높은 만족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장경로(1999)는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른 골프장 환경 및 만족도 분석을 통해 인구 특성에 따라 관중의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경기장 환경에 따라 그들의 향후 경기관람의 의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 최창호(1998)는 참여 장소가 골프 활동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통해 참여 장소가 골프 활동의 재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바가 있다.

이외에도 김형주(2003)의 결과에 따르면 정보기술개발 면에서 연령, 수입에서 문화성과 사회성에서 골프산업인식 변수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재 기 등(1997)의 연구결과를 보면 상업 스포츠시설 이용자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조사연구에서 현재의 시설을 이용하게 된 이유와 현재의 종목을 선 택하게 된 동기, 연령, 성별, 월소득 등을 시설만족도의 주요 결정 요인으로 결 론내리고 있고, 이덕성(1997)의 연구 결과에서도 골프경력, 이동수단, 월평균수 입, 연령대를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한편 토지적성평가 관련연구는 국토관리 차원에서 토지적성평가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채미옥, 2001)가 처음으로 시도되었고,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구체적인 토지적성평가 방법과 기준을 도출하는 연구가 추가로 진행되었다(채미옥·오용준, 2002).

조동규(1979)는 지형, 지질분류도, 경사 분류도, 토양분류도, 식생 분류도를 나타낸 자연입지평가도와 교통입지분류도, 인구밀도분류도 등을 나타낸 사회경 제적 입지 평가도를 항목별 지도로 작성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검토 하였으며, 황한철(1997)은 표본농지조사를 통하여 토성, 경사도 등의 물리적 토 지특성만이 아니라 농지규모, 인근 마을과의 거리, 단지의 규모 등 평가요인을 수량화하여 농지 적성도를 5등급화 하는 방법도 검토하였다.

산림청(2000)에서는 산지전용타당성 평가인자 및 지표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형, 지질, 수질환경, 식생·생태환경, 사회·문화·환경을 평가하여 등급을 구분하는 방법을 연구하였으며, 채미옥(2003)은 지역 고유의 토지적성평가 지표를 분석하고 그 영향 등을 분석한 바 있다.

특히 국내의 환경성 평가 관련 연구(전성우, 2004; 손학기, 2000; 김윤종 외, 2000)에서는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 공간적·통계적기법을 활용하여 동·식물의 다양성, 산림비율, 자연경관, 물리적 특성, 수자원환경지표 등이 활용되고 있다.

한편 외국의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연구로는 미국의 토지평가 및 지역평가와 일본의 백지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들 수 있다.

미국의 토지평가 및 지역평가는 종래의 토양이나 경사도 등의 물리적 요소 중심의 토지적성평가에서 탈피하여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나 개발압력, 문화적 요건,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장점이 있으나, 점수값 결정이나 가 중치 부여에 있어 주관적 요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일본의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의 적성을 토지보전, 수자원 보전, 생태계보전, 경관보전기능으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제도화되지 못하고 학술적 연구에 그치고 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 특성 파악을 위한 선행 연구 중 시설의 입지론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국토개발연구원(1988)과 박문옥(1990)이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소도읍 중심지의 입지시설을 다양한 분류방법을 통하여 분류하고



중심지내 인구규모와 시설과의 상호비교와 중심지내 입지시설의 분포특성을 규명하여 각종 공공시설의 입지성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김광식(1988)은 도시공공서비스시설을 대상으로 공간적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입지모형 탐색, 최적입지 도출, 비선호시설의 공급에 따른 저항요인을 규명, 도시시설 중혐오시설의 입지기준과 실제적인 입지실태 분석을 실시하여 도시 서비스시설 공급기준을 설정한 바 있고, 김영(1991)은 편익시설을 중심으로 시설별 접근성과 입지특성에 의한 수학적 모형을 제시하고, 편익시설 배치모형 설정 및 모형유용성을 검증하였다.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3단계 과정 절차를 거쳐 진행하였다.

첫째, 제1단계로 골프장 사업을 위한 행정계획 단계인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 단위계획의 입안과 결정 절차, 골프장의 입지 파악을 위한 토지의 적성평가 등 에 관한 이론을 고찰하였다.

둘째, 제2단계로 골프장 공급현황과 골프장 내장객 현황 파악, 행정구역별로 골프장 공급과잉에 따른 진단 및 골프장의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였다.

셋째, 제3단계로 골프장과 연습장을 방문한 이용객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이용하여 골프산업에 대한 인식과 골프산업정책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자료 수집을 위한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방식을 사용하였다. 즉 주제와 관련된 석·박사 학위 논문, 사단법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정기간행물 및 골프 관련단체 비정기 간행물, 골프와 관련된 서적, 일간신문들의 문헌을 통해 이루어 졌으며, 관련 뉴스보도 자료, 신문기사, 골프 관련 기관의 인터넷수록 정보 등도 참고자료로 이용하였다. 그리고 미래 골프인구 및 지역분포와 관련된 자료는 통계청, 각 시도별 지방자치 정보 등을 이용하였다.

아울러 골프장과 연습장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조사 대상자에게 배포한 후 자기평가기입법에 의해 설문 내



용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한 다음, 완성된 설문지를 즉각 회수하였다. 다만, 자료의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무응답 등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제외하였다. 또한 분석 가능한 자료를 컴퓨터에 개별 입력시킨후 Windows for SPSS V.12.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자료 분석을 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통계기법은 평균 및 표준편차, 독립표본 t-test, 일원변량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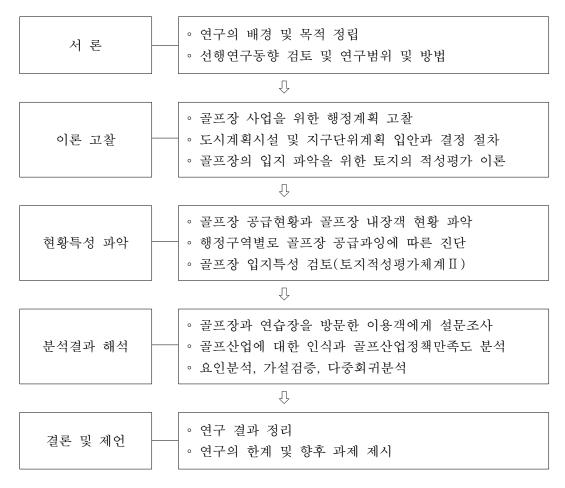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2. 골프장 시설에 관한 이론고찰

2.1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

우리나라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단위시설이나 사업이 통일되고 종합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므로써 도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후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의 제반 종류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고찰될 수 있다.

기반시설이라 함은 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 한 53개 시설을 기반시설로 지정하였는데,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도시계획시설에 한해서는 도 시계획시설을 다시 세분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한편 단위 도시계획시설의 영향범위가 광범위한 경우에는 협력관계가 절실한데, 2개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구역 안에서 광역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정의되면서, 두개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에 걸쳐서 설치되는 시설이나 두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광역시설로써 지칭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외에 광역적 시설에 대한 언급은 유일하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광역적 도시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이 언급 되어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된 바 있듯이 광역시설은 주로 규모의 경제성이 큰 시설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데, 2개 이상의 도시계획구역에 걸쳐서 설치하는 12개의 시설은 주로 교통운수시설과 유통 및 공급시설에 속하며, 후자의 2개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14개의 시설은 주로 보건위생시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시설들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에서 제시하는 7개의 시설기능으로 분류하면,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구분되며 본 연구의 사례가되는 골프장은 공공·문화체육시설에 속한다.

표 2.1 도시계획시설 분류

구 분	시 설 종 류
그트기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교통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
T 3 3 日 7 2	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고고무취케ㅇ기서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HL-i) 기 사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재시설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표 2.2 광역시설 분류

	시 설 명
2개 이상의 특별시, 광	도로, 철도, 운하, 광장, 녹지,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역시, 시 또는 군의 관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 하수도
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제외)
	항만, 공항, 자동차정류장, 공원,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운
2개 이상의 특별시, 광	동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역시, 시 또는 군이 공	청소년수련시설, 유수지,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도축
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장,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함), 폐기물처리시설, 수질
	오염방지시설, 폐차장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골프장은 도시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는 시설은 아니므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설치한다.

즉, 단일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9홀 이하 골프장)나 체육시설(골프장)로 시설 결정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단계를 거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거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관광·휴양형) 지정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구 분	단 일 시 설	복 합 시 설
행정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3 3 711 = 1	조기계탁시한 현정	제2종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수립
사업계획 사업계획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사업계획	(건축허가 등 협의의제)	(해당 인·허가 협의의제)
사업시행	공사착공 및 준공	공사착공 및 준공

표 2.3 체육시설(골프장) 사업추진절차

타당성검토/토지적성평가 시행요구 도시관리계획변경요청 (시행자 → 시장·군수) (사장·군수/시장·군수 → 시행자) 도시관리계획안(관리지역 용도세분 및 도시계획시설결정)공고 (시장 · 군수) 괸련기관 협의 시 ·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장 · 군수) (시장 · 군수) 도시(군)관리계획변경결정 요청 도 관계부서/유관기관 협의 (시장·군수→특별·광역시장) (특별·광역시장→관계부서/유관기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변경 · 결정고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림 2.1 도시관리계획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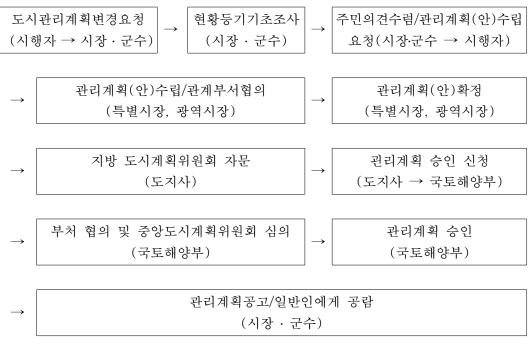


그림 2.2 그린벨트구역내 관리계획 절차

2.1.1 도시관리계획 주민 제안

일반적으로 골프장은 사업시행자가 도시관리계획 입안자에게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방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수행하게 된다.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을 받은 건설교통 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을 도시 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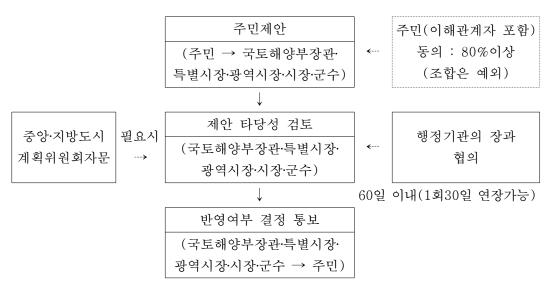


그림 2.3 주민 제안 처리절차

2.1.2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입안제안에 대한 반영여부가 결정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데,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미리 인접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경우나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경 우에는 인접한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때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 안할 자를 정하지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 역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2개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나,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일정 기한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정요구에 따라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시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지역 인구 밀도, 토지이용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되게 입안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작성방 법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검토와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입 안하는 구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완료되어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 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또는 토지의 적 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 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청취의 기한을 명시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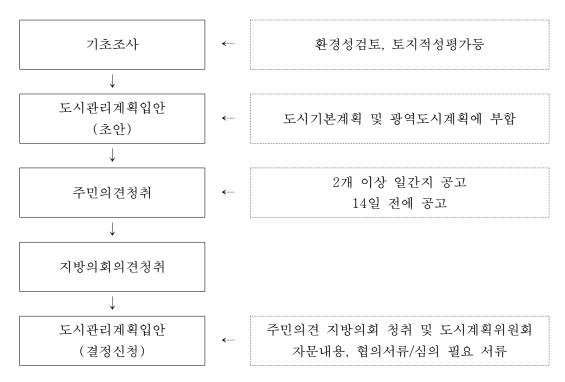


그림 2.4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

2.1.3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는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 2.4 지형도면의 작성

구 분	축 척	비 고
지형도면	1/500~1/1,500, 녹지지역안의 임야 와 관리·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은 1/3,000~ 1/6,000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데이 터베이스가 구축된 경우 사 용가능, 지형도가 없는 때에 는 해도, 해저지형도를 갈음
도시지역 외 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되지 아니한 경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 하지 아니하고 도시 관리계획의 고시로써 지적고시로 갈음	1/500~1/1,500, 독지지역안의 임야 와 관리·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으 1/3 000~ 1/6 0000로 도시	_

자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영 제27조 재정리

한편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은 상실되는데, 이 때에는 지체 없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

표 2.5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및 고시

T	보 분	기	산	일
종전	2000.7.1 이전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2000.7.1	
도시계획법	2000.7.1 이후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	릭시설 결정	고시일
종전	설치되거나 그 입지에 관한 고시가 된	2003.1.1		
국토이용관리법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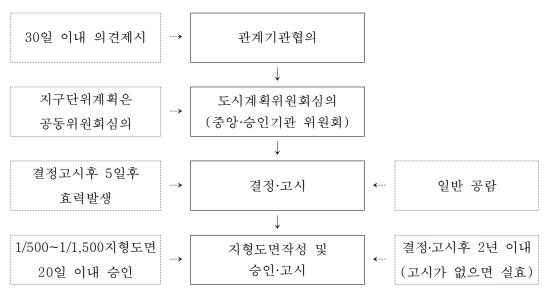


그림 2.5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

2.1.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인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도지사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송부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송부를 받았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계별집행계획은 제1단계집행계획과 제2단계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고된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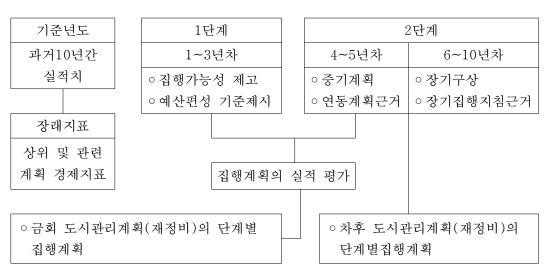


그림 2.6 단계별 집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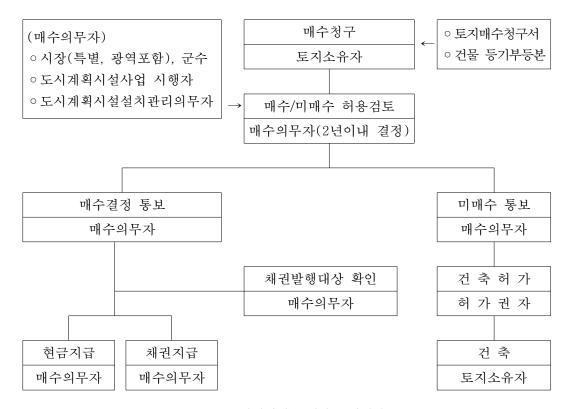


그림 2.7 사업집행을 위한 보상계획



한편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구역안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며, 도시계획시설사업이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2개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이상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표 2.6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구		분	사 업 시 행 자		
관할구역 안의 도시계획시설사업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2개이상 특별.광역 협의된 경우		협의하여 지정한 자			
시·시·군 관할구역	협의가	같은 도의 관할	관할 도지사		
에 걸친 도시계획	되지	2개이상 시·도에	그드케아비자파이 기저친 기		
시설사업	않는 경우	걸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자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		
인정되는 도시 계획시설사업			시장 또는 군수 의견청취)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			드키계(계차 떠느 그스 이거워킹		
정되는 도시계획 시	설사업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의견청취)			

자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영 96조 재정리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 장,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때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표 2.7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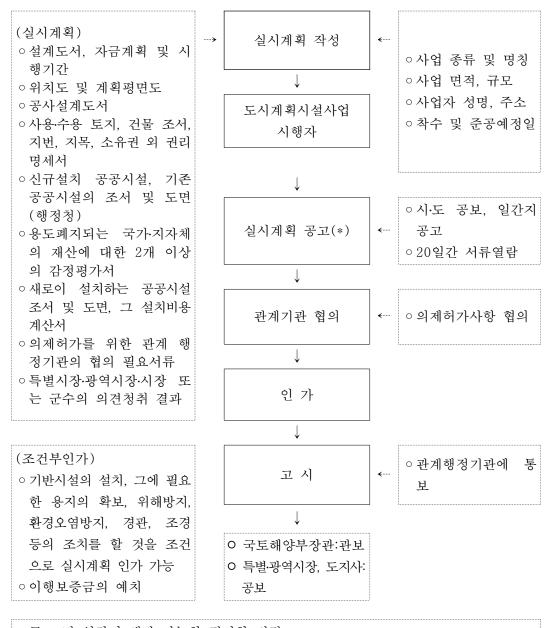
구 분	신청절차 및 자격요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 종류 및 명칭
	-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행정청이 아닌 자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자금조달계획
○ 지방공기업법의 지방공사 및 공단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
○타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
이 포함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	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
ㅇ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	하고,
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
고자 하는 자	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자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영 96조 재정리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설치와 용지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 가할 수 있으며,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 용한다.



- * 공고 및 열람이 생략 가능한 경미한 변경
 - -사업시행지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사업내용변경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의 변경

자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제91조 재정리

그림 2.8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2.2 골프장 입지 및 시설기준

2.2.1 설치 가능 용도지역

골프장을 신설하는 데는 입지 및 시설기준과 관련하여 다양한 관련 법규의 검토가 필요하다(부록1). 골프장은 도시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는 시설은 아니므로 도시기본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경우라면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설치하는데, 설치가 가능한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중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중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와자연녹지지역이다.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에 설치가 가능한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중 체육시설은 계 획관리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내에 설치가 가능한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 거 9홀 미만의 골프장은 유원지시설로 결정한 후 설치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그린벨트구역 내에서 설치가 가능한 행위(개발제한구역법령집제4조 2항)이나, 그린벨트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설치 가능하며, 100만㎡ 이상의 도시 자연공원구역에서도 6홀 이하의 규모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 의하면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골프장과 그 골프장 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의 설치가능하며, 회원제골프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중골프장 또는 간이골프장을 병설하여야 하고, 숙박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그 입지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그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로 이론적으로는 9홀, 18홀, 27홀이 가능하나 이 경우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선행해서 반영되어야 한다.



2.2.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면적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시장·공공청사·문화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항만·공항·유원지·유통업무설비·학교(대학·대학교) 및 운동장에 대하여 도 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 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도시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보전, 장래의 확장가능성, 주변의 도시계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미리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설정 또는 이전 등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특히 도시지역에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이나 건축물과 연계되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시



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서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 중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운동장과 실내골프연습장(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시설을 제외한다.

체육시설의 결정기준은 주요시설물의 주변이나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이용자의 접근과 분산이 쉬워야 하며, 다수의 이용자가 단시간 내에 집산할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지역간의 교통연결이 편리한 장소, 그리고 여러 시설을 집결시키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운영과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설을 분산시킬 수 있다.

또한 제1종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지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면 나머지 면적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아울러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규모는 지역적 특성, 입지여건, 경사도·표고 등의 지형여건, 설치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체육시설의 일반적인 구조 및 설치기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으로 설치하되, 그 규모는 시·군의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정하는데,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체육시설에는 그 기능에 따라 관중석, 관리시설,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설치가능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추가적인 설치 및 구조기준은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다만, 스키장은 ①과 ②를 적용하지 아니함).

- ①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경사도가 30도 미만이고 표고가 가장 낮은 지역인 산자락하단을 기준으로 30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하며 이경우 경사도 및 표고는 원지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② 산정 부근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③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경사면은 높이를 30미터 이하로 하고, 5미터 이하의 소단(폭은 1미터 이상)을 조성하여 녹지로 조성하고 원칙적 으로 체육시설 밖에서 보이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체육시설 부지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획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용도 구획을 추가할 수 있다.

- ① 체육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60퍼센트 미만으로 계획하여 야 하다.
- ② 체육시설이 아닌 건축시설의 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③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 녹지, 복원 녹지, 완충용 녹지 등으로 구획하고, 전체부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④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주차장·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계획 하여야 하다.

기반시설의 설치는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① 전체부지의 경계에서 국도·지방도·시도·군도, 그 밖에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의 폭은 폭 8미터 이상으로 하되, 보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진입도로의 폭이 8미터 (보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전체 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내(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 완료

된 체육시설은 전체 부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에서 확대하는 때에도 당해 체육시설의 진입도로의 폭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진입도로의 폭이 8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그 도로의 여건상 대형승합자동차의 교행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는 대기차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부지내 도로는 폭 4미터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③ 상수도시설은 체육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에 대하여 1인 1일 기준으로 150 리터 이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④ 발생하는 하수를 BOD 10ppm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사전환경성 협의에 따라 환경 관서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⑤ 폐기물 발생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시설(소각 장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주차장 등 필요한 기반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2.3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의 입지기준 · 환경보전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① 골프장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 일반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 취수장(상수원보호구역 미고시지역의 경우를 말한다)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km이내의 지역과 그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km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 대책지역 안에 위치하는 경우, 다만 특



별대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목장용지를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다음 취수장 설치이나 상수도원보호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목장용지로 조성된 지역인 경우, 골프장부지가 기존목장용지의 경계내의 위치하거나 경계 밖의 토지를 포함하는 경우로서 경계 밖의 토지가 기존 목장용지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목장 용지내 기존의 축산시설이 모두 폐쇄된 경우, 그리고 골프장 예정지 부지경계가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km)이상 이격된지역인 경우에 현재의 토지이용상태보다 환경상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를 기준으로 총 골프장면적이 총 임야면적(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것을 말하며, 그 면적은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총 골프장 면적 산정시 쓰레기매립지, 폐염전 부지, 간척지의 면적은 제외한다.
- ③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우
- ④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 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 인 경우. 다만, 골프장의 부지면적이 다음 표의 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산림에 대한 원형 보전지 확보율을 100분의 25미만 인 경우로 한다.

표 2.8 골프장규모별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

골프장 규모	면 적 기 준
○ 6홀미만	○6㎡의 면적에 3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 3천㎡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6홀이상 9홀미만	○34만㎡의 면적에 6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1만 5천㎡의 면적 을 추가한 면적
○9홀이상 18홀미만	○50만㎡의 면적에 9홀을 초과하는 1홀마다 2만㎡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18홀이상	○108만㎡의 면적에 18홀을 초과하는 9홀마다 46만 8천㎡의 면적을 추가한 면적



2.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골프장업은 불특정 자연인 또는 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하여 경영하는 등록체육시설업으로 특별·광역시장·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그 시설을 설치하고 준공 후 다시 특별·광역시장·도지사에게 등록을 필한 후 영업을 하는 체육시설업이다.

과거에는 국토이용계획변경 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계획 승인을 별도로 받았으나,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는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도입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를 받으면 골프장사업계획 승인이 의제된다.

다만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간 균형발전, 재해방지, 자연환경 보존 및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첫째는 대중골프장의 회원제골프장 변경제한으로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이나 등록한 대중골프장 시설을 회원제골프장 시설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입지제한으로 일반상수원의 경우에는 상류 유하거리 10km, 광역상수원의 경우에는 유하거리 상류 20km이내에 골프장 설치가금지되며, 상수원지역으로 고시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취수장으로부터 유하거리상류 15km, 하류 1km이내에 골프장의 입지가 금지되고, 시도 총 임야 면적기준골프장면적이 5%(시군구 기준 3%)를 초과하는 경우와 골프장 사업계획지 내의산림지 및 수림지 확보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우, 그리고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 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인 경우도 사업계획 승인이 제한된다.

한편 골프장 안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숙박시설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업종란 나목의 제한내용란의 (1)내지 (8)에 열거된 요건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도시계



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프장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첫째, 골프장사업계획지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이 아닌 경우

둘째, 골프장사업계획지가 광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40km이내의 지역, 일반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내의 지역, 취수장(공중이 이용하는 것에 한한다)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30km, 그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km내의 지역이 아닌 경우

셋째, 골프장사업계획지가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기준 1등급으로 고시된 하천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이내의 지역이 아닌 경우

넷째, 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예정부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녹지를 보전하도록 협의된 지역이 아닌 경우

표 2.9 골프장업 필수시설 기준

구 분	시 설 기 준
	○회원제골프장업 및 정규대중골프장업은 18홀이상, 일반대중골프장업은 9홀이
	상 18홀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이상 9홀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각 골프코스는 국내·외적으로 통용되는 통용되는 길이·폭 및 파수에 적합
	하여야 하되, 각 골프코스의 길이를 합한 총길이는 18홀인 골프장은
	6,000m, 9홀인 골프장은 3,000m, 6홀인 골프장은 2,000m를 기준으로 하며,
운동	지형에 따라 총길이의 25%범위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시설	○각 골프코스의 사이중 이용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은 20m이상의 간
	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m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 등 경
	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골프용구 운반기구를 갖추고 그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	○골프코스 주변 · 러프지역 · 절토지 및 성토지의 법면등에 조경을 하여야
시설	한다.



2.3 골프장 시설의 입지특성

2.3.1 토지의 적성평가 개념

토지적성평가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003년 1월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더불어 도입된 제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일부로 반영되었으며, 토지의 물리적·지역적·입지적 특성 등을 평가하여 관리지역의 세분과 더불어 기타 개발사업의 가능여부 등 토지이용계획에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기초수단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다.

토지적성평가는 지침에 제시된 평가지표만을 기초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시된 평가지표가 지역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다양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표를 추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실증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평가방법이 개발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개략적인 기준으로 활용 가능할 정도로 거시적이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구역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에 적용하기에는 평가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토지적성평가가 토지의 적성을 물리적 자연환경, 인문·사회적 환경 등의 측면에서 평가하여 구분함으로써 계획의 현실적합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생태적 토지이용계획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 평가결과가 도시관리계획의 기초뿐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의 기초정보로 활용되어지역전체의 생태적 공간 계획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전적성지표의다양화가 하나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평가지표는 지역 자체의 특성에 따라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토지적성평가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기초자료의 오류나부정확으로 인한 평가 결과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있다.



토지적성평가의 평가지표를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토지적성 평가의 특성상 객관적으로 쉽게 조사가 가능한지, 1/25,000이상의 정밀도를 요 하는 수치지도가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있는지, 시계열적으로 자료보완이 이루 어지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평가지표는 지역 자체의 특성에 따라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토지적성평가에 반영되게 하기 위해 기초자료의 구축가능성, 객관적 조사의 가능성 여부에 기초하여 지역별로 지형적·사회적 특성을 기준으로 평가지표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토지적성평가는 필지 단위로 실시되며 평가체계 I 과 평가체계 II 로 구분되는데,평가체계 I 은 관리지역의 세분을 위하여 실시하며,평가체계 II는 개별적인개발사업에 대하여 용도 지역·지구·구역의 지정·변경,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등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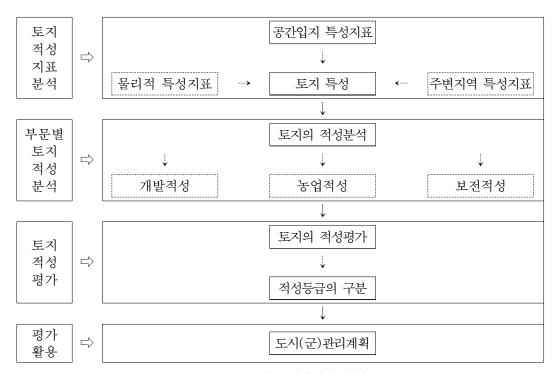


그림 2.9 토지의 적성평가 개념



평가체계 II 의 개략적인 절차는 평가체계 I 과 비슷하지만,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기초자료와 분석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적성평가를 하기 때문에 기본개념이나 평가방법, 기준 등이 평가체계 I 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

구 분	평 가 체 계 I	평 가 체 계 Ⅱ		
기본개념	○ 상대평가(가중치 적용)	○절대평가(가중치 비적용)		
기초자료	○ 대표지표와 대체지표	○용도지역별로 상이		
평가기준	○ 지자체별로 상이한 기준	○통일된 기준		
등급구분	○ 5개 등급	○ 3개 등급		
산정방법	○개발·농업·보전 적성값을 종합 산정	○개발적성값 만을 산정		
결과활용	○도시관리계획의 기초자료	○도시관리계획의 기초자료		
설탁활동 	○계획가 판단에 따라 개발·보전 결정	○개발·보전의 직접적인 판단기준		

표 2.10 토지의 적성평가체계 비교

첫째, 절대평가법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평가체계 I 은 상대평가를 택하고 있어 지표별로 당해지역의 자료를 분석하여 평가기준을 설정한다. 그리고 적성값을 기초로 등급을 구분할 때 당해지역의 필지별 적성값을 표준화하여 표준편차의 크기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다.

둘째, 평가체계Ⅱ는 지역별로 그 지역에 적합한 평가기준을 도출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없기 때문에 절대평가주의를 택하고 있다. 평가체계Ⅰ은 개발적성, 농업적성, 보전적성값을 산정하고 이를 종합해서 필지별 적성값을 구하지만, 그러나 평가체계Ⅱ는 모든 지역에서 토지적성평가지침에 제시된 단일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며, 개발적성값 만을 산정하여 등급 구분하므로 개발적성값의 크기가 개발을 할 수 있는 임계치보다 클 경우 개발을 허용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개발이 어렵다.

셋째, 평가체계Ⅱ는 A등급·B등급·C등급 3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평가체계Ⅰ은 5단계의 등급구분체계로 되어 있지만 평가체계Ⅱ는 적성값의 크기에 따라 개발과 보전의 판단기준으로 사용하며, 등급의 구분도 3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넷째, 평가체계 I 은 도시관리계획의 기초 정보로서 토지적성등급을 감안하여 계획가가 개발 또는 보전지역을 구분해서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평가체 게Ⅱ는 개발과 보전의 직접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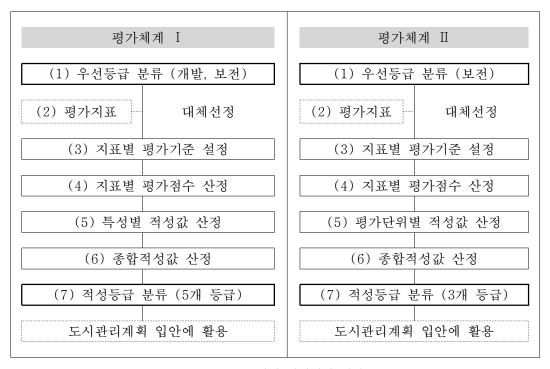


그림 2.10 토지의 적성평가 절차

2.3.2 평가체계Ⅱ 평가절차

1) 우선등급 분류

세부적인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도 보전성이나 생산성이 뚜렷한 필지는 세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보전등급(A등급)으로 분류한다.

우선보전등급으로 구분하는 필지는 생태자연도 1등급이나 별도관리지역, 임 상도 4영급 이상인 지역들이다. 다만, 보전대상지역 판정요소의 기초자료가 부 정확하여 현황과 다를 경우와 자연보전부문에 해당하는 지역 중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세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토지적성평 가를 실시하여 그 등급을 결정한다.

표 2.11 보전대상지역 기준 및 자료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	기 초 자 료	비고
○생태자연도 1등급, 별도관리지역	○ 생태자연도	1/25,000
○임상도 4영급 이상인 지역	○ 임상도	1/25,000
○국가하천·지방1급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 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인 지역	○ 하천현황도	_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동일수계지역내 1km 이내인 집수구역	○ 상수원보호구역현황도 ○ 집수구역도	1/5,000
○호소·농업용저수지 만수위선으로부터 500m 이내인 집수구역	○ 저수지현황도 ○ 집수구역도	1/25,000

2) 평가지표선정

토지적성평가체계Ⅱ의 개발가능지역 판정기준은 다음의 지표를 사용한다.

표 2.12 개발가능지역 평가지표

9 F 7 d	개발가능지역 판정기준				
용도지역	물리적특성 지역특성		공간입지지표		
녹지지역		도시용지비율 생태자연도상위등급비율			
관리지역	-211-	도시용지비율 경지정리면적비율	공적규제지역과의거리 공공편익시설과의거리		
농림지역	경사도 표고	보전임지비율 경지정리면적비율	· ㅎㅎ한탁시설파되기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자연도상위등급비율			
특수시설설치지역		공적규제지역비율	경지정리지역과의거리 공공편익시설과의거리		



다만, 지역현황을 고려하여 그 평가지표의 일부를 대체평가지표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지표군에 있는 다른지표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지표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부록2).

표 2.13 대체가능 평가지표

구 분		대	체	평	가	지	丑	
물리적 특성	경사도, 표그	1						
	개발성지표	도시용지	비율, 등	용도전용	비율, 도	시용지	인접비율	^L , 지가수준
기역특성 기역특성		농업진흥	지역비	율, 전·답	·과수원	면적비율	_노 , 경지정	리면적비율,
71770	보전성지표	생태자연	도 상위]등급비	율, 공적	규제지역	벽면적비	율, 녹지자연
		도 상위	등급비율	t, 임상5	드 상위등	등급비율	, 보전산	지비율
고가저	개발성지표	기개발지	와의 거	리, 공공	편익시설	과의 거	리, 도로	와의 거리,
공간적 입지특성	u al Nal 5	경지정리	지역과	의 거리,	공적규	제지역3	과의 거리	, 하천·호소·
비기기이	보전성지표	농업용 7	저수지외	나 의 거리	, 해안신	过과의 7	식리	

표 2.14 평가지표 조사방법

구분	평가 지표	조 사 방 법	단위	활용가능자료	비고
물리	경사	○수치지형도상 평가대 상토지의 평균경사도 측정(GIS 공간분석 가능)	도	○수치지형도 ○토지종합정보망 전산 자료 또는 토지특성 도·지가현황도	○ 경사도가 낮을수록 건설비 와 안전성에 유리 ○ 경사도가 클수록 산림으로 남아 있을 확률이 높음
적 특 성		○수치지형도상 평가대 상토지의 평균표고를 측정(GIS 공간분석 가능)	m	○수치지형도 ○토지종합정보망 전산 자료 또는 토지특성 도·지가현황도	○표고가 낮을수록 개발비용이 낮고 안전성에 유리○표고가 높을수록 산림으로남아 있을 확률이 높음
지 역 특 성	도시 용지 비율	○최소행정구역단위 도 시용지면적/최소행정 구역단위면적×100	%	○토지종합정보망 전산 자료 또는 토지특성 도·지가현황도·개별공 시지가전산자료	○도시용지비율이 높을수록 개발잠재력이 높음 ○농지·임야비율이 높을수록 농업·보전적성이 높음



표 2.14 평가지표 조사방법 - 계속

구분	평가 지표	조 사 방 법	단위	활용가능자료	비 고
	용도 전용 비율	○최소행정구역단위 용 도전용면적/최소행정 구역단위면적×100	%	○ 토지종합정보망 전산 자료 또는 토지특성 도·지가현황도·개별공 시지가전산자료	○용도전용비율이 높을수록 개발잠재력이 높음 ○용도지역 변경의 필요성 과 가능성 판단의 기초자 료로 활용
	도시 용지 인접 비율	○최소행정구역단위 도 시용지 인접필지면적 /최소행정구역단위면 적×100(GIS상 공간 분석 가능)	%	○ 토지종합정보망 전산 자료 또는 토지특성 도·지가현황도·개별공 시지가전산자료	○ 인접필지와의 용도불부합 비율이 높을수록 개발잠 재력이 높음 ○ 인접지역의 토지이용상태 에 따라 개발 또는 보전 여부 결정 가능
지 역 특	○최소행정구역단위 평 전개별공시지가/최소 행정구역단위 평균개 별공시지가의 최대값 ×100	%	○ 토지종합정보망 전산 자료 또는 토지특성 도·지가현황도·개별공 시지가전산자료	○ 지가수준이 높을수록 개 발잠재력이 높음	
성	경지 정리 면적 비율	○최소행정구역단위 경 지정리면적면적/최 소행정구역단위면적	%	○ 토지종합정보망 전산 자료 또는 토지특성 도·지가현황도·개별공 시지가전산자료 ○ 농지이용계획도	○경지정리면적비율이 높을 수록 농지보전잠재력이 우수 ○생산관리지역의 지정기준 으로 활용
	전·답· ○최소행정구역단위 전 과수원 ·답·과수원면적/최소행 면적 정구역단위면적 ×1 비율 00	%	○ 토지종합정보망 전산 자료 또는 토지특성 도·지가현황도·개별공 시지가전산자료	○ 전·답·과수원 비율이 높을 수록 농지보전잠재력 우 수 ○ 생산관리지역의 지정기준 으로 활용	
	생태 자연도 상위 등급 비율	○최소행정구역단위 생 태자연도 1·2등급·별 도관리지역면적/ 최 소행정구역단위면적 ×100	%	토지종합정보망전산 자료생태자연도토지특성도지가현황도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이 높을수록 농지보전 및 생태보전잠재력 우수 ○보전관리지역의 지정기준 으로 활용



표 2.14 평가지표 조사방법 - 계속

구분	평가 지표	조 사 방 법	단위	활용가능자료	비고
지 역 특 성	공적 규제 지역 면적 비율	○최소행정구역단위 공적규제지역면적/최 소행정구역단위면적 ×100		○ 토지종합정보망 전산 자료 또는 토지특성 도·지가현황도·개별공 시지가전산자료 ○ 국토이용계획도 ○ 개별법상 공적규제지 역 지정자료	○ 공적규제지역면적비율이 높을수록 농지보전잠재력 과 생태보전잠재력이 우수 ○ 공적규제지역의 지정기준 으로 활용
\\ \ \ \ \ \ \ \ \ \ \ \ \ \ \ \ \ \ \	보전 산지 비율	○최소행정구역단위 보전산지면적/최소행 정구역단위면적×10 0	%	○ 토지종합정보망 전산 자료 또는 토지특성 도·지가현황도·개별공 시지가전산자료	○보전산지비율이 높을수록 생태보전잠재력이 우수
	기개발 지와의 거리	○평가대상토지의 중 심점에서 기개발지 와의 최단거리 측정	m	○ 토지종합정보망 전산 자료 또는 토지특성 도·지가현황도	○ 인접할수록 개발후보지로 서의 잠재력이 높음
공 간	공공편 익시설 과의 거리	○ 평가대상토지의 중 심점에서 공공편익 시설과의 최단거리 를 측정	m	○ 토지종합정보망 전산 자료 또는 토지특성 도·지가현황도·공공시 설분포도	 ○접근성이 좋을수록 우수한 개발입지 잠재력이 높음 ○공공편익시설과 멀수록 개 발잠재력이 떨어지고 보전 가능성이 높아짐
적 입 지 특 성	경지정 리지역 과의 거리	○평가대상토지의 중 심점에서 경지정리 지역과의 최단거리 측정	m	○ 토지종합정보망 전산 자료 또는 토지특성 도·지가현황도	○경지정리지역에 인접할수 록 농지보전잠재력과 생태 보전잠재력이 우수 ○보전농지의 공간적 범위 구분기준으로 활용가능
	공적규 제지역 과의 거리	○평가대상토지의 중 심점에서 공적규제 지역과의 최단거리 측정	m	○ 토지종합정보망 전산 자료 또는 토지특성 도·지가현황도 ○ 국토이용계획도 ○ 개별법상 공적규제 지역 지정자료	○ 공적규제지역에 인접할수 록 농지보전잠재력과 생태 보전잠재력이 우수 ○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의 공 간적 범위 구분기준으로 활용가능



3) 지표별 평가기준

개정지침에서 마련한 평가체계Ⅱ의 평가기준은 절대평가법을 채택하였다. 평가지표별 평가기준은 개발가능지역 평가기준의 급간 기준을 사용하되, 지역현황을 고려하여 급간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시된 급간기준의 ±30%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자연환경과 지형지세에 의존하여 개발·설치하는 골프장·스키장·유원지·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이나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관광·휴양형 개 발진흥지구를 위한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평가기준이 적정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특수시설을 위한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평가방법 및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개발가능지역 판정기준에 있는 평가지표는 지역현황을 고려하여 그 평가지표의 일부를 다른 평가지표로 대체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가지표군에 있는 다른 지표로 이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개발가능지역 판정기준에 있는 평가지표별 평가기준은 평가기준의 급간기준을 사용하되, 지역현황을 고려하여 급간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시된 급간기준의 $\pm 30\%$ (비율지표의 경우 $\pm 50\%$)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적성값 산정 및 적성등급의 구분

우선분류대상에 속하지 않는 지역은 상기 기준표에 의거하여 지표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대상토지의 적성값을 산출한다. 개정지침에서는 지표별 평가기준이 급간 별 차이가 많이 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직선보간법에의해 급간 차이에 따른 급격한 점수차이를 최소화하여 급간 별로 세분된 점수값을 산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체계Ⅱ의 적성등급은 두 단계에 걸쳐 도출되는데, 우선분류대상지역외의 지역은 세부평가를 실시하여 평가대상토지별 적성값을 산출한다. 평가대상토지 별 적성값은 각 평가지표별 기준점수에 기초하여 각 측정치에 해당하는 점수값 을 산출하고, 이 점수값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5) 적성값 산정 및 적성등급의 구분

우선분류대상에 속하지 않는 지역은 기준표에 의거하여 지표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대상토지의 적성값을 산출한다.

적성값의 만점에 대한 평가대상토지별 적성값의 비율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첫째, 평가대상토지별 적성값이 만점의 40%미만인 경우는 보전적성등급(A등급), 둘째, 평가대상토지별 적성값이 만점의 40% 이상 60% 미만인 경우는 중간적성등급(B등급), 셋째, 평가대상토지별 적성값이 만점의 60%이상인 경우는 개발적성등급(C등급)을 판정·부여한다.

6) 종합적성등급의 판단 및 검증

종합적성등급이 보전적성등급(A등급)의 경우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없으며, 개발적성등급(C등급)의 경우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중간적성등급(B등급)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구역이 지역의 도시기본 계획 등에서 결정된 시설로서 다른 지역에 입지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나 당해 지역의 토지수급상 공급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중 보건위생시설과 환경기초시설의 경우에 입안권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구역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보전적성(A)등급을 부여받은 토지와 보전적성(A등급)을 부여받은 평가대상토지 중 입안구역 경계에 위치한 330㎡이상의 경우 및 희귀동·식물군 등 보전이 반드시 요구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구역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불가피하다고 입안권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보전대책을 강구하여 개발을 최소화하고 도시관리계획 입안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안구역에 포함되는 우선분류대상지역은 세부평가를 실시하여 종합적성등급 부여에 반영한다.

한편, 토지적성평가 결과가 기초자료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그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이를 검증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적성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2.3.3 토지의 적성평가 단위

토지적성평가의 평가주체는 해당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실시한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 이외의 자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제안 자가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안자는 관련 지침에 제시된 적성평가방법·절차·기준에 의거하여 적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 필요한 평가 자료를 구 축하고 제안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한편 토지적성평가는 기본적으로 필지를 단위로 실시하되, 필지면적이 1만㎡ 이상이고 필지 내에 두 가지 이상의 환경·물리적 특성 및 토지이용상황이 존재할 경우에는 동일한 물리적 특성 및 토지이용상황을 지닌 부분으로 세분하여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체계Ⅱ의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구역에 포함된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며, 필지의 면적이 1만㎡ 미만인 경우에도 하천, 도로와 같은 지형지물 등에 의해 토지이용상황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세분하여 평가할 수있다. 특히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단위의 특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다.

첫째, 일정한 지역 전체를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한 경우이며,

둘째,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가 개발적성으로 평가되기 위한 일정요건을 전체적 또는 공통적으로 충족하는 경우이고,

셋째, 필지 단위의 자료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나 평가대상지가 유사한 성격의 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지역 단위로 하는 것이 필지 단위로 하는 것보다 적성평가를 보다 합리적·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경우 등 기타의특별한 사유가 있어 필지 단위로 실시할 필요성이 낮거나 필지 단위로 실시할 수가 없는 경우이다.



1) 필지단위의 문제점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적성평가에 필요한 기초도면을 수집·정리하여 토지적성평가 기본도를 구축하는 방법에서부터 출발한다. 그 다음 구축된 기본도를 기초로 하여 적성평가 지표를 측정하고 점수화하여 토지의 적성을 등급화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현행 토지적성평가 지침에서 제시되어 있는 평가지표들을 표고,경사도,도시용지비율,용도전용비율,도시용지인접비율,경지정리면적비율,전·답·과수원 면적비율,생태자연도상위등급 비율,공적규제지역 면적비율,기개발지와의 거리,공공편익시설과의 거리,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공작규제지역과의 거리 등이 대표지표로 제시되어 있다.

토지적성평가 평가단위를 필지로 한다는 것은 개별 필지별로 이러한 지표의 특성값이 속성으로 구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토해양부·국토연구원(2002)의 연구에 따르면 토지의 적성을 평가하는 분석의 기초단위로서 필지 단위로 하게 될 경우, 상세성이 있고, 토지소유권의 귀속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적성평가를 토지이용계획의 기초로 사용하기 쉽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초자료의 구축 가능성, 적성평가정보의 상세성과 활용성 차원을 고려할 때 필지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Mesh 법의 경우는 사회, 경제적 특성이나 지역적인 요인을 메쉬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정보가 상실하는 문제가 있으며, 소유권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평가단위로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용도지역과 같은 Polygon을 형성하여 분석하는 방법의 경우도 폴리곤 형성과정에서 많은 양의 정보가 상실되고 필지 경계들을 표시할 수 없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평가단위로서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국토해양부·국토연구원, 2002).

GIS의 공간자료는 크게 Point, Line, Polygon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필지는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불규칙한 폴리곤의 형태로 구축된다. 따라서 토지 소유권의 귀속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점과 토지이용계획수립시 계획 대상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지적고시 등에 활용하기용이하다는 점이 장점이긴 하지만 오히려 실제 토지적성평가를 수행하는 과정



에서 필지를 평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상시킬 수 있다.

첫째, 필지별 평가는 대규모 필지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필지에 여러 가지 속성 값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표값 하나만을 입력하도록 함으로서 해 당 지표측정값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측정단위와 평가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물리적 특성지표 및 지역특성지표의 경우에서 보다 명확하게 발견된다. 물리적 특성지표인 표고 와 경사도는 그 특성상 GIS의 지형분석기능을 통해 격자로 측정된다. 현행 지침에서는 $10m \times 10m$ 이내의 크기의 격자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평가단위가 필지이기 때문에 그림 2.11의 나 필지의 표고와 경사값은 굵은 테두리 내에 속하는 모든 격자의 평균값이 부여된다. 이로 인해 실제로 대필지의 경우 표고와 경사도의 격자별 측정값이 필지에 부여될 때 낮은 값으로 입력됨으로써 정보의 손실을 가져오는데, 이러한 측정값의 왜곡은 종합적성 값 산출 및 적성등급 부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임종훈,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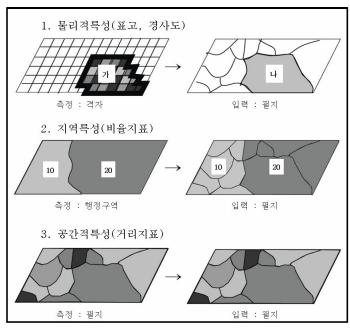


그림 2.11 필지를 기반으로 한 DB구축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1만㎡이상이고 필지 내에 두 가지 이상의 환경·물리적 특성 및 토지이용 상황이 존재할 경우에는 동일한 물리적 특성 및 토지이용상황의 존재할 경우에는 동일한 물리적 특성 및 토지이용상황을 지닌부분으로 세분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필지만을 선택하여세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닐, 어떻게 세분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방법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즉 1만㎡이상의 필지를 어느 정도 크기로 세분하며, 또한 어떤 모양으로 세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또한 평가대상지역에 대규모 필지가 많을 경우, 세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10,000㎡이상의 필지가 필지수로는 10%를 차지하나 면적 비율로는 70%를 차지한다면, 이경우 대부분의 필지가 세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지경계는 결국 무의미하다.

둘째, 필지단위 평가는 토지종합정보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필지의 경계는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정해진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디지 타이징하여 입력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노력을 요구한다. 더욱이 생태자연도, 경사도 표고분석을 위한 수치지형도 등을 토지적성평가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형도와 지적도의 경계를 일치시켜 편집지적도로 구축하여야 하기 때문에 토 지적성평가를 위한 DB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토지종합정보망이 구축되면 편집지적도와 편집 용도지역지구도가 구축되기때문에 정부에서는 토지종합정보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종합정보망사업에서 구축된 DB를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필지를 평가단위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정 먼저 편집지적도를 구축해야 하는데, 토지종합정보망이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서 토지적성평가를 위해 완전히 새로 구축하게 될 경우, 시간과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차후에 토지종합정보망사업이 완료될 경우 DB 구축비용의 중복투자도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셋째, 다양한 기초자료의 공간단위가 상이하다는 문제와 현실불일치성의 문 제이다.



현재 토지적성평가에서는 환경부에서 작성한 자연환경현황도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 도면은 1/25,000의 축척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나타내고자하는 정보가 폴리곤 형태로 구축되어 있다. 즉 기본도와 같이 필지별로 정보가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에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정보손실이 발생한다. 또한 기초자료가 구축된 이후 정보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초자료의 사용단계에서부터 오차를 내재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기본도로 활용하게 되는 편집지적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기본도는 편집저적도와 개별공시지가의 지번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편집지적도의 최초 전산화 이후 발생하는 지적의 분할·합병과 관련된 정보갱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물론 세 번째의 문제는 비단 필지를 평가단위로 선정하는 데에서 기인하는 문제는 아니다. 평가단위를 격자로 하더라도 마찬가지 문제이다. 즉 기초자료의 측정단위와 평가단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측정 단위와 평가단위를 일치하여야만 해결되는 문제이다. 즉 토지적성평가를 수행 하는데 있어서 사용되는 기초자료를 모두 필지단위에서 새롭게 측정하여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필지가 다른 공간단위에 비해 정보손실이 적기 때문에 평가단위로 적합 하다는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이는 측정단위와 평가단위를 같은 것으로 인식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필지의 경우에서도 측정단위가 다른 기초자료를 활용할 경우에 정보손실은 발생하기 때문에 정보손실 측면에서 본다면 평가단위로 필지를 사용하는 것이 장점이 될 수는 없다.

2) 격자단위의 적정성

필지를 평가단위로 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종합정보망이 구축되지 않은 지역의 편집지적도 구축, 대규모 필지의 세분문제, 상이한 공간단위 사용의 문제 등에 대한 대안으로 격자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와 함



께 격자를 평가단위로 사용한 사례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김영숙, 2003; 최내 인, 2003; 임종훈, 2004).

이들 연구들에 따르면 격자가 효과적인 자료의 처리가 가능하고, 위성영상, 항공사진, 수치표고모델(DEM) 등 다양한 자료원의 사용이 용이하며, 서로 다른 형상의 공간자료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연산 및 분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된다.

GIS자료기반에서 격자자료의 원리는 x축 및 y축에 대한 2개의 인덱스에 의해서 식별할 수 있는 격자로서 공간을 분할하는 것이다. 즉, 격자는 일정한 크기의 규칙적인 모양을 가진 공간단위라고 할 수 있는데, 격자를 평가단위로 적용할 경우 토지적성평가 DB를 구축하는 과정은 필지를 평가단위로 적용할 경우토지적성평가 DB를 구축하는 과정과 비교해 볼 때, 격자 평가단위가 표고, 경사도, 거리지표 등의 측정된 값을 자료 변환 없이 그대로 입력되기 때문에 필지의 경우보다 정보손실이 더 적다. 또한 표고, 경사도의 경우 기존에는 수치지형도의 등고선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나, 격자를 평가단위로 할 경우 격자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는 DEM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료이용이 더욱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물론 격자의 경우도 필지와 마찬가지로 상이한 공간단위의 기초자료 활용에 따라 약간의 정보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자료에 따른 문제는 격자와 필지 모두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정보손실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필지가 격자보다 더 적합한 평가단위라고 할 수는 없다.

평가단위를 격자로 할 경우에 가장 큰 장점은 토지종합정보망이 미 구축된 지역이나 기 구축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적의 이동정리의 미반영 등 현황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토지적성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일 수 있 다는 것이다.

현재 토지적성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용되는 다양한 주제도들은 몇 개의 주제도를 제외하면 반드시 필지정보를 바탕으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편집지적도 구축을 제외하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절약이 가능하다.



물론 편집지적도와 개별공시지가의 속성 질의에 의해 구축되는 경지정리지역 현황도 등의 주제도들을 구축하기 어렵지만, 기초자료의 이용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필지경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격자기반의 평가단위를 적용할 경우 기대되는 또 다른 효과는 현행 필지단위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필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격자는 일정한 크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에 관계없이 면적을 고려할 수 있는 공간 단위이다. 따라서 현행 지침에서 1만㎡이상 필지의 세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적절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최종적성등급을 부여하는 단계에서 대필지로인해 필지의 수에 따른 등급비율과 필지의 면적에 따른 등급비율의 차이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면적을 고려할 수 있는 적성등급부여방법도 동시에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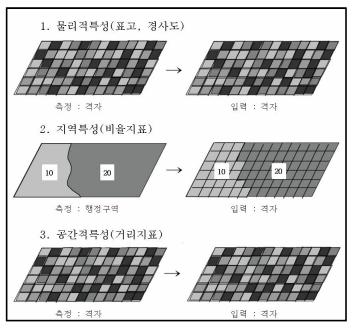


그림 2.12 격자를 기반으로 한 DB구축

격자를 평가단위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가장 현실적인 비판은 개벌격자에 부여되는 적성등급을 어떻게 필지에 적용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격자단위로 평가한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도를 중첩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는 점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의 관리지역 세분화 방법에 따르면, 일단의 토지를 정형화하고, 그 정형화된 지역의 토지공급의 분포에 따라서 관리지역을 세분하도록 되어 있다. 즉, 정형화된 지역 내에 등급분포 결과 1, 2등급의 분포가 50%이상인 경우 보전관리지역으로, 4,5등급이 50%이상인 경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형화된 지역 내의 등급분포가 반드시 필지별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격자별로 등급분포를 제시하는 것도 큰 문제는 아니다. 지적고시의문제는 그 다음의 절차다. 토지적성등급의 분포에 따라 계획, 보전, 생산관리지역으로의 세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위에 지적도면을 중첩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에 어느 필지들이 포함되는지를 제시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특히 표고 및 경사도와 같이 토지 특성은 단절적인 특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에 따른 인위적인 필지경계는 그 특성을 구분 짓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격자기반의 평가가 토지의 연 속적 특성을 표현하는데 더 적합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격자단위의 평가와 필지단위의 평가는 각각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무엇보다도 필지단위의 경우, 토지종합정보망등 필지를 기반으로 한 다른 정보체계와의 연계성이 높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반면, 대규모 필지로 인한 토지의 연속적 특성을 반영하거나, 토지종합정보망이 구축되지 않은 지역의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은 격자단위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다. 특히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이 토지적성평가 제도를 도입할 당시의 기대보다 늦어짐에 따라 현실적으로 필지 단위를 활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3. 골프장 현황 및 시설입지 특성

한국대중골프장협회가 해외 골프여행 추세에 따른 대중골프장 활로 모색을 목적으로 경희대 골프산업연구소에 의뢰,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7 년 한 해 동안 1인당 해외여행 총 경비는 328만원, 1인당 1회 경비는 약 182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토대로 했을 때 약 57만 명이 해외 골프여행을 다 녀온 2007년에 우리나라 골퍼들이 해외에 소비한 돈은 1조 8670억 원으로 추산 된다.

국내 골프산업 시장규모는 골프인구 증가 및 골프장수 증가, 입장료 인상 등으로 매년 크게 확대되고 있다. 2006년 골프장산업 시장규모는 2조 7,800억 원으로 2002년보다는 82.7%나 급성장했다.

2002~2007년 동안 골프장수는 69.7% 늘어났고 골프장 이용객수도 55.3%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 회원제 골프장은 2조 1,300억 원으로 전체 골프장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5%를 차지했고, 대중제 골프장의 매출액은 5,850억 원으로 전체의 21.0%를 차지해 향후 골프장 수가 급증하면서 시장규모는 2011년에는 3조 7,600억 원으로 작년보다 3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골프인구도 골프장수와 골프장 이용객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06년 골프장 이용객수는 2,238만 명에 달해 5년 전인 2003년보다는 45.2%나 급증했는데, 특히 회원권이 없이도 칠 수 있는 대중제 골프장의 이용객수가 매년 두자리 수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골프 인구는 지난 1년 동안 골프장이 한번이라고 나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산하는데, 2006년에는 약 260만 명에 달해 2004년의 195만 명보다는 65만 명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인구 100명당 4명 정도가 골프를 친다고 보면 된다. 1년 동안 골프장에 나가는 횟수는 약 8.6회 정도로 보고 있다.

한편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발표한 『2009년 개장 골프장수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개장하는 골프장수는 55개소(회원제 골프장 23개소, 대중제 골프장 32개소)로 18홀 환산으로 49.3개소에 달하면서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이 259홀을 개장해 가장 많은 골프장을 개장하고, 다음이수도권 207홀, 영남권 147홀, 충청권 130홀 순이다. 특징적인 점은 골프장이 부족한 수도권에 많은 골프장이 개장한다는 점인데, 올해 개장할 골프장수는 14개소, 207홀에 달해 2007년(81홀), 2008년(58홀)에 비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회원제 골프장도 전무했던 2008년과는 달리 6개소, 117홀에 달하는데, 이것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골프회원권 가격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 으로 보인다.

연도별 개장 골프장수를 보면, 2000~2002년 동안에는 7개소 미만에 불과했지만 2005년 이후 매년 25~33개소로 급증했다. 회원제 골프장수도 2003~2006년 동안에는 매년 10~13개소 수준에 불과했지만 2007년 24.5개소로 가장 많았다.

2008년에는 41개 골프장(회원제 골프장 10개소, 대중제 골프장 31개소)이 정식 개장했는데, 이를 18홀로 환산하면, 회원제 골프장 8.6개소, 대중제 골프장 23.0개소 등 모두 31.6개소에 불과했다.

이처럼 회원제 골프장 개장이 예상보다 적었던 것은 경기침체로 골프회원권 분양이 원활하지 못했고 분양대금으로 충당하는 골프장 공사가 순조롭지 못했 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보면, 영남권이 8.8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호남권 8.0개소, 충청권이 5.5개소, 제주권 3.5개소 등이며 수도권에는 대중제 골프장만 3.2개소 개장했다.

3.1 골프장 및 내장객 현황

3.1.1 국내 골프장 현황

2008년 전국에 311개의 골프장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중 회원제 골프장이 183개, 대중제 골프장이 128개이다.

또한 건설 중인 골프장 99개와 미착공 상태의 골프장 27개 등 126개를 합산 하여 국내 골프장은 총 437개로 파악되었다.

국내 지역별 골프장 현황을 운영 중인 골프장과 건설 중이거나 미착공 골프



장별로 정리하면 표 3.1과 같다.

표 3.1 국내 골프장 현황

(단위:개)

구	분	계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경상권	전라권	제주권
	소계	437	144	48	46	93	61	45
계	회원	237	86	26	22	51	23	29
	대중	200	58	22	24	42	38	16
0 0 7 0	소계	311	114	31	37	59	32	38
운영중인 골프장	회원	183	74	18	20	34	13	24
2 = 6	대중	128	40	13	17	25	19	14
기시조시	소계	99	25	13	5	26	27	3
건설중인 골프장	회원	49	11	7	2	16	10	3
2 = 6	대중	50	14	6	3	10	17	0
비취고	소계	27	5	4	4	8	2	4
미착공 골프장	회원	5	1	1	0	1	0	2
= = ~ 성	대중	22	4	3	4	7	2	2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의 2008. 12. 31일 자료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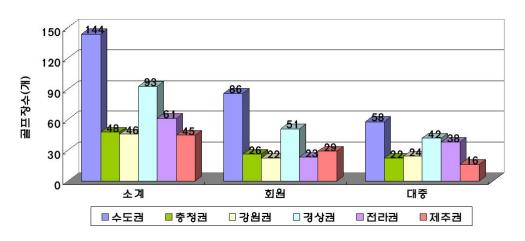


그림 3.1 지역별 골프장 공급현황



다양한 홀수를 가지고 있는 골프장을 18홀로 환산하면 골프장 증가현황은 2003년 189.4개소에서 2007년 기준 328.5개소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회원제 골프장 비중은 75.9%, 대중골프장의 비중은 24.1%이다.

표 3.2 연도별 골프장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비 중
회원	년 제	152.0	146.0	189.0	210.0	234.0	75.9
대	중	37.4	40.4	57.5	66.5	74.5	24.1
합	계	189.4	204.4	246.5	276.5	328.5	100.0

자료 : 미래 한국골프 발전전략 세미나 자료 재정리

지역별 골프장 공급 현황을 국토공간상 인구 분포와 비교하기 위하여 권역별 인구 구성을 정리하고 권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골프장 공급비율 실태를 비교 분석하였다.

국토공간상 인구분포가 수도권과 동남권, 그리고 대도시를 위주로 편중되어 있고, 80년대 이후에 시로 승격된 많은 도시들이 수도권의 통근권에 인접해 입 지함으로써 도시의 공간적 집적과 불균등 분포상태가 심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실제로 지역별로 골프장 이용객과 생활수준, 여가 활용 패턴, 지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골프장의 수요와 공급 체계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골프장 의 수요와 공급 체계가 구체적인 연구에 의하여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 의 특성을 가장 장 나타내는 도시인구를 기준으로 골프장의 공급 상황을 파악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인구구성 비율은 우리나라의 2007년도 총 도시인구에 대한 각 권역별 도시인 구의 100분 비율에 84개 도시를 곱하여 산정하고, 도출된 비율을 국내 골프장 중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골프장 또는 미 착공된 골프장의 합계에 적용하여 도시인구 비율을 고려한 골프장 공급 수준을 정리하였다.

전체 골프장 중 수도권에 38.5%의 골프장 입지비율은 인구구성을 감안하였을



경우 약 45개소의 골프장이 더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권역별 골프장 공급 상태를 살펴보면 수도권과 경상권의 골프장은 과잉부족, 충청권과 전라권 그리고 강원과 제주 지역은 과잉공급이라는 결과를 얻을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행정구역 인구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내장객들의 골프장 방문 행태가 저주지역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배제한 결과이다.

표 3.3 지역인구분포별 골프장 현황

(단위: 천인, 개, %)

Ŧ	1 분	계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강원제주권
인	현황	45,007	23,667	3,759	11,974	3,966	1,641
구	구성비	100.0	52.6	8.4	26.6	8.8	3.6
	현황	317	122	31	49	36	79
골	구성비	100.0	38.5	9.8	15.5	11.4	25.0
豆	인구구성비	317	167	27	84	28	11
장	적용	(-)	(-45)	(4)	(-35)	(8)	(68)
	비율대비	_	공급부족	과잉공급	공급부족	과잉공급	과잉공급

자료: 한국골프장경영협회(2008)의 골프장 자료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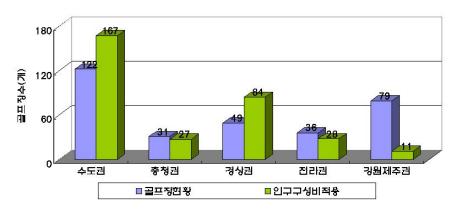


그림 3.2 골프장 현황 및 인구구성비 적용



실제로 국내 골프장 공급 현황과 골프장 내장객 현황을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행정구역별로 도심 배후성, 골프인구 분포성, 경제 수준성, 골프장 과밀도성, 교통 접근성을 고려하여 골프장 공급 과잉에 따른 진단을 실시한 선행 연구(김재형외, 2008) 결과, 경기·서울 지역의 골프장 공급은 관찰 및 주의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대규모 도심배추지역, 골프인구, 경제수준에서 타 지역에 비해두각을 나타냈으며 경쟁력 또한 좋았으나, 대규모 도심배후지역의 골프장이라하더라도 출퇴근 상습 교통정체 구역과 인접한 골프장, 다소 외곽지역에 위치한 골프장, 교통접근성이 떨어지거나 개장한지 오래되어 노화된 골프장, 서비스가 부족하고 회원 수가 과도하게 많은 수도권 골프장들 또한 다가올 경쟁과 시장변화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다양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제주 지역의 골프장 공급 분석결과는 전국에서 가장 고위험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 지역에 신규로 건설 중에 있거나 미착공 상태의 골프장은 다 른 지역에 비해 2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 족시킬 수 있는 소비자 세분화에 따른 독창적인 서비스와 다양한 형태로 추진 해야만 원활한 회원권 분양 및 골프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만 큼 빠른 시간 내에 연관 산업 간 상호 유기적 관계 구축 등 골프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경상 지역 골프장 공급은 주의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골프장 비중과 내장객수 및 영업 이익률을 볼 때 전국에서 가장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경상권 골프장은 전국 대비 18%의 비율로 신규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으므로 향후 골프장을 운영함에 있어 공급과잉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전라 지역의 골프장 공급 분석결과는 주의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전라 지역은 2006년 지역별 대비 18개의 골프장 운영으로 전국에서 가장 작은 규모였으나, 2015년경이면 현재 운영 중인 골프장 외에 골프장이 추가적으로 공급될 계획에 있어 짧은 기간에 많은 골프장이 공급되면서 공급과잉으로 인한 상당한문제점이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전라 지역의 인구를 감안 했을 때,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골프장 건설 및 국제도시의 골프장 건설 등은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된 골프장 개발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충청 지역의 골프장은 주의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충청 지역 골프장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건설 중이거나 인허가 과정에 있는 골프장이 개장할 경우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지역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지역적 특성상 골프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는 이점이 가장 많은 지역인 것으로 전망되었다.

강원 지역의 골프장 공급 분석결과는 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2006년에 강원 지역 골프장은 지역별 대비 12%의 비율로 신규 골프장건설이 추진되어 제주 지역과 함께 공급 과잉의 위험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전통적으로 휴양지의 이미지가 크게 때문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다면 장점이 호재로 작용할수 있는 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단위의 휴양지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구 분 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권 관찰군 주의군 분류결과 위험군 주의군 주의군 고 위험군 주의군

표 3.4 행정구역별 골프장 공급과잉 분석

다음으로 국가별 골프장 현황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골프장 수는 2003년 기준 인구 27만 명당 1개꼴에 그쳐 미국의 1.7만 명이나 일본의 5.2만 명에 비해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국내 골프장 부킹 상황은 상당히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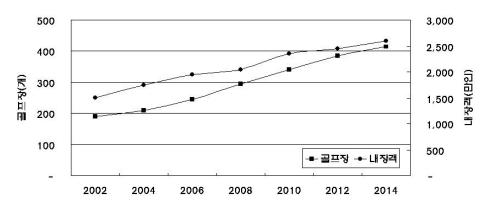
다만, 우리나라의 골프장 수와 골프내장객의 증가관계는 조만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2006년을 기점으로 골프장 수의 증가에 비해골프장 내장객수의 증가세가 느려지고 있고, 향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어 2014년경이면 골프장 과잉공급이 전망되고 있다.



표 3.5 국가별 골프장 현황비교

구 분	한국(2003)	일본(2002)	미국(2002)	영국(2002)
골프장 수(개)	181	2,460	18,240	2,460
총 인구(만명)	4,820	12,590	26,965	5,772
1개소당 인구수	270천명	52천명	17천명	29천명
국토총면적(km²)	99,600	377,000	9,067,630	242,424
산지면적(k㎡)	64,063(64.3%)	241,000(63.9%)	3,000,550(33.1%)	27,940(11.5%)
골프장면적/국토(%)	0.2	0.6	_	0.8

자료 : 문화관광부-알림마당-최근보도자료 6388호 2004.9.22



자료 : 한국골프장경영협회(2008)

그림 3.3 골프장 및 내장객 증가전망

3.1.2 골프장 내장객 현황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회원사 가입 골프장을 비롯하여, 전국에 산재한 6홀 규모 이상 대중골프장을 포함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말 운영 중인 전국골프장 310개소를 이용한 내장객은 모두 23,982,666명으로 2007년에 비해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이 운영 중인 18홀 이상 체력단련장 4개소 및 18홀 미만 군골프장 24



개소 통계를 제외한 수치로, 골프장별 평균내장객이 7만명 임을 감안한다면 약 26,000,000명의 내장객이 골프장을 이용한다고 추산할 수 있으며, 소득수준 향상 및 골프에 대한 사회적 저항감 감소, 건강에 대한 관심 제고, 골프인구 증가, 여가 시간의 증가로 향후 골프인구는 더욱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 중인 회원제 골프장 182개소의 2008년도 내장객은 15,654,098명으로 전년도(171개소, 14,801,737명)보다 852,361명이 증가해 5.8%의 성장률을 나타냈고, 대중골프장 128개소를 이용한 내장객은 8,328,568명으로 전년도(102개소, 7,419,866명)와 비교해 무려 908,000여명이 증가해 12.2%의 성장률을 보였다.

표 3.6의 연도별 골프장 내장객수와 증감률에서 골프장 유형별로는 회원제골 프장의 내장객 증감률은 2005년에 6.6%, 2006년 4.1%, 2007년 6.1%로 감소내지는 정체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대중골프장 내장객 증감률은 2005년12.3%에서 2006년 16.2%, 그리고 2007년 22.2%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내장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에 따라 수익 추구형 골프장 혹은 소수정에 명문추구형 골프장으로 구분하여 신규 골프장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주에게는 의미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표 3.6 연도별 골프장 내장객수와 증감률

(단위: 천명, %)

구 분			내	7	}	객	
		2005		2006		2007	
		내장객수	증감률	내장객수	증감률	내장객수	증감률
전:	체	16,464	8.1	17,655	7.3	19,546	10.7
회원제	골프장	12,137	6.6	12,534	4.1	13,400	6.1
대중골	}프장	4,327	12.3	5,030	16.2	6,146	22.2

주 :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레져산업연구소에서 재구성

지역별로 이용객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시장과 인접한 경기도가 전국 이용객의 과반수에 달하는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경남, 경북



등의 순으로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2007년 대비 2008년의 골프장과 내장객수 증감률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3.6%의 골프장 증가와 10.9%의 홀수 증가 현상을 보였으며, 내장객은 7.9% 증가하였는데, 지역별로는 경북과 전북, 그리고 충북의 내장객수가 각각 24.7%, 23.3%, 22.0%로 상대적으로 높은 내장객 증가 현상을 보였다.

표 3.7 지역별 골프장 이용객 추이 및 증감률

(단위: 개소, %, 인)

	2008	3년	2007	7년	증 감	- 률	내	장 객 수	-
구 분	골프장 수	홀수	골프장 수	홀수	골프장 수	홀수	2008	2007	증감 률
강원	36	599	33	554	9.1	8.1	1,946,984	1,754,684	11.1
경기	114	2,266	110	2,224	3.6	1.9	10,275,163	10,268,163	0.1
경북	33	590	26	494	26.9	19.4	2,584,922	2,073,468	24.7
경남	26	549	22	486	18.2	13.0	2,542,916	2,399,862	6.0
충북	19	342	13	252	46.2	35.7	1,413,767	1,158,659	22.0
충남	12	225	9	181	33.3	24.3	970,258	822,059	18.0
전북	11	205	10	178	10.0	15.2	919,876	746,238	23.3
전남	21	375	16	285	31.3	31.6	1,618,951	1,454,796	11.3
제주	38	654	34	582	11.8	12.4	1,709,829	1,546,633	10.6
합계	310	5,805	273	5,236	13.6	10.9	23,982,666	22,221,603	7.9

자료 : 한국골프장 경영협회 홈페이지 자료실 골프장정보

3.2 골프장의 입지특성 분석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반영되었으며, 토지의 물리적·지역적·입지적 특성 등을 평가하여 관리지역의 세분과 더불어 기타 개발사업의 가능여부 등 토지이용계획에 활용되고 있다.



토지적성평가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기초수단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토지적성평가의 평가지표를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토지적성평가의 특성상 객관적으로 쉽게 조사가 가능한지, 1/25,000이상의 정밀도를 요하는 수치지도가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있는지, 시계열적으로 자료보완이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평가지표는 지역 자체의 특성에 따라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토지적성평가에 반영되게 하기 위해 기초자료의 구축가능성, 객관적 조사의 가능성 여부에 기초하여 지역별로 지형적·사회적 특성을 기준으로 평가지표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본 절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절차에 의해 시설 결정된 전라남도 내 4개의 체육 시설(골프장)에 대한 시설 입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정리하였으며 보성에 위치한 골프장 시설부지에 대해서 토지적성평가를 수행하여 시설의 입지특성을 파악하였다.

담양 금성면 구 분 강진 신전면 곡성 옥과읍 보성 보성읍 위치 신전면 벌정리 옥과 소룡·무창리 금성면 금성리 보성읍 원봉리 면적 $1,435,792\,\mathrm{m}^2$ 242,563 m² 894,118 m² 310,635 m² 9홀 규모 27홀 9홀 18홀 용도지역 농림·관리 지역 농림·관리 지역 농림·관리 지역 농림·관리 지역 평가지표 특수시설(골프장) 특수시설(골프장) 특수시설(골프장) 특수시설(골프장) 설치지역 설치지역 및 기준 설치지역 설치지역 평가결과 B등급(59.8) C등급(89.1) C등급(62.5) C등급(64.3) 생태자연도 별도 보전대상지역 보전대상지역 보전대상지역 기타 관리지역 해당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표 3.8 사례골프장 일반 현황

사례 골프장의 보전대상지역 판정에서는 대부분 보전대상지역 해당사항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진군 신전면의 골프장 사업대상지는 보전대상지역 중생태자연도상 전 구역이 별도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입안구역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보전적성등급을 부여받은 토지와 보전적성등급을 부여받은 평가 대상 토지 중 입안구역 경계에 위치한 330㎡이상의 경우 및 희귀 동·식물군 등 보전이 반드시 요구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불가피하다고 입안권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보전대책을 강구하여 개발을 최소화하고 도시관리계획 입안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3.2.1 시설입지특성 사례 및 DB구축

시설 입지 특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보성에 위치한 골프장 시설부 지에 대해서 토지적성평가를 수행하였다.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일원에 위치할 골프장 조성사업은 310,635㎡, 총 40 필지에 일반대중골프장 9홀을 신설하기 위한 사례 사업이다.

사례사업의 용도지역 현황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군계획 시설인 체육시설(골프장)을 결정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요한 지역이며, 이를 위해 토지적성평가의 평가체계Ⅱ 중에서도관리지역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과 농림지역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토지지목 현황을 살펴보면, 평가대상지는 총 40개 필지로 전 12필지(면적대비 5.58%), 답 8필지(면적대비 5.37%), 임야 20필지(면적대비 89.05%)로 되어 있다.

구 분	총 계	전	답	임 야
면적(m²)	310,635	17,336	16,667	276,632
필지수	40	12	8	20
구성비(%)	100.0	5.58	5.37	89.05

표 3.9 지목별 토지현황



소유자별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평가대상지의 40개 필지 중 국유지는 1필지 와 사유지 39필지로 구성되어 있다.

구 분	총 계	사 유 지	국 유 지(산림청)
면 적(m²)	310,635	295,660	14,975
필 지 수	40	39	1
구성비(%)	100.0	95.18	4.82

표 3.10 소유별 토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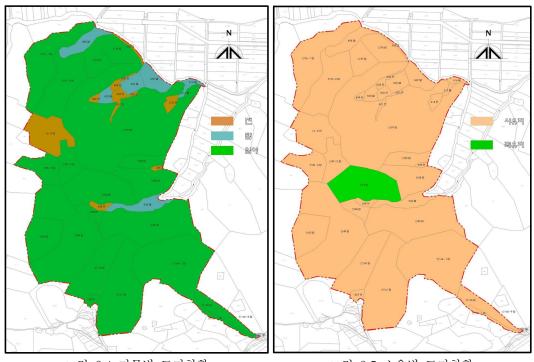


그림 3.4 지목별 토지현황

그림 3.5 소유별 토지현황

한편 전산도면화 과정에서 기본도면의 전산자료는 지적경계선이 표시된 KLIS 도면 또는 토지특성도 도면과 수치지형도 등을 취득하여 사용하였으며, 자연환 경 현황도, 산림이용기본도, 집수구역도, 하천현황도, 상수도보호구역현황도, 호 소·저수지 현황도 등을 추가도면자료로 활용하였다.



표 3.11 데이터별 사용용도

구 분	수 집 데 이 터	사용 용도(적성평가에 활용영역)
	○ 토지종합정보망(토지특 성도)	○도시용지비 산정, 용도전용비 산정, 도지용지인 접비 계산, 경지정리비 등 각종 면적(대장상면 적, 도면상면적) 계산, 용도지역·지구지정 공간 범위 파악, 공적규제 지역범위 파악, 등급별 생 태자연도 계산, 토지이용현황도 작성, 도시시설 설치지역 파악에 활용
도면 유형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지질도(1/50,000)수치지형도(1/2,5000)기타 토지이용계획도	○토지종합정보망의 도면데이터에서 얻을 수 없 는 토지적성평가의 평가지표 특성자료 획득용
	○ 지적도면전산자료(지가 포함) ○ 수치지형도(1/5,000)	○LMIS 도면데이터가 수치지형도와 지가현황도 면을 합성하여 제작한 과정에서 일부 부정확한 도면을 가질 수 있어, 이 데이터를 그대로 필 지 경계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도시관리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데에는 지적도면전산자료 +수치지형도에 의해 확인되어야 될 필요 있음
공간 속성	○지번 관련 point 데이터 ○지적 point, line, polygon ○TM 좌표값(TICs)	○도면 분리·병합·갱신에 활용 ○편집지적도 제작에 활용(지적도면의 축척이 다 르고 지형도와 지적도간의 위치 불 부합 부분 의 필지 모양, 위치정보 등 확인·수정에 활용)
자료 포멧	○GIS 데이터파일	○ GIS기반 토지적성평가용 시스템에 탑재 및 활 용
속성 유형	○토지특성 속성데이터	○도시용지비 산정, 용도전용비 산정, 도지용지인 접비 계산, 경지정리비 등 각종 면적계산, 용도 지역·지구지정 공간범위 파악, 공적규제 지역범 위 파악, 등급별 생태자연도 계산, 토지이용현 황도 작성, 도시시설설치 지역 파악 등에 활용
	○지역특성 속성데이터	○토지종합정보망의 속성데이터에서 얻을 수 없 는 토지적성평가의 평가지표 특성자료 획득
자료 포멧	○GIS 속성테이블 형식 혹 은 범용DBMS S/W	○GIS기반 토지적성평가 시스템에 탑재 및 활용



지역특성자료는 수집된 도면자료로부터 일차적으로 계산하여 구득하였으며,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전국비율자료를 이용하였다.

아울러 공간입지특성 분석을 위해 필요한 공적규제현황 중 해당지역과 관계 없는 수산자원보호구역현황도 등은 제외시키고 검토 대상이 되는 경지정리현황도와 보전임지도 등의 자료를 구축하였다. 또한 공공편익시설에 관련된 현황도작성을 위해 사업대상지 주변의 교통시설, 공급 및 환경기초시설, 공공·체육 및유통시설 등을 파악하여 전산 도면화 하였다.

각종 현황도 작성은 그 작성기준, 표시방법, 현황조서작성 등에 있어서 도시 기본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하여 정리하였고, 기본도면(원도)은 국립지리원이 발행하는 수치지형도(축척 1/5,000)를 사용했으며, 조사되거나 산출된 값들은 G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첩 분석방법으로 DB를 구축하였다.

지형도는 연속지형도 형태로 제작하여 사용했으며, 수치지형도부터 얻어져야하는 기본적 평가요소의 계층적 레이어 분류 및 그 체계는 국가표준코드 체계에 의한 지리적 객체의 기본적 구성요소 표현 코드체계인 도엽코드, 레이어코드, 지형코드로 이어지는 일련의 계층체계를 따라 설계하였다.

토지특성 데이터는 토지특성조사표에 의거하여 구축된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를 기초로 GIS DB로 구축하였으며, 지역의 개발여건 파악을 위해서 토지대장상의 지목현황과 현재 실제적인 토지이용상황 자료를 비교 평가하고, 실제 토지이용은 지목구분 분류체계를 사용하여 목록화 하였다.

토지특성도의 도식표현은 관계법령 지침에 의거 제작되도록 하였고,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추출은 법정구역도와 생태자연도를 도면 중첩하여 법정리별로 비율값을 산출하였다.

평가지표 비율자료는 도시용지비율, 경지정리면적비율, 보전임지비율, 공적규제지역비율 등으로, 국토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3.2.2 우선보전입지 분석

보전대상지역에 대한 판정 평가는 자연보전부문의 생태자연도, 임상도(영급)



와 수질보전부문의 국가하천·지방1급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의 거리,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거리, 그리고 유효저수량 30만㎡이상인 호소·농업용 저수지 만수위선으로부터 거리이다.

생태자연도는 생태자연도의 1등급 및 별도관리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측정기준에 따른 자연보전대상지역에 해당되지 않으며, 2등급과 3등급 지역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대상지는 자연보전 부문의 생태자연도 기준 적용시 보전지역으로 분류되는 대상 필지가 없어, 별도의 보 전대책 강구가 필요치 않으며, 사업대상지역 모두를 도시관리계획 입안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임상도(영급)는 1영급(1년생~10년생 50%이상), 2영급(11년생~20년생 50%이상)이 분포하고 있으며,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자연보전대상지역 4영급(31년생~40년생 50%이상)이상인 지역)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볼 때 대상지는 자연보전부문의 임상도(영급) 기준 적용 시 보전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대상필지)이 없으므로 별도의 보전대책 강구가 필요치 않아, 이들 모든 지역을 도시관리계획입안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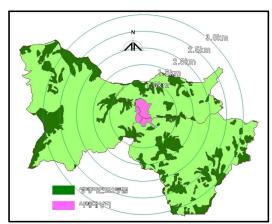


그림 3.6 생태자연도 분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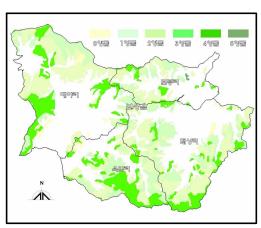


그림 3.7 임상도 분석도



수질보전 부문은 국가하천인 보성강이 있지만 평가대상지로부터 약 2.4km이상 이격되어 있으나, 국가하천·지방1급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의 거리 300m이내인 지역에 사업대상지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의 거리의 경우 주위에 보성강이 있지만 평가대상 지로부터 약 2.4km이상 이격되어 있어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거리 1km내 외의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저수량 30만㎡이상인 호소·농업용 저수지만수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의 집수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데, 대상지 서측으로 협촌제가 447m 이격되어 입지하고 있으나 유효저수량이 43.5천㎡로 주변 300m이내에 기준이 되는 30만㎡ 이상의 호소, 농업용저수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2.3 개발가능지역 분석

분할필지별 최고경사도는 28.1°이며 최저경사도는 0°, 평균경사도는 평균 13.5°의 경사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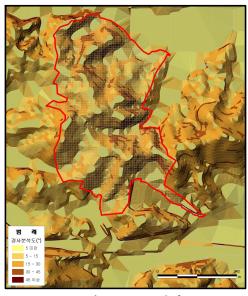


그림 3.8 표고 분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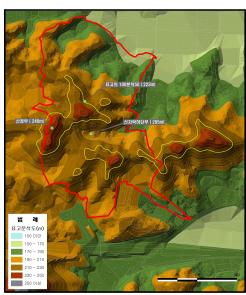


그림 3.9 경사 분석도



표고는 대상지의 최저점을 기준으로 측정하는데, 최저 표고는 160m, 최고 표고는 232.5m, 표고 차는 72.5m로 조사 되어 평균 표고는 213.7m로 나타났다.

개발가능지역 분석의 지역 특성인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과 공적규제지역 비율을 살펴보면 생태자연도는 상위등급비율로 평가대상 토지가 속한 최소행정 구역면적에 대한 생태자연도 1등급·2등급·별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면적비율 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에 포함되는 3개 지역에 걸쳐 있어 지역특성의 평가 단위인 최소행정구역(리)을 기준으로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을 산출하 였다.

원봉리의 행정구역 면적은 2,811,589㎡, 생태자연도 2등급에 해당하는 면적은 610,179㎡로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은 21.7%, 적용점수는 38로 나타났으며, 쾌상리의 행정구역 면적은 6,756,330㎡, 생태자연도 2등급에 해당하는 면적은 1,888,240㎡로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은 27.9%, 적용점수는 20으로 나타났고, 대야리의 행정구역 면적은 7,350,764㎡, 생태자연도 2등급에 해당하는 면적은 1,947,650㎡로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은 26.5%, 적용점수는 20이다.

구	분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적용 점수	비고
) -II	보성읍 원봉리	21.7%	38	
사례 지역	보성읍 쾌상리	27.9%	20	
\ \ \ \ \ \ \ \ \ \ \ \ \ \ \ \ \ \ \	보성읍 대야리	26.5%	20	

표 3.12 생태자연도상위등급 비율 및 점수

공적규제지역비율은 대상 토지가 속한 최소행정구역면적에 대한 공적규제지역비율을 평가하는데, 공적규제지역비율은 대상지의 최소 행정단위인 원봉리, 쾌상리, 대야리의 최소행정구역(리)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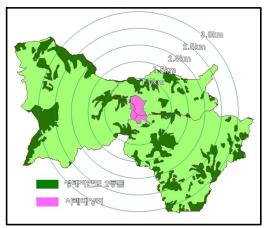
원봉리의 행정구역 면적은 2,811,589㎡, 공적규제지역 면적은 311,871㎡로 공적규제지역 비율은 11.1%, 적용점수는 82로 나타났으며, 쾌상리의 행정구역 면적은 6,756,330㎡, 공적규제지역 면적은 841,065㎡로 공적규제지역 비율은



12.4%, 적용점수는 62로 나타났고, 대야리의 행정구역 면적은 7,350,764㎡, 공적 규제지역 면적은 851,242㎡로 공적규제지역 비율은 11.6%, 적용점수는 74로 나타났다.

구	분	생태자연도 상위등급비율	적용 점수	비고
2] -IJ	보성읍 원봉리	11.1%	82	
사례 지역	보성읍 쾌상리	12.4%	62	
/\ \ \	보성읍 대야리	11.6%	74	

표 3.13 공적규제지역 비율 및 점수



3.0km 2.5km 2.5km Aprilianava

그림 3.10 생태자연도상위등급 비율

그림 3.11 공적규제지역 비율

개발가능지역 분석의 공간입지적 특성인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와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를 살펴보면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상 토지의 중심점에서 공적규제지역과의 최단거리를 측정하였는데, 동남측으로 6.2km의 회천면 냉천저수지 및 9.6km의 율포해수욕장 인근해안이 별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주변 1.5km이내에는 공적규제지역의 요소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토지의 중심점에서 경지정리지역까지의 최단거리를 측정한 결과, 경지



정리지역까지의 거리는 13m이상 271m미만의 거리에 입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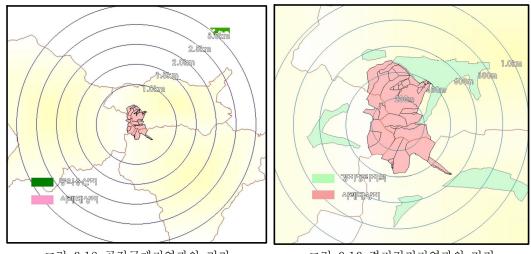


그림 3.12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그림 3.13 경지정리지역과의 거리

3.2.4 시설의 입지특성 분석 결과

시설입지특성 파악을 위한 토지의 적성평가 결과 사례지역에는 우선보전대상 지역 판정기준에 의한 A등급(보전적성등급) 대상지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보전 부문에서 생태자연도의 경우는 대상지역에 1등급 지역이나 별도관리지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상도도 대상지역에 4영급 이상 지역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보전대책이 필요 없이 대상지 전 영역을 도시관리계획 입안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질보전 부문에서 국가하천·지방1급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의 거리의 경우 국가하천인 탐진강이 있지만 평가대상지로부터 약 2.4km이상이격되어 있어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의거리도 인근에 보성강이 약 2.4km이상 이격되어 있어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호소·농업용저수지 만수위선으로부터의 거리는 인근에 유효저수량이 30만㎡ 이상인 농업용저수지가 입지하지 않아 별도의 보전대책이 필요 없이 대상지 전 영역을 도시관리계획 입안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평 가 지 표	기 준	해 당 여 부
자연	생태자연도	1등급, 별도관리지역	해당사항 없음
보전	임상도(영급)	4영급 이상인 지역	해당사항 없음
	국가하천·지방1급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의 거리	300m 이내인 지역	해당사항 없음
수질 보전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의 거리	동일수계지역내 1km 내외의 집수구역	해당사항 없음
	호소·농업용저수지 만수위선으로부터의 거리	300m 이내인 집수구역	해당사항 없음

표 3.14 보전대상지역 분석결과

사업대상지역은 총 40필지(310,635㎡)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가대상지의 필지는 2개 필지는 B등급 나머지 38개 필지는 C등급으로 분석되었으며, 적성평가결과 종합적성값 비율이(종합적성값: 386점) 64.3%로 개발적성등급(C등급)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평가대상 토지 40필지는 적성등급이 A등급(보전적성등급)으로 판정된 필지가 존재하지 않으며 종합적성값이 만점대비 64.3%로 개발적성등급(C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5 종합적성등급

구 분	면적(m²)	비율(%)	필이지 수
B등급	31,235	10.1	2
C등급	279,400	89.9	38
합 계	310,635	100.0	40



표 3.16 토지적성평가 종합

종합	종합적성값(S)	386
판정	만점대비 종합적성값 비율(%)	64.3%
결과	종합적성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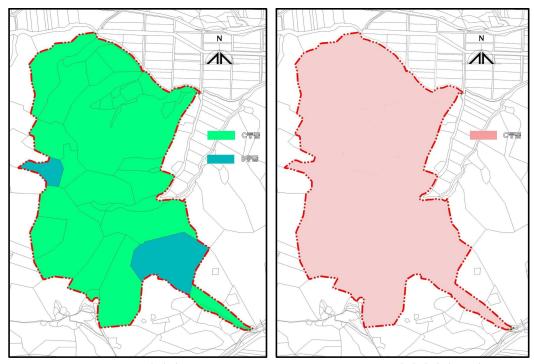


그림 3.14 종합적성등급

그림 3.15 토지적성평가 종합



4. 골프산업 인식에 따른 산업정책 만족도

4.1 설문조사 및 요인분석

4.1.1 설문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골프장 및 연습장 방문객들의 골프산업 인식에 따른 골프산업의 정책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골프장과 연습장을 방문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배부는 광주·전남의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을 찾은 고객을 대상으로 단순무작위 추출(Simple random sampling)을 통해 2008년 10월 6~12일까지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를 조사대상에게 직접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설문 내용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한 다음, 완성된 설문지를 즉각 회수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자료의 신뢰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무응답 등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제외하였다.

골프장의 경우 총 100부를 배부하였으며 82명이 응답하였는데, 이중 본 연구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설문지를 제외하여 총 75부가 실제분석에 사용되었다.

골프연습장의 경우 400부를 배부하였으며 350명이 응답하였는데, 이중 본 연구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설문지를 제외하여 총 320부가 실제분석에서 사용되었다.

따라서 실제분석에서 사용되어진 설문지는 총 395부가 사용되었는데, 연구대 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4.1과 같다.

분석 가능한 자료를 컴퓨터에 개별 입력시킨 후 Windows for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자료 분석을 하였는데, 사용할 통계기법은 평균 및 표준편차, 요인분석, t-value 검증, F-value 검증,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설문지 조사대상자는 남자가 321명(81.3), 여자가 74명(18.7)이며,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각각 34.4%, 36.0%로 높은 구성비를 보였는데,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 조사대상자의 특성

			골 2	프 장	골 프 역	면 습 장
구	분	계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명)	(%)	(명)	(%)
	계	395	75	100.0	320	100.0
성별	남	321	59	78.7	262	81.9
	여	74	16	21.3	58	18.1
	계	395	75	100.0	320	100.0
	30대 이하	88	11	14.7	77	24.1
연령	40대	136	18	24.0	118	36.9
	50대	142	42	56.0	100	31.3
	60대 이상	29	4	5.3	25	7.8
	계	395	75	100.0	320	100.0
	200~400만원	125	7	9.3	118	36.9
평균수입	400~600만원	56	12	16.0	44	13.8
	600~800만원	149	42	56.0	107	33.4
	800만원 이상	65	14	18.7	51	15.9
	계	395	75	100.0	320	100.0
	1년 미만	84	7	9.3	77	24.1
골프경력	2-3년	72	7	9.3	65	20.3
호프경역	4-7년	33	11	14.7	22	6.9
	8-9년	138	32	42.7	106	33.1
	10년 이상	68	18	24.0	50	15.6

설문지는 골프연습장 및 골프장 방문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수로 성별, 연



령, 학력, 교육수준, 평균수입, 골프경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여 장소 변수로 골프장과 연습장으로 구성하였다.

독립변수로 사용된 산업인식은 5개의 하위 요인으로 경제성 요인 5문항, 사회성 요인 2문항, 문화성 요인 2문항, 교류성 요인 3문항, 환경성 요인 2문항으로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 분	변수	문 항 수	비고
	국제교류 기대		
	경제성장 기여		
경제요인	고용촉진 및 증대	5문항	
	국민소득 증대		
	투자유치 및 개발		
사회요인	생활의 질 향상	2문항	
사외요인 	스포츠시설 증대	∠ 군 양	
ㅁ칡ᄼᄼ	스포츠문화 촉진	2문항	
문화요인	문화상품 개발	∠군양	
	시민단체 교류		
교류요인	문화 및 정서 이해	3문항	
	국가이미지 제고		
환경요인	환경친화적 산업	2문항	
[전경요인 	환경보존의식 제고	△판왕	

표 4.2 골프산업인식 관련 변수

골프산업정책에 대한 만족도 특성은 18문항으로 골프산업 인프라 구축에 6문항에는 골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3문항)와 골프시설 건립(2문항), 그리고 조세제도 정비(1문항)에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보기술개발 6문항은 골프산업 지원 정보망 구축(3문항), 골프용품 인증사업(1문항), 골프산업 관련 연구기관의 기능강화(2문항)에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장확대 및 투자유치 6문항에는 골프관광개발(3문항), 골프산업 국제 교류 지원(1문항), 그리고 스포츠 참여 이벤트 개발(2문항) 관련 항목이 5점 척도로 측정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표 4.3 골프산업정책 만족도 관련 변수

구 분	변수	문 항 수	비고
	투자유치 제도적 장치	치	
	수익사업 규제완화		
인프라	골프산업 미디어 정비	6문항	
구축	시설 및 훈련장 확충	0 년 정	
1 4	대중골프장의 양적 확충		
	관련 세제 및 제도 개선		
	산업체간 정보망 확보 지원		
	e-biz 활성화		
정보기술	마케팅 정보 및 유통망 구축	6문항	
개발	국내 인증제도 도입	0 ਦੇ ਲ	
	골프산업 연구기관 기능강화		
	전문 연구기관 및 인력 지원		
	골프관광 상품 개발		
시장확대	골프관광 기반시설시설 확충		
기성획대 및	골프관광의 국내외 홍보 확대	6문항	
	골프산업의 교류 지원	0 ፒ %	
투자유치	참여스포츠 기회의 활성화		
	적극적인 골프대회 유치		

4.1.2 요인분석 결과

여러 종류의 변수 특성 분석을 위하여 다변량 분석이 유력한 분석방법으로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특성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다루게 된다. 즉, 다변량 분석은 여러 변량의 통계자료를 한꺼번에 계량적으로 요약하 여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더 능률적일 수 있으므로 그들 변량에 공통적 으로 내포된 요소들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평가하는 것이다.

다변량 분석의 주된 내용은 단변량의 통계적 분석 중 추정 및 검정에 관한 이론을 다변량 쪽으로 확장해 가는 것으로서 분산분석과 정준상관관계분석, 그 리고 다중회귀분석이 중심을 이룬다.



표 4.4 다변량분석의 적용 기법

	외	척도수준	적용분석기법	
	외적기준이	단일외적기준	변수가 수량인 경우	중회귀분석(예측)
외적	수량인	인될되식기단	변수가 수량 아닌 경우	수량화 I 류(예측)
기준	경우	다수외적기준	변수가 수량인 경우	정준상관분석(기술)
있는	외적기준이	2개 분류	변수가 수량인 경우	판별분석(판별)
경우	수량이	리스 ㅂㄹ	변수가 수량인 경우	중판별분석(판별)
	아닌 경우	다수 분류	변수가 수량 아닌 경우	수량화Ⅱ류(구조탐색)
외적	버스키 스라	:(간격척도, 비율	원도 /이 거 O	주성분분석(간결요약)
기준	변구가 구성	(선격적도, 미뀰*	위도)인 경구	인자분석(구조탐색)
없는	변수가 수량(유의도, 비유의도, 거리등)인 경우			크러스터분석(유형화)
경우	변수가 수량	이 아닌 경우		수량화Ⅲ류(구조탐색)

그러나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인문사회 및 응용과학 측면에서 다변량 분석을 이용한 문제의 해석은 수학적 이론 측면이 아닌 실용적 측면에 서 다변량 분석은 종합적 평가를 위한 다변량 분석과 예측을 위한 다변량 분석 으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종합적 평가를 위한 다변량 분석은 1조의 다변량 통계자료가 지니는 분산·공분산 관계 또는 상관관계를 상호 독립적인 소수의 정준변량의 분산으로 요약하거나 2조의 다변량 통계자료간의 상관관계를 각 조에서 상호 독립적인 소수의 정준변량 간의 상관관계로 요약하는 수법으로 자료의 요약 과정에서 원 자료가 지니는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이 원래의 변 량의 가중 평균 특성 값으로 얻어지는 정준 변량의 개수는 원자료의 변량 개수 보다 훨씬 적어지므로, 이것을 차원의 감소법이라고 부르며, 주성분 분석과 정 준상관 분석이 이에 속한다.

둘째, 예측을 위한 다변량 분석은 입력변수가 처음부터 설명변수의 그룹과 목적변수의 그룹으로 구분되어 있고 전자에서 얻어지는 정보에 바탕을 두어 후 자를 예측하는 수법이 전부 이에 해당된다. 이 예측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양 그룹의 변수 사이에 설정된 모델의 차이에 따라 회귀분석·판별분석·정준상관 분 석 등이 있다. 이상에서의 다변량 통계분석은 종합적 평가를 위한 분석으로 분류한 정준상 관 분석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측을 위한 다변량 분석의 수법을 적용하기 전에 전자의 주성분 분석을 행하여 변량을 사전에 기준화해 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구별하기는 어려운데, 수학적인 계산법으로서는 다변량 분석 방법 중 정준상관 분석이 가장 일반적이며 회귀분석과 판별분석은 특수한 경우에 속한다.

본 절에서는 변수들 간의 상호 관련성을 기초로 내재되어 있는 소수의 공통적인 요인을 찾아냄으로써 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변수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은 변수들 사이의 상호 관계를 분석해서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서로 유사한 특징을 지닌 대상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주는 분석이다.

즉, 요인분석 결과를 통해 분석 대상의 동질 적인 군집을 만들 수 있고 집단들 사이의 이질적 특성을 파악할 수 도 있지만, 본 절에서는 변수들 사이에 유사점들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유사한 변수들을 묶어줌으로써 비교적관련이 적은 변수들을 가지고 자료를 분석할 수 있고, 자료의 해석을 용이하게 재배열하기 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요인분석은 변수의 감축을 통해 변수들 간의 상호 종속적인 관계를 밝히고, 원래 변수들 사이의 일대일 상관관계의 행렬을 검토함으로써 각 변수 들이 어느 정도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며 이를 통해 변수들간의 동 질성(Communality)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

분석결과, 대표 요인들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특정 요인이 설명해 주는 총 분산을 의미하는 요인추출의 기준인 고유치(Eigen value)를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요인분석 해석에 널리 사용되는 기준인 고유치 값은 각각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수들의 분산의 총합으로 각 요인별로 모든 변수의 요인부하량을 제곱하여 더한 값으로 각 요인이 얼마나 많은 설명력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며, 기준은 1.0 이상인 요인만을 추출하여 사용하는데, 표 4.5, 표 4.6과 같이 각각 5개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표 4.5 골프산업인식의 요인분석 결과

구 분		경제성	사회성	문화성	교류성	환경성	공통 분산치
	국제교류 기대	0.836	0.163	-0.008	0.097	0.111	0.872
→ →11	경제성장 기여	0.823	0.107	-0.076	-0.061	0.023	0.861
경제 요인	고용촉진 및 증대	0.692	0.153	0.003	0.068	-0.144	0.822
JL U	국민소득 증대	0.782	0.188	0.224	-0.029	0.138	0.840
	투자유치 및 개발	0.970	0.133	0.171	-0.135	-0.053	0.884
사회	생활의 질 향상	-0.014	0.735	0.120	-0.211	0.227	0.806
요인	스포츠시설 증대	0.053	0.844	0.188	0.026	0.119	0.900
문화	스포츠문화 촉진	0.341	-0.001	0.903	-0.008	0.142	0.912
요인	문화상품 개발	-0.023	-0.069	0.822	-0.076	0.273	0.832
7 7	시민단체 교류	-0.035	0.067	0.114	0.939	-0.008	0.791
교류	문화 및 정서 이해	0.002	-0.026	0.163	0.773	0.250	0.891
# 년	국가이미지 제고	-0.046	-0.123	0.107	0.968	0.497	0.670
환경	환경친화적 산업	0.035	0.102	0.153	0.188	0.978	0.699
요인	환경보존의식 제고	0.026	0.026	0.188	0.063	0.785	0.719
	고유치		1.986	1.913	1.781	1.378	
설명변량(%)		20.273	15.158	14.489	13.490	8.996	
	누적변량(%)	20.273	35.430	49.919	63.408	72.404	

또한 표에서는 각 요인에 문항이 해당되는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을 정리하였는데, 변수와 요인간의 단순상관계수로서 어떤 요인들이 어떤 변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결과 값으로 일반적으로 요인부하량이 크면 클수록 해당 요인과의 상관이 높다고 해석하며 기준은 ±0.4이상일 때 상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설명 변량은 전체적인 요인구조의 윤곽을 파악하기 위한 값으로 요인모델의 개별 설명력을 나타내며, 누적변량은 설명변량을 누적한 설명력으로 성명력이 높다고 평가되는 60%와 비교할 때 각각의 요인 누적변량 값이 72.4%와 71.5%



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동질성으로 표현되는 공통분산치(Communality)는 모든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어질 수 있는 한 변수의 분산의 양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변수의 변량 중분산에 포함된 요인들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표 4.6 골프산업정책 만족도의 요인분석결과

	- 1	인프라	정보기술	시장확대	공통
	구 분	구축	개발	투자유치	분산치
	투자유치 제도적 장치	0.660	0.081	0.255	0.763
	수익사업 규제완화	0.691	0.066	-0.219	0.730
인프라	골프산업 미디어 정비	0.850	0.152	0.102	0.715
구축	시설 및 훈련장 확충	0.789	0.260	0.303	0.694
	대중골프장의 양적 확충	0.789	0.202	0.217	0.707
	관련 세제 및 제도 개선	0.893	0.211	0.265	0.821
	산업체간 정보망 확보 지원	0.104	0.607	0.255	0.760
	e-biz 활성화	0.112	0.747	0.190	0.822
정보	마케팅 정보 및 유통망 구축	0.160	0.693	-0.028	0.850
기술 개발	국내 인증제도 도입	0.105	0.784	0.000	0.870
/미린	골프산업 연구기관 기능강화	0.185	0.561	0.167	0.832
	전문 연구기관 및 인력 지원	0.218	0.553	0.099	0.797
	골프관광 상품 개발	0.014	-0.027	0.629	0.799
시장	골프관광 기반시설시설 확충	0.104	-0.019	0.645	0.811
확대 및	골프관광의 국내외 홍보 확대	0.112	0.266	0.734	0.834
^옷 투자	골프산업의 교류 지원	0.160	0.329	0.744	0.743
유치	참여스포츠 기회의 활성화	0.089	0.028	0.799	0.842
	적극적인 골프대회 유치	0.104	0.123	0.741	0.820
	고유치	4.798	2.227	1.989	
	설명변량(%)	38.083	17.676	15.784	
	누적변량(%)	38.083	55.759	71.543	



4.2 골프산업에 대한 인식차이 고찰

4.2.1 인구통계학 특성별 산업인식 차이

인구통계학 특성별 산업인식에 대한 차이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t-value 검증과 F-value 검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t-value 검증은 두 집단의 평균 차이 여부를 비교 분석할 때 사용되는 기법으로 독립변수가 2개이며 2개의 변수에 따른 차이성을 비교하기 위한 방법이며, F-value 검증은 세 집단 이상에 대하여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통계방법으로 독립변수는 3개이고 종속변수가 하나인 경우에 활용된다.

t-value 검증이나 F-value 검증에서 통계학적인 의미의 유무 검정과 차이성 검정은 p값으로 결정되는데, 기본적인 수준인 유의 수준을 95%일 때의 p값이 0.05보다 적으면 통계분석 결과에 대하여 두 변수 사이에 의미가 있거나 혹은 차이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 t값과 F값은 p값을 구하기 위한 중간 매 개변수로 t값이나 F값을 통하여 그에 적당한 p값을 구할 수가 있다.

scheffe는 집단과 집단 사이에 서로 차이가 어떤지 비교하는 결과치로 세페 표를 통하여 집단과 집단 사이의 의미 있는 정도의 순서를 평가할 수 있다.

응답자 평균 편차 (N) (SD) 구 분 (M)t-value 여 여 남 남 남 여 경제성 323 72 3.81 3.15 0.75 0.73 10.700*** 사회성 323 72 3.88 0.70 0.65 12.982*** 3.14 문화성 323 72 3.65 0.70 0.63 10.057*** 3.08 교류성 323 72 3.74 0.75 0.88 9.811*** 3.11 0.78 환경성 323 72 3.64 2.99 0.66 10.267***

표 4.7 성별에 따른 산업인식

*** p<.001

분석 결과 표 4.7에서 경제성에서 남자 평균이 3.81, 여자 평균이 3.15로 나타 났고, t값은 10.700, 사회성에서는 남자 평균이 3.88, 여자 평균이 3.14로 나타났으며, t값이 12.982이다.

문화성에서는 남자 평균이 3.65, 여자 평균이 3.08로 나타났으며, t값이 10.057, 교류성에서는 남자 평균이 3.74, 여자 평균이 3.11로 나타났고, t값이 9.811이다.

한편 환경성에서는 남자 평균이 3.64, 여자 평균이 2.99로 나타났고, t값이 10.267로 타나났는데, 이상의 t-value 검증 결과에서 성별에 따라서 의미 있는 차이인 p<.001로 나타나 경제성, 사회성, 문화성, 교류성, 환경성 모든 요인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골프산업에 대한 인식을 높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산업인식의 차이의 분석은 표 4.8과 같이 나타났다.

경제성에 따라 산업인식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의 평균이 M=4.67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연령대는 30대 이하의 평균이 M=2.99로 나타났는데, 이때 F 값은 492.272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인 p<.001로 나타났다.

사회성에 따라 산업인식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의 평균이 M=4.69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연령대는 30대 이하의 평균이 M=3.35로 나타났는데, 이때 F값은 295.694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인 p<.001로 나타났다.

문화성에 따라 산업인식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의 평균이 M=4.36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연령대는 30대 이하의 평균이 M=3.04로 나타났는데, 이때 F 값은 219.680으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인 p<.001로 나타났다.

교류성에 따라 산업인식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대 이상으로 평균이 M=4.53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연령대는 30대 이하의 평균이 M=3.10로 나타났는데, 이때 F값은 236.893으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p<.001로 나타났다.

환경성에 따라 산업인식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대 이상의 평균이 M=4.28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연령대는 30대 이하의 평균이 M=2.79로 이때 F값은 123.091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세 집단 이상에 대하여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F-value 검증결과, 경제성, 사회성, 문화성에서는 50대가 60대 이상, 40대, 30대 이하 보다



골프산업에 대한 인식도가 높게 형성되며, 교류성, 환경성에서는 60대 이상이 50대, 40대, 30대 이하보다 산업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연령에 따른 산업인식의 차이

구		분	응답자	평균	편차	F-value	Scheffe
T		正	(N)	(M)	(SD)	r-value	Scherre
	1	30대 이하	199	2.99	0.15		
경제성	2	40대	305	3.66	0.85	492.272 ***	3>4>2>1
70711 0	3	50대	322	4.67	0.22	492.272 ***	
	4	60대 이상	64	4.63	0.17		
사회성	1	30대 이하	199	3.35	0.48		3>4>2>1
	2	40대	305	3.63	0.83	295.694 ***	
	3	50대	322	4.69	0.34	295.094 ***	
	4	60대 이상	64	4.49	0.23		
	1	30대 이하	199	3.04	0.26		3>4>2>1
문화성	2	40대	305	3.64	0.81	219.680 ***	
工好/8	3	50대	322	4.36	0.52	219.000 ***	
	4	60대 이상	64	4.01	0.38		
	1	30대 이하	199	3.10	0.84		
고르서	2	40대	305	3.56	0.85	236.893 ***	4>3>2>1
교류성	3	50대	322	4.52	0.24	230.893 ***	4/3/2/1
	4	60대 이상	64	4.53	0.32		
	1	30대 이하	199	2.79	0.30		
치거서	2	40대	305	3.60	1.13	192 001	1 2 2 2 1
환경성	3	50대	322	4.24	0.42	123.091 ***	4>3>2>1
	4	60대 이상	64	4.28	0.33		

*** p<.001

월수입에 따른 산업인식의 차이의 분석 결과는 표 4.9와 같이 나타났다.



표 4.9 월수입에 따른 산업인식의 차이

_	7	Н	응답자	평균	편차	T 1.	C 1 ff	
_	7	분	(N)	(M)	(SD)	F-value	Scheffe	
	1	200만원 이하	125	2.99	0.25			
	2	200~400만원	158	2.94	0.16		4>3>5>1>2	
경제성	3	400~-600만원	123	4.14	0.64	542.357 ***		
	4	600~800만원	338	4.68	0.28			
	5	800만원 이상	146	3.99	0.81			
사회성	1	200만원이하	125	3.16	0.45		4>5>3>2>1	
	2	200~400만원	158	3.13	0.46			
	3	400~600만원	123	4.16	0.62	311.805 ***		
	4	600~800만원	338	4.61	0.32			
	5	800만원 이상	146	4.19	0.84			
	1	200만원 이하	125	3.22	0.50			
	2	200~400만원	158	2.92	0.26			
문화성	3	400~600만원	123	3.88	0.59	205.719 ***	4>3>2>1>5	
	4	600~800만원	338	4.32	0.57			
	5	800만원 이상	146	3.92	0.75			
	1	200만원 이하	125	3.11	0.54			
	2	200~400만원	158	2.70	0.63			
교류성	3	400~600만원	123	4.18	0.74	391.117 ***	4>3>5>1>2	
	4	600~800만원	338	4.52	0.22			
	5	800만원 이상	146	4.05	0.66			
	1	200만원 이하	125	2.72	0.48			
	2	200~400만원	158	2.92	0.26			
환경성	3	400~600만원	123	4.13	0.74	278.512 ***	4>3>5>1>2	
	4	600~800만원	338	4.30	0.50			
	5	800만원 이상	146	4.02	0.85			

***p<.001



경제성에 따라 산업인식이 가장 높은 집단은 600~800만원(M=4.68)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집단은 200~400만원(M=2.94)으로 나타났다. 사회성에 따라 산업인식이 가장 높은 집단은 600~800만원(M=4.61)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집단은 200~400만원(M=3.13)으로 나타났다.

문화성에 따라 산업인식이 가장 높은 집단은 600~800만원(M=4.32)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집단은 200~400만원(M=2.92)으로 나타났다. 교류성에 따라 산업인식이 가장 높은 집단은 600~800만원(M=4.52)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집단은 200~400만원(M=2.70)으로 나타났다. 환경성에 따라 산업인식이 가장 높은 집단은 600~800만원(M=4.30)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집단은 200만원 이하(M=2.72)으로 나타났다. 이때 F값은 각각 542.357, 311.805, 205.719, 391.117, 278.512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p<.001로 나타났다.

Scheffe 사후 검증결과 경제성에서는 600~800만원, 400~600만원, 800만원 이상, 200~4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성에서는 600~800만원, 800만원 이상, 400~600만원, 200만원 이하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성에서는 600~800만원, 400~600만원, 200~400만원, 200만원 이하 800만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국제교류성에서는 600~800만원, 400~600만원, 8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200~4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환경성에서는 600~800만원, 400~600만원, 8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순으로 나타나 월수입이 높을 수록 산업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경력별 산업인식에 대한 차이의 해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4.10과 같다. 경제성에 따라 산업인식이 가장 높은 집단은 10년 이상(M=4.76)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집단은 1년 미만(M=2.92)으로 나타났다.

사회성에 따라 산업인식이 가장 높은 집단은 10년 이상(M=4.84)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집단은 1~3년(M=3.16)이고, 문화성에 따라 산업인식이 가장 높은 집단 은 10년 이상(M=4.61)의 집단이며, 가장 낮은 집단은 1~3년(M=2.99)으로 나타났다.

교류성에 따라 산업인식이 가장 높은 집단은 7~9년(M=4.53)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집단은 1~3년(M=2.86)이고, 환경성에 따라 산업인식이 가장 높은 집 단은 7~9년(M=4.54), 가장 낮은 집단은 1년 미만(M=2.89)으로 나타났다.



표 4.10 골프경력에 따른 산업인식

			응답자	 평균	편차		0.1.66	
	구	분	(N)	(M)	(SD)	F-value	Scheffe	
	1	1년 미만	190	2.92	0.20			
	2	1~3년	166	3.05	0.14	-		
경제성	3	4~6년	73	4.42	0.70	1514.590 ***	5>4>3>2>1	
	4	7~9년	308	4.54	0.33			
	5	10년 이상	153	4.76	0.12			
	1	1년 미만	190	3.19	0.49			
	2	1~3년	166	3.16	0.47		5>4>3>1>	
사회성	3	4~6년	73	4.39	0.68	592.898 ***		
	4	7~9년	308	4.48	0.28			
	5	10년 이상	153	4.84	0.35			
_	1	1년 미만	190	3.10	0.47		5>4>3>1	
	2	1~3년	166	2.99	0.27			
문화성	3	4~6년	73	3.97	0.59	425.757 ***		
	4	7~9년	308	4.20	0.50			
	5	10년 이상	153	4.61	0.41			
	1	1년 미만	190	3.14	0.72			
	2	1~3년	166	2.86	0.69			
교류성	3	4~6년	73	4.29	0.68	430.738 ***	4>3>5>1	
	4	7~9년	308	4.53	0.17			
	5	10년 이상	153	4.38	0.30			
	1	1년 미만	190	2.89	0.37			
	2	1~3년	166	2.89	0.42			
환경성	3	4~6년	73	4.32	0.70	608.793 ***	4>3>5>1>	
	4	7~9년	308	4.54	0.47			
	5	10년 이상	153	3.97	0.35			

***p<.001



이때 F값은 각각 914.590, 592.898, 425.757, 430.738, 608.793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p<.001).

Scheffe 사후검증 결과, 경제성은 10년 이상, 7~9년, 4~6년, 1~3년, 1년 미만 순이며, 사회성은 10년 이상, 7~9년, 4~6년, 1년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문화성에서는 10년 이상, 7~9년, 4~6년, 1년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교류성에서는 7~9년, 4~6년, 10년 이상, 1년 미만 순으로 나타났고, 환경성에서는 7~9년, 4~6년, 10년 이상, 1년 미만 순으로 나타나 골프 경력이 많을수록 산업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2.2 참여 장소별 산업인식 차이

연습장

참여 장소에 따른 산업인식 차이의 분석 결과는 표 4.11과 같다.

응답자 평균 편차 구 분 t-value (M) (N) (SD) 골프장 4.00 168 0.61 경제성 6.698 *** 0.79 722 3.55 연습장 골프장 168 4.06 0.61 사회성 7.175 *** 연습장 722 3.61 0.75 골프장 168 3.78 0.63 5.700 *** 문화성 연습장 722 3.43 0.71 골프장 168 3.95 0.54 교류성 6.848 *** 722 0.83 연습장 3.48 골프장 168 3.78 0.64 환경성 5.576 ***

표 4.11 참여장소에 따른 산업인식의 차이

***p<.001

참여 장소에 따른 산업인식 차이에 대한 분석은 경제성에서 골프장의 평균은

3.39

0.81

722



M=4.00, 골프연습장의 평균은 M=3.55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성에서 골프장의 평균은 M=4.06이며, 골프연습장의 평균은 M=3.61, 문화성에서는 골프장의 평균은 M=3.78, 골프연습장의 평균은 M=3.43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류성에 있어서 골프장의 평균은 M=3.95이며 골프연습장의 평균은 M=3.48, 환경성에서는 골프장의 평균은 M=3.78, 골프연습장의 평균은 M=3.39로 나타났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t-검증 결과, 경제성의 t값이 6.698, 사회성의 t 값이 7.1751, 문화성의 t값이 5.700, 국제교류성의 t값이 6.848, 환경성의 t값이 5.576로 참여 장소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p<.001)가 나타나 경제성, 사회성, 문화성, 교류성, 환경성 모든 요인에서 골프장 고객이 골프연습장 고객보다 골프산업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4.2.3 골프산업인식에 대한 소결

인구통계학 특성 및 참여 장소별로 골프산업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검토한 결과 성별에 따른 산업인식의 차이는 t-value 검증을 통해 경제성, 사회성, 문화성, 교류성, 환경성 모든 요인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골프산업에 대한 인식을 높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산업인식의 차이는 F-value 검증을 통해 경제성, 사회성, 문화성에서는 50대가 60대 이상, 40대, 30대 이하 보다 골프산업에 대한 인식도가 높게 형성되며, 교류성, 환경성에서는 60대 이상이 50대, 40대, 30대 이하보다 산업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월수입 및 골프경력별 산업인식의 차이는 Scheffe 사후 검증 결과에서 월수입이 높을수록 산업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골프 경력이 많을수록 산업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참여 장소별로 골프산업에 대한 인식 차이는 t-검증을 통해 경제성의 t 값이 6.698, 사회성의 t값이 7.1751, 문화성의 t값이 5.700, 국제교류성의 t값이



6.848, 환경성의 t값이 5.576로 참여 장소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경제성, 사회성, 문화성, 교류성, 환경성 모든 요인에서 골프장 고객이 골 프연습장 고객보다 골프산업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4.3 골프산업 정책에 대한 만족도 고찰

4.3.1 인구통계학 특성별 정책 만족도

성별에 따른 산업정책 만족도 차이의 분석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12와 같다.

구	분	응답자	평균	편차	t-value	
-1	- 工	(N)	(M)	(SD)	ι—varue	
인프라	남	706	3.57	0.70	11.866 ***	
구축	역	184	2.90	0.62	11.000 ***	
정보기술	남	706	3.84	0.83	10.910 states	
개발	역	184	3.14	0.80	10.218 ***	
시장확대/ 투자유치	남	706	3.64	0.67	10.007 dedute	
	여	184	2.99	0.52	12.297 ***	

표 4.12 성별에 따른 산업정책의 만족도

인프라 구축에서 남자의 평균은 M=3.57, 여자의 평균은 M=2.90로 나타났고, 정보기술개발에서는 남자의 평균은 M=3.84, 여자의 평균은 M=3.14로 나타났으며, 시장 확대 및 투자유치에서는 남자의 평균은 M=3.64, 여자의 평균은 M=2.99로 나타났다. 이때 인프라 구축의 t값이 11.866, 정보기술개발의 t값이 10.218, 문화성의 t값이 10.127, 국제교류성의 t값이 12.187로 성별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p<.001)가 나타났다.

^{***}p<.001



가설을 검증을 위한 t-검증 분석 결과, 인프라 구축, 정보기술개발, 시장 확대 및 투자유치의 모든 요인에서 남자 응답자가 여자 응답자보다 골프산업에 대한 정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산업정책 만족도의 차이의 분석은 표 4.13과 같다.

표 4.10 연령에 따른 산업정책의 만족도

구	구 분		응답자 (N)	평균 (M)	편차 (SD)	t-value	Scheffe
	1	30대 이하	199	2.62	0.12		4>3>2>1
인프라	2	40대	305	3.16	0.75	272 075 to total	
구축	3	50대	322	4.07	0.12	1372.975***	
	4	60대 이상	64	4.10	0.17		
	1	30대 이하	199	2.94	0.53		3>4>2>1
정보기술	2	40대	305	3.21	0.79	210 0 42 destret	
개발	3	50대	322	4.49	0.27	318.843***	
	4	60대 이상	64	4.30	0.25		
	1	30대 이하	199	2.71	0.21		
시장확대/	2	40대	305	3.30	0.69	262 150 4 4 4	2 1 2 1
투자유치	3	50대	322	4.11	0.15	362.158***	3>4>2>1
	4	60대 이상	64	4.00	0.17		

***p<.001

인프라 구축에 따라 산업정책 만족도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60대 이상으로 평균이 M=4.10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연령대는 30대 이하로 평균이 M=2.62 로 나타났다.

정보기술개발에 따라 산업정책 만족도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로 평균이 M=4.49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연령대는 30대 이하로 평균이 M=2.94로 나타났으며, 시장 확대 및 투자유치에 따라 산업정책 만족도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로 평균이 M=4.11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연령대는 30대 이하로 평균이



M=2.71로 나타났다. 이때 F값은 각각 369.648, 345.731, 358.928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p<.001).

Scheffe 사후검증 결과 인프라 구축에서는 60대 이상이 50대, 40대, 30대 이하보다 산업정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기술개발과 시장 확대 및 투자유치에서는 50대가 60대 이상, 40대, 30대 이하보다 산업정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에 따른 산업정책 만족도의 차이의 분석은 표 4.14와 같다.

표 4.14 월수입에 따른 산업정책의 만족도

구		분	응답자 (N)	평균 (M)	편차 (SD)	F-value	Scheffe	
	1	200만원 이하	125	2.38	0.27			
	2	200-400만원	158	2.65	0.07			
인프라 구축	3	400-600만원	123	3.74	0.55	699.044***	4>3>5>2>1	
	4	600-800만원	338	4.05	0.15			
	5	800만원 이상	146	3.54	0.66			
	1	200만원이하	125	2.71	0.36			
-> -> ->	2	200-400만원	158	2.72	0.52			
정보기술 개발	3	400-600만원	123	3.85	0.62	397.544***	4>5>3>1	
/ II E	4	600-800만원	338	4.40	0.38			
	5	800만원 이상	146	3.84	0.78			
	1	200만원 이하	125	2.62	0.09			
/	2	200-400만원	158	2.73	0.23			
시장확대/ 투자유치	3	400-600만원	123	3.79	0.56	600.934***	4>3>5>1	
	4	600-800만원	338	4.10	0.16			
	5	800만원 이상	146	3.52	0.64			

***p<.001

인프라 구축에 따라 산업정책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600~800만원 (M=4.05)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집단은 200만원 이하(M=2.38)로 나타났다. 정보기술개발에 따라 산업정책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600~800만원 (M=4.40)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집단은 200만원 이하(M=2.71)로 나타났다. 시장 확대 및 투자유치에 따라 정책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600~800만원 (M=4.10)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집단은 200만원 이하(M=2.62)로 나타났다. 이때 F값은 각각 699.044, 397.544, 600.934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p<.001).

Scheffe 사후검증 결과, 인프라 구축에서는 600~800만원, 400~600만원, 800만원 이상, 200~400만원, 200만원 이하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기술개발에서는 600~800만원, 800만원 이상, 400~600만원, 200만원 이하 순으로 나타났다. 시장확대 및 투자유치에서는 600~800만원, 400~600만원, 8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순으로 차이가 나타나 월수입이 높을수록 산업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 경력에 따른 산업정책 만족도의 차이의 분석은 표 4.15와 같다.

인프라 구축에 따라 산업정책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집단은 10년 이상 (M=4.12)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집단은 $1\sim3년(M=2.47)$ 으로 나타났다.

정보기술개발에 따라 산업정책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10년 이상(M=4.66) 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집단은 1년 미만(M=2.70)으로 나타났다.

시장 확대 및 투자유치에 따라 산업정책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은 7~9년 (M=4.11)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집단은 1년 미만(M=2.68)으로 나타났다. 이때 F값은 각각 541.683, 739.915, 400.368로 통계적인 의미 차이가 있었다(p<.001).

Scheffe 사후검증 결과 인프라 구축에서는 10년 이상이 7~9년, 4~6년, 1년 미만, 1~3년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기술개발에서는 10년 이상이 4~6년, 7~9년, 1~3년, 1년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장 확대 및 투자유치에서는 7~9년이 10년 이상, 4~6년, 1년 미만 순으로 차이가 나타나 골프경력이 높을수록 산업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골프경력에 따른 산업정책의 만족도

구		분	응답자 (N)	평균 (M)	편차 (SD)	F-value	Scheffe	
	1	1년 미만	190	2.65	0.12			
	2	1~3년	166	2.47	0.25			
인프라 구축	3	4~6년	73	3.90	0.45	541.683***	5>4>3>1>2	
	4	7~9년	308	4.00	0.14			
	5	10년 이상	153	4.12	0.15			
	1	1년 미만	190	2.70	0.43		5>3>4>2>1	
	2	1~3년	166	2.86	0.50			
정보기술 개발	3	4~6년	73	4.21	0.70	739.915***		
/ =	4	7~9년	308	4.16	0.35			
	5	10년 이상	153	4.66	0.20			
	1	1년 미만	190	2.68	0.16			
	2	1~3년	166	2.70	0.18			
시장확대/	3	4~6년	73	3.96	0.48	400.368***	4>5>3>1	
	4	7~9년	308	4.11	0.13			
	5	10년 이상	153	4.00	0.14			

***p<.001

4.3.2 참여 장소별 정책 만족도

참여 장소에 따른 산업정책 만족도 차이의 분석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t-검증 결과는 표 4.16과 같다.

인프라 구축에서 골프장의 평균은 M=3.78, 골프연습장의 평균은 M=3.36로 나타났고, 정보기술개발에서는 골프장의 평균은 M=4.12, 골프연습장의 평균은 M=3.59로 나타났으며, 시장 확대 및 투자유치에서는 골프장의 평균은 M=3.82,



골프연습장의 평균은 M=3.43로 나타났다.

인프라 구축의 t값이 6.628, 정보기술개발의 t값이 7.125, 시장 확대 및 투자 유치의 t값이 6.546로 참여 장소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p<.001).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t-검증 결과, 인프라 구축, 정보기술개발, 시장 확대 및 투자유치 모든 요인에서 골프장 고객이 골프연습장 고객보다 골프산업정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u> </u>				
구	분	응답자	평균	표준편차	t-value
, , , , , , , , , , , , , , , , , , ,	也	(N)	(M)	(SD)	t value
o) 豆コ フネ	골프장	168	3.78	0.53	6.628***
인프라구축	연습장	722	3.36	0.76	0.028***
거 되 리 리 리 리 리 리 리 리 리 리 리 리 리 리 리 리 리 리	골프장	168	4.12	0.68	7 195444
정보기술개발	연습장	722	3.59	0.88	7.125***
시장확대/	골프장	168	3.82	0.56	C. E.A.C. dududu
투자유치	연습장	722	3.43	0.70	6.546***

표 4.16 참여장소에 따른 골프장의 만족도

4.3.3 골프산업 정책만족도에 대한 소결

인구통계학 특성 및 참여 장소별로 골프산업 정책만족도를 검토한 결과 성별에 따른 산업정책 만족도는 모든 요인에서 남자 응답자가 여자 응답자보다 골프산업에 대한 정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에 따른 산업정책 만족도는 Scheffe 사후검증에서 인프라 구축은 60대 이상, 정보기술개발과 시장 확대및 투자유치에서는 50대가 산업정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에 따른 산업정책 만족도는 Scheffe 사후검증에서 월수입이 높을수록 산업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골프 경력에 따른 정책 만 족도는 골프경력이 높을수록 산업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한편 참여 장소에 따른 산업정책 만족도는 t-검증에서 인프라 구축, 정보기술 개발, 시장 확대 및 투자유치 모든 요인에서 골프장 고객이 골프연습장 고객보 다 골프산업정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4.4 골프산업 정책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4.4.1 골프산업인식과 정책만족도 관계

본 절에서는 골프산업 정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회귀분석은 연속형 변수들에 대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인과관계에 대해 수학적 모델인 선형식을 구하여 종속변수를 예측하며, 수학적 모델이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지를 판별하기 위한 적합도를 측정하는 분석 방법이다.

1개의 종속변수와 1개의 독립변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할 경우를 단순회귀분석, 1개의 종속변수와 여러 개의 독립변수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할 경우를 다중회귀분석이라고 한다.

다중회귀분석에서 도출되는 주요 결과 값인 R²는 결정계수로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어느 정도 설명해주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인데, R²값은 0에서 1사이에 있으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회귀모형의 유용성이 높다. 또한 비표준화계수 B와 표준화계수 β는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할 수 있는 결과 값으로 다중회귀분석에서는 표준화계수 β를 분석에이용하는데, β값은 0에 가까울수록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해석한다.

한편 다중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산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다중공산성의 문제는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의 값을 기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Tolerance는 1 이하의 값, VIF는 10 이하이며 1에 가까울수록 다중공산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참여 장소, 골프산업에 대한 인식이 산업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참여 장소, 산업인식의



하위요인으로 상관관계 결과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모든 독립변수를 투입하는데 있어서 더미 변수로 변환시켰다.

또한 인프라 구축 만족도와 정보기술개발만족도, 시장 확대 및 투자유치 만족도를 각각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단계 투입방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결과는 표 4.17, 표 4.18, 표 4.19와 같다.

표 4.17 인프라 구축 만족도의 다중회귀분석결과

7.	분	비표준	화계수	표준화계수	t value	Talamanaa	VIF	
구	亡	В	표준오차	β	t-value	Tolerance	V 11	
상수		0.914	0.070		12.356	0.239	8.813	
	성별	-0.081	0.018	-0.044	-4.253 ***	0.191	6.190	
인구	연령	0.179	0.012	0.214	13.472 ***	0.160	5.417	
통계 특성	평균수입	0.114	0.008	0.199	14.619 ***	0.178	6.071	
	골프경력	0.123	0.010	0.237	11.166 ***	0.218	8.110	
침	수 역 장소	-0.015	0.017	-0.009	-0.851	0.216	7.175	
	경제성	0.168	0.030	0.176	5.260 ***	0.172	7.921	
	사회성	0.003	0.029	0.003	0.080	0.160	7.164	
산업 인식	문화성	-0.025	0.024	-0.024	-0.979	0.584	8.403	
	교류성	0.014	0.017	0.015	0.808	0.205	8.041	
	환경성	0.211	0.015	0.226	12.812 ***	0.250	8.896	

R²=.539, F값=187.265***, ***p<.001

인프라 구축 만족도에서는 R²는 .539로 인구통계학적인 변수, 참여장소 산업 인식이 인프라 구축 만족도의 총 변화량의 53.9%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187.265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인구통계학적인 변수에서는 성별(β=-.044, t=-4.253), 연령(β=.214, t=13.472), 평균수입(β=199, t=14.619), 골프경력(β=.237, t=11.166)이고 산업인식요인에서



경제성(β=.176, t=5.260), 환경성(β=.226, t=12.812)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인 변수에서는 성별, 연령, 평균수입, 골프경력은 p<.001에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고, 참여 장소 변수에서는 의미 있는 변수가 없었으며, 산업인식 변수에서는 경제성과 환경성이 p<.001에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위의 변수가 골프산업 만족도 중 인프라구축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기술개발 만족도는 R²는 .431로 인구통계학적인 변수, 참여 동기가 정보 기술개발 만족도 총 변화량의 43.1%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117.758로 통계 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4.18 정보기술개발 만족도의 다중회귀분석결과

7	н	비표준	화계수	표준화계수	41	T-1	MID	
구	분	В	Std E	β	t-value	Tolerance	VIF	
	상수	-0.234	0.085		-2.592	0.303	7.410	
	성별	0.057	0.022	0.027	2.457 **	0.316	8.936	
인구	연령	0.051	0.015	0.052	3.170 ***	0.457	9.093	
통계 특성	평균수입	0.054	0.009	0.081	5.695 ***	0.348	8.100	
	골프경력	0.068	0.012	0.112	5.065 ***	0.445	7.940	
침	-여장소	-0.020	0.021	-0.009	-0.907	0.446	7.753	
	경제성	0.199	0.037	0.178	5.111 ***	0.387	6.954	
	사회성	0.315	0.035	0.269	8.448 ***	0.170	8.151	
산업 인식	문화성	0.287	0.029	0.233	9.325 ***	0.159	9.011	
	교류성	0.158	0.021	0.145	7.255 ***	0.150	9.535	
	환경성	-0.072	0.019	-0.065	-3.588 ***	0.178	8.674	

R²=.431, F武=117.758***, ***p<.001, **p<.01

인구통계학적인 변수에서는 성별(β=.027, t=2.457), 연령(β=.052, t=3.170), 평



균수입(β=.081, t=5.695), 골프경력(β=.112, t=5.065)이고, 산업인식변수 중에 경제성(β=.178, t=5.111), 사회성(β=.269, t=8.448), 문화성(β=.233, t=9.325), 교류성(β=.145, t=7.255), 환경성(β=-.065, t=-3.588)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인 변수에서는 연령, 평균수입, 골프경력은 p<.001에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고, 산업인식 변수에서는 경제성, 사회성, 문화성, 교류성, 환경성에서 p<.001에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위의 변수가골프산업 정책만족도 중 정보기술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확대 및 투자유치 만족도에서 R²는 .469로 인구통계학적인 변수, 참여 장소, 산업인식이 시장 확대 및 투자유치 만족도에 대한 요인의 총 변화량 46.9%를 설명하고 있으며, F값은 129.361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p<.001).

표 4.19 시장확대 및 투자유치 만족도의 다중회귀 분석

	분	비표준	화계수	표준화계수	t-valua	Tolorence	VIE
구	亡	В	Std E	β	t-value	Tolerance	VIF
상수		1.109	0.065		16.245	0.170	7.221
	성별	-0.138	0.017	-0.080	-7.828 ***	0.109	8.323
인구	연령	0.081	0.011	0.102	6.547 ***	0.161	9.216
통계 특성	평균수입	0.043	0.007	0.080	5.959 ***	0.189	7.371
	골프경력	0.086	0.009	0.178	8.540 ***	0.172	6.419
침	·여장소	-0.030	0.016	-0.017	-1.822	0.296	8.168
	경제성	0.462	0.028	0.520	15.704 ***	0.296	9.399
	사회성	-0.356	0.027	-0.381	-12.592 ***	0.222	9.287
산업 인식	문화성	0.059	0.022	0.061	2.544 **	0.288	8.182
	교류성	0.151	0.015	0.176	9.223 ***	0.177	7.210
	환경성	0.213	0.014	0.243	14.015 ***	0.281	6.229

R²=.469, F武=129.361***, ***p<.001, **p<.01



인구통계학적인 변수에서는 성별(β=-.080, t=-7.828), 연령(β=.102, t=6.547), 평균수입(β=.080, t=5.959), 골프경력(β=.178, t=8.540)이고 산업인식 변수에서는 경제성(β=.520, t=15.704), 사회성(β=-.381, t=-12.592), 문화성(β=.061, t=2.544), 교류성(β=.176, t=9.223), 환경성(β=.243, t=14.015)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인 변수에서는 p<.001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업인식 변수에서는 문화성에서 p<.01에서 그리고 경제성, 사회성, 교류성, 환경성에서는 p<.001에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위의 변수가 골프산업정책 만족도 중 시장 확대 및 투자유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4.2 산업인식에 따른 정책만족도 소결

본 절에서는 골프산업 정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인프라 구축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인구통계학적인 변수 중 성별, 연령, 평균수입, 골프경력과 산업인식 변수 중 경제성 및 환경성이 인프라구축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기술개발만족도를 종속변수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인구통계학적인 변수 중 연령, 평균수입, 골프경력, 산업인식 변수 중 경제성, 사회성, 문화성, 교류성, 환경성이 정보기술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 확대 및 투자유치 만족도를 종속변수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산업인식 변수 중 문화성, 경제성, 사회성, 교류성, 환경성 이 시장 확대 및 투자유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골프산업의 성장 시기에 골프산업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골프인구의 증대에 따른 수요에 상응하면서 국민의 공감대 형성 및 현실적인 여건과의 조화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골프장 시설의 입지 경향을 파악하고, 골프산업에 대한 인식 차이를 규명하여 인구통계적인 특성과 참여 장소, 그리고 골프산업에 대한 인식이 골프산업 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는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골프장의 입지 경향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보전대상지역 해당사항이 없는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에 입지하는 성향이 크게 나타났으며, 평가 결과도 관리계 획 수립이 가능한 C등급으로 판정되었다.

다만, 보전대상지역 중 생태자연도상 전 구역이 별도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의 보전대책을 강구하여 개발을 최소화하고 도시관리계획 입안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른 골프산업 인식은 모든 요인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산업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 골프경력은 경제성, 사회성, 문화성, 교류성, 환경성에서 산업인식 요인의 차이가 있었다.

이는 골프산업의 특성이 아직까지는 남자가 여자보다는 산업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고, 접근성이 나은 것으로 사료되며, 연령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는 바 골프산업의 인식이 중, 장년층에서 점차적으로 젊은이들에게 대중화되고 있 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중골프장과 같은 저렴한 가격으로 친숙해질 수 있는 골 프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3.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른 만족도는 남자가 여자보다 만족도가 높고, 연 령별로는 50대가 산업정책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평균수입에서는 600~800만원 의 소득을 가진 집단이 인프라구축, 정보기술개발, 시장확대 및 투자유치면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고, 골프경력에 따른 산업정책 만족도에서는 전반적으로 경력이 길수록 골프산업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으로 안정화되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사회적인 위치에 올라가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기에 골프산업 인지와 정책 만족가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는데, 8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더 나은 환경을 요구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력이 적은 골프고객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 는바 초심자들이 골프산업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된다.

4. 참여장소에 따른 골프산업 만족도는 인프라구축, 정보기술개발, 시장확대 및 투자유치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골프장 고객이 골프 연습장 고객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다 많은 고객을 골프산업으로 유인하기 위해 골프연습장의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장으로 갈 수 있는 접근성을 열어주어 제도적인 면이 아니라 경제적인 정책에서 차별화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5. 골프산업 인식에 따른 정책만족도에 관한 견해는 골프산업인식이 높을수록 정책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인구통계학적인 특성, 참여 장소, 골프산업인식에 따른 골프산업정책의 만족도는 인구통계학적인 변 수에서는 성, 연령, 평균수입, 골프경력이 주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골프산업인식 변수에서는 경제성, 환경성이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감안하여 골프산업정책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문적으로나 실용적인 면에서 골프산업에 대한 이용객의 인식 파악을 통해 골프산업정책을 수립하는데 미약하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이라고 사료되며,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는바 다음 과 같은 향후 연구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측정도구 및 분석지표의 객관성 확보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골프산업의 정책의 선행 연구 부족으로 측정도구 및 분석지표를 구축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며 추상적인 설문자료의 정량화 작업에 어려움을 느꼈다.

따라서 체계적,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측정도구와 분석 지표의 구축 필요성이 절실하였다.

2. 시계열적이고 광역적인 자료를 이용한 일반성 확보가 필요하다. 골프장 및 골프 연습장의 만족도는 인식정도에 따라서 항상 일정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시설 이용의 만족도는 다분히 주관적인 의사가 표현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시기별로 골프산업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조사 과정에서 자료 구득의 원칙을 수립할 수 있다면 보다 나은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3. 골프장 사업과 정책 결정자 등 다각적인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정책 결정자인 행정부와 골프산업 사업자 및 종사자의 골프산업인식을 측정하여 정책집행자와 산업종사자간의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여 진행한다면 진일보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강순형(1999), 제주도 관광개발을 위한 골프장 사업의 발전 방안, 제주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고동완(2003), 스키활동에서 위험지각과 감정적 반응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27(2), pp.49-69.
- 3 고동완(2005), 여가 활동의 감정적 반응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3(1), pp.19-32.
- 4 고동완·박진수(2007), 골프 활동의 관광소비 유형적 특성, 관광연구 21(4), pp.1-22.
- 5. 권성욱(2000), 국내골프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산업경영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6 김광두·방광자·강현경(2003), 수도권 지역 골프장의 환경친화성 평가, 한국조 경학회지 31(5), pp.20-30.
- 5. 김동찬·권오원(2001), 골프장 연못의 관리만족도를 위한 설계기준, 한국조경 학회지 29(5), pp.84-91.
- 7 김애랑·정인화·최종필(2005), 골프장 이용자의 소비특성에 따른 서비스 가치 지각과 만족도 차이, 한국체육학회지 44(1), pp.499-510.
- 8 김용수·성영탁(1993), 골프장의 시각적 선호 분석 -대구컨트리 클럽을 사례로 -, 한국조경학회지 21(1), pp.1013-1029.
- 9. 김재규(2004), 리조트산업의 경영성과분석을 통한 수익성 증대방안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10. 김준형(2000), 골프장의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단국 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김차용·이성호·손재만(2006), 국내골프관광의 관광특성 및 서비스품질과 재구매의도 간의 인과모형,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8, pp.139-152.
- 12. 김찬룡(2004), 골프동호인의 자기과시성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국스포 츠사회학회지 17(1), pp.73-92.



- 13. 김하영(2004), 골프참가자의 인지된 자기 존중감이 골프소비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7(2), pp.311-315.
- 14. 김홍백(2002), 국내 골프산업의 현황과 발전과제, 산업과학기술 연구논문집 7(1), pp.115-126.
- 15. 김홍백(2005), 국내 골프의 연구동향과 내용 분석, 한국스포츠리서치 16(5), pp.261-266.
- 16. 김홍철·김경식·김명준(2003), 기혼여성의 골프 참가와 가정생활 만족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2(2), pp.111-118.
- 17. 김현석(2002), 한국골프산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 특성·만족도·성과 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18. 김형주 (2003), 스포츠 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 우선 순위에 관한 연구, 한양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 노화준(1996), 한국 정책학의 발전과 성격,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 논집 34(1), pp.19-31.
- 20. 남재화(2005), 골프의 참여 동기가 생활만족의 자아실현에 미치는 영향, 한 국스포츠리서치 16(5), pp.223-230.
- 21. 류시건(1998), 골프장 이용자의 만족도 환경요인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2. 박수정(2004), 골프 참여자의 여가경험 인지의 관한 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 지 22, pp.753-763.
- 23. 박수정·김학운(2004), 골프 지속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결정요인 분석, 한국스포츠리서치 15(4), pp.51-60.
- 24. 박찬규(2004), 골프장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산 업·경영학지 9(1), pp.33-48.
- 25. 박찬규(2004), 골프장 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도 및 상품 충성도의 관계, 건 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6. 방지선(2001), 성공적 지역 스포츠이벤트를 위한 선행과제, 한국체육학회지 40(4), pp.477-485.



- 27. 변수녀(2003), 골프장 이용객의 이용형태 특성에 따른 편익세분화에 관한 연구: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8. 변우회·김용우(1999), 골프관광 활성화를 위한 선택 결정요인 영향도 분석, 관광학연구 23(1), pp.170-188.
- 29. 서주환·이철민·맹상빈(2001), 경관의 선호도 결정인자 모형 골프장을 배경으로-. 한국조경학회지 29(1), pp.1-10.
- 30. 안득수·김창환(2006), 골프장 연못의 생태적 관리를 위한 환경특성 분석, 한 국조경학회지 33(6), pp.51-77.
- 31. 양승용(2006), 골프 코스의 서비스품질과 고객만족에 관한 영향력 연구, 관광연구저널 20(1), pp.77-88.
- 32. 오대현(1998), 골프장 이용객의 만족도 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 제주 지역 골프장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33. 오정학·김유일(2001), 제주공원 이용자의 감정반응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5(3), pp.285-306.
- 34. 유시건(1997), 골프장 이용자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35. 이상행(2001), 가정주부의 골프 참여에 따른 여가인지 및 가정 생활 만족의 관계,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4(1), pp.149-160.
- 36. 이재형,·정광현(2003), 골프·스키 참가자의 참여 동기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 스포츠사회학회지 16(1), pp.251-265.
- 37. 이진희·허향진(2001), 제주도 골프장의 포지셔닝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24(3), pp.167-189.
- 38. 송윤경(2000), 골프 대중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향,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9. 손종열·박명국·강현민·정해황(1998), 골프산업의 전망과 과제, 한국사회체육학회지 9, pp.269-280.
- 40. 송기성(1999), 한국 골프장사업의 국세제도 분석, 한국 스포츠산업 경영학회 지 4(1), pp.153-168.

- 41. 안민석(1997), 골프 정책의 변화 추이와 정책 방향, 한국체육학회지 36(3), pp.248-256.
- 42. 오철규(1995), 국내골프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43. 양봉식(2004), 골프장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44. 유명상(2005), 골프장 소비자의 지각된 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 및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45. 윤지선(2003), 골프 동호인들의 참여 유형별 골프 연습장 선택 요인 연구,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6. 이남미(2000), 대중, 회원제 골프장 서비스 종업원의 상호작용적 관계에 따른 고객만족과 관계지속성,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47. 이덕성(1997), 민간영리 스포츠 시설 경영효율화 방안 : 시설만족도를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36(4), pp.415-424.
- 48. 이덕성(2004), 국내 골프관광객 만족유형에 따른 해외 골프관광객 유인 방안,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1, pp.313-324.
- 49. 이동익·이창민(2001), 골프장 이용자의 만족도가 재이용 의사에 미치는 효과, 한국사회체육학회지 15, pp.883-892.
- 50. 이보형(1999), 국내골프산업의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1. 이상석·이승주(2005), 골프장 서비스와 고객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 회체육학회지 24, pp.173-185.
- 52. 임태성·박영남(2004), 골프장 서비스 환경이 재방문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3(4), pp.591-602.
- 53. 장경로(1999), 스포츠 팬의 특성과 스포츠 경기 관람동기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사범대학 체육연구소, 「체육연구소논집」20(2), pp.109-117.
- 54. 장유비·이호순·심경구(2003), 공식 골프대회 기간 중 한국과 외국의 골프 코스들의 퍼팅그린 관리 방법 비교, 한국조경학회지 31(3), pp.91-106.

- 55. 재정경제부(2007),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
- 56. 전상준(1999), 골프리조트 공간구성과 개발계획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7. 정종훈(2006), 골프대중화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7(1), pp.262-271.
- 58. 정호권(2006), 레저스포츠 활동의 제약요인과 참여동기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9. 정희자(1999), 관광산업 인식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60. 조영권·윤기운(2005), 골프운동 참여와 여가만족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6(2), pp.93-103.
- 61. 조재기·김경두(1997), 상업 스포츠 시설 이용자의 시설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7, pp.187-196.
- 62. 조지훈(1999), 대중골프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자 시장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63. 조택구(2003), 여가스포츠 소비자의 특성에 따른 서비스만족, 재구매 의도 및 관여도의 차이,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24, pp.115-120.
- 64. 주영환(2005), 해외골프 관광객의 만족과정, 관광연구저널 19(3), pp.339-350.
- 65. 주영환(2007), 해외 골프관광객의 지각된 가치가 만족과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21(2), 325-337.
- 66. 지민준(2007), 골프산업인식이 골프산업정책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 츠리서치 18(4), pp.25-41.
- 67. 최웅재(2005), 골프 참여자의 운동 몰입 경험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 국스포츠리서치 16(6), pp.71-81.
- 68. 최인석(2008), 국내 골프관광 참여자의 속성평가와 지각된 가치가 만족 및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7(3), pp.397-408.
- 69. 최창호(1998), 경기장 관람시설과 관중반응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70. 한국골프장경영협회(2008), 골프산업 현황 및 대책, 한국골프장경영회.
- 71. 한대영(2005), 골프연습장 소비자의 참여특성 및 구매 만족도가 재구매 의 도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72. 한정훈(2005), 한국골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과 제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73. 한정훈(2007), 한국 골프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경기 : 한국학술정보 (주).
- 74. 遠藤文夫(1971), 市埬村計劃決定過程における審議會と住民參加, 學陽書房, pp.18-65.
- 75. 佐貫利雄(1984), 成長する都市 停帶する都市, 時事通信社, pp.115-119.
- 76. 青山吉隆(1986), 近藤光南, 都市公共施設の最適誘致距離の設定方法, 「都市計劃」, 日本都市計劃學會(第IV號), pp1-2.
- 77. 谷口汎邦(編著)(1983), 公共施設計劃-1, 都市·地域計劃資料集成.
- 78. 能勢哲也(1980), 公共サーヒ'スの理論と政策,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 79 杉浦芳夫(1989), 立地と空間的行動, 東京, 古今書院.
- 80. 森川洋外 3人(1967), 經濟地理Ⅲ, 交通·商業·都市(商業地理の事例研究), 大明堂, 東京, pp.187-192.
- 81. Morse, J. M, & Field, P. A.(1995),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health professionals (2nd ed.), pp.125-149. Thousand O단, CA: Sage.
- 82. A. Milman, A., Pizam, R.R., & Perdue, G.F.Ross.(1992), Resident Perception of the Impact of Tourism on an Australian City, Journal of Travel Research 30(4), pp.13-17.
- 83. Ap. John.(1992), Residents' Perception Tourism Impact,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4), pp.665-690.
- 84. Johnson, C.(1984), The Industrial Policy Debute, International for Contemporary Studies.
- 85. Krugman, P., & M. Obstfeld.(1991), International Economics Theory and Policy, Harper Collins.



- 86. R. Madrigal.(1993), A Tale of Tourism in Two Citie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0, pp.336-353.
- 87. Wall. Geoffrey., & Tae-Hee Lee.(1993), Towards Greater Appreciation of the Significance of Tourism in South Korea. The 1993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Academy for the Study of Tourism. Korea Transport Institute, pp.55-56.
- 88. Westbrook, R.A., & Oliver, R.L.(1989), the dimensionality consumption emotion, Journal of research 28(june), pp.84-96.
- 89. Backman, Sheila J.(1991),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ctivity loyalty and perceived constrain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3, pp.332-334.
- 90. Beard, J. G. and M. G. Raghab(1980),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1), pp.20-30.
- 91. Ellis, G. D. and P. A. Witt(1994), Perceived freedom in leisure and satisfaction: Exploring the factor structure of the perceived freedom components of leisure diagnostic battery, Leisure Science 16, pp.19-39.
- 92. Fridgen, J. D.(1984), Environmental psychology and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11, pp.19-39.
- 93. Hunt, H. K.(1977), CS/D-Overview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 in Conceptualization, H. Keith Hunt, 2nd ed,. Cambridge, MA: Marketing Science Institute.
- 94. Kotler, P.(1994), Marketing Management, 8th ed,. Prentice—Hall International, Edition, pp.40.
- 95. Markwick(2000), Golf tourism development. stakeholders, differing discourses and alternative agendas: the case of mala. Tourism Management 21, pp.525-524.
- 96. Parasuraman, A., V. A. Zeithaml and L. L. Berry(1994), A reassessment of expectation as a comparative standard in measuring service quality:



-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Marketing 58(Jan.), pp.491-504.
- 97. Petrick, James F., Sheila J. Backman and Robert Bixler(1998), An investigation of selected factors on golfer attachment. Vision in Leisure and Business 17(1), pp.4-10.
- 98. Petrick, James F., Sheila J. Backman, Robert Bixler and William C. Norman(2001), Analysis of golf motivations and constraints by experience use history,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3(1), pp.56-70.
- 99. Stewart, W. P.(1998), Leisure as multiphase experience: Challenging tradition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0(4), pp.391-400.



부 록

Collection @ chosun

No1. 골프장 신설사업 관련 법규

구 분	법 령	주 요 내 용
	국유재산법 (제24조, 제30조)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도로등 용도폐지
	특별소비세법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부과
	(제1조)	- 입장객 1인 1회 입장시 12000원
		∘법인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기획	법인세법	- 과세표준금액 1억원 이하 : 과세표준×15%
재정부	(제13조)	- 과세표준금액 1억원 초과 : 1,500만원+(과세표준−1 억원)×27%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의 동의(3일이내 회신)
	소방법	- 근린, 관광휴게, 숙박시설로 연면적 400㎡이상
	(제8조, 제61조의2,	·소방시설은 소방공사감리업자로 지정
	제62조)	- 동의를 받아야하는 건축물중 1,000㎡이상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자연재해대책법 (제28조~제29조)	∘재해영향평가 - 18홀 이상 골프장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નોમો ગોમો	-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취득세는 표준세율(취득가액
	지방세법	의 100분의 20)의 100분의 500으로 징수
행정	(제112조, 제188조,	- 재산세는 일률적으로 그 가액의 1000분의 50
자치부	제234조의8, 15)	-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1000분의 50)(기타시설 합산과세)
		◦면허세 부과(3,000원~45,000원 범위)
	지적법	∘토지이동 등의 등록 (토지소유자의신청)
	(제3조)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행위일로부터 60이내)
	지방재정법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보전재산의
	(제82조)	용도폐지
문화 체육 관광부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등에관한규정 (문화관광부고시 제2003-10호)	·광역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 이내
		•취수장(미고시지역인 경우)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 km이내, 하류방향으로유하거리 1km 이내
		·특별대책지역
		·골프장면적이 총임야면적의 100분의5를 초과하는 경우
		·골프장사업계획지내 산림 및 수림지확보율 100분의40미만
		◦골프장사업계획지내 원형보전확보율이 100분의20미만



골프장 신설사업 관련 법규 -계속

구 분	법령	주 요 내 용
구 분 문화 체육 관광부	법 령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9조, 제21조, 제26조, 제29조, 시행령 제16조))	●골프장에 부속된 숙박시설 설치금지 - 특별대책지역 I·II 권역, 자연보전권역, 자연공원지역내, 광역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상류방향 유하 거리 20km 이 내지역, 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 15km 이내 및 하류 방향 1km이내, 환경영향평가시 녹지보존지역 골프장 규모가 18홀이하, 방류수 수질기준 Bod 5mm/L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숙박시설과 수영장을 함께 설치할 경우 수영조 바닥면적이 200m'초과금지 숙박시설과 눈썰 매장을 함께하는 경우, 슬로프 면적 1800m'초과 금지 아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 - 농지전용허가등 9 개 항목 의제 처리 아사업계획승인의 제한 -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간 균형개발, 재해방지, 자연환경보전 및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모집신고 - 회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모집 개시일 15일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 계획서를 작성·제출 ·체육시설업의 등록 및 변경 -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개시하기 전(시·도지사) ·체육지도자의 배치 - 18홀이상 36홀이하 1인 이상, 36홀초과 2인이상 ·보험가입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보상) -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10일이내 ·착수계획서 및 준공계획서 제출 - 사업시설의 설치공사를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사를 착수하기 30일전까지 착공계획서를, 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준공보고서(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
	국민체육진흥법	∘회원제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징수
	(제19조)	- 골프장 시설 입장료의10분의1이하



골프장 신설사업 관련 법규 -계속

구 분	법 령	주 요 내 용
문화 체육 관광부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의2, 제9조의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제한 ※ 주변지역은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제한 ○전통사찰보존구역내 입지제한 ○회원제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 징수 - 골프장 시설 입장료의10분의1이하
	농지법 (제36조, 제37조, 제45조, 제42조) 농지법 (제34조, 제36조)	○농지전용의 허가, 농지전용의 신고 ○용도변경의 승인 (전용목적이 완료된 후 8년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에서 입지제한 ○농업보호구역에서 입지제한
농림 수산 식품부	초지법 (제23조, 제8조) 사방사업법 (제20조, 제14조) 농어촌정비법(제66조)	○도시, 계획관리, 개발진홍지구 이외에서 농지전용제한 ○초지전용의 허가 ○초지조성 지구내에서의 입지제한 ○사방지에서 입지제한 ○사방지내의 죽목의벌채허가 및 지정의 해제 ○농어촌관광사업규모의 제한
	(규칙제35조(별표2) 농지법(제50조) 농림부고시 (제2001-83호)	- 관광사업의 규모는 3만m ² 이상 10만m ² 미만 ·농지전용시 농지전용 부담금 납부 - 농지별 m ² 당 10,300원~13,900원
산림청	산지관리법 (제18조2항)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4항)	○보전산지의 편입면적이 100분의 50이상 - 산지전용후 절개면의 수직높이는 15m 초과금지 ○요존국유림의 산지전용 편입제한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시 3만㎡~10만㎡가능 ○불요존국유림, 공유림은 사업계획부지면적 100분의 20미만으로 20만㎡미만 * 산업단지는 100분의 30미만으로 30만㎡미만
	산지관리법 (제19조) 산지관리법 (제14,15조) 산림법(제90조)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 산지별 ㎡당 1,581원~3,162원 ●산지의 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임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골프장 신설사업 관련 법규 -계속

구 분	 법 령	주 요 내 용
丁七	급 경	
		·산림우량지역에서 산림전용, 형질변경제한
		- 생산임지지역, 공익임지지역
		-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천연기념물 지정산림
		- 보호수 수형목, 희귀동물 서식지
		- 명승지,유적지,휴양지,유원지등 고시지역
	산지관리법	- 산사태 위험지역등 고시지역
	(제18조)	◦산지의 전용제한 기준(660㎡이상 산지전용시)
	(/11031)	- 임업용산지(요존국유림, 채종림, 임업진흥권역 산지)
		- 공익용 산지(생태계, 상수도보호구역 산지등)
		- 산지경사도 25도 산지
		- 시·군·구 ha당 임목축척의 150%이상 산지
산림청		- 50년 이상 활엽수림 50%이상 지역
		* 채석단지는 절개면의 경사도 60도, 경사도35도, 당
		해산지의 100분의70이상은 입지제한
	산지관리법 (제18조2항)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4항)	·상수도보호구역등의 산지전용 제한
		- 상류방향 유하거리 10km안 지역으로 하천 양안 경
		계로부터 500m안
		◦절·성토 경사면 100분의 50이상 전용제한
		∘산지의표고 100분의 50이상 산지지역
	기사된 크고 기미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입지제한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 생태계보전지역, 자연 유보지역, 완충지역, 임시 생
		태계 보전지역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내에서 입지 제한
		·정보통신 공사업자의 시공제한
지식	정보통신공사업법	- 건축물 연면적 1천㎡이상, 구내통신선로 5회선 이
경제부	(제3조,제36조)	상 등
		·정보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
보건복지	장사등에 관한 법률	∘무연분묘 개장의 허가
가족부	(제23조)	



골프장 신설사업 관련 법규 -계속

л н	HJ 크 ⁻	م الله ع
구 분	법 령	주요내용
	자연공원법 (제18조)	자연공원지역에서의 입지제한밀집취락지구, 자연보존지구, 자연취락지구, 자연환경구, 집단시설지구
	수질환경보전법 (제34조)	○수질 1등급 지역이 아닌 경계로부터 상류 유하거리 10㎞이내 집수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의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로 유하거리 15㎞ 이내의 집수구역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9조, 10조, 제12조, 제13조, 제39조)	○오수처리대책지역에서의 입지 제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단독정화조의 설치 신고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 ○오수처리시설의 설계, 시공제한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제조업자의 등록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4조)	·조수보호지역에서의 입지제한
치거ㅂ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입지제한
환경부	(제13조)	·습지개선지역 입지제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제27조)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사업의 인·허가전) - 계획관리지역 1만㎡, 농림지역 7,500㎡이상 개발사업 ○사전환경성 검토 이행의 관리 감독 ○개발사업등의 사전허가등의 금지 - 사전환경성 검토협의가 되기 전에 허가행위를 금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26조, 제27조, 제32조)	○환경영향평가 - 25만㎡이상 개발사업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확인 ○사업 착공 등의 통보 ○환경영향평가의 재평가 - 평가서의 협의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당해 사업의 착공 후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하수도법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허가
	(제20조, 제24조)	·배수시설 설치의 신고



골프장 신설사업 관련 법규 -계속

구 분	법 령	주 요 내 용
	수도법 (제36조)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신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제30조, 제30조의2,	·폐기물처리시설의 완료검사
	제44조의2)	·폐기물의 재활용 신고
환경부	수질환경보전법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30조의2)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규제(지역고시) -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폐수무방류 시설의 설치허가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기타 수질 오염원의 설치 신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제11조, 제13조,제25조)	 ● 환경기술지원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자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특정 공사의 배출시설 사전신고 ●이동소음의 규제 ー 이동소음 원인을 야기하는 기계·기구로 인한 소음
구토 해양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조, 제28조, 제31조)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인가 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할때 중앙이나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도기관리계획의 입안의 주민제안 ○도시관리계획수립시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후에 효력이 발생



골프장 신설사업 관련 법규 -계속

구 분	법령	주 요 내 용
	I v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의
국토 해양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0조)	지정제한 -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접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10㎞이내(광역은 20㎞이내), 특별대책지역, 보안림및천연보호림, 군사시설보호구역(관할부대장과 협의시 제외), 해군기지지역(관할부대장협의시 제외), 기지지역(관할부대장협의시 제외),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 *관리지역에서 개발진흥지구 지정제한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계에서 200㎞이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500㎜이내지역,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 유하거리 20㎞이내인 하천의야안 중 당해하천의 경계로부터 1㎞이내인 지역, 하천에 유입되는 1류지천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지천의 경계로부터 500㎜이내인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으로부터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유하거리 10㎞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자천의 경계로부터 500㎜이내인 지역,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 양안중당해하편의 경계로부터 500㎜이내인 지역, 국가하천·지방1급하천의양안중당해하편의경계로부터 100㎜이내인지역, 철도·고속철도·고속국도의경계에서 500㎜이내지역(시장, 군수예외로인정시가능), 상수침수지역 또는 침수가예상되는 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골프장은 도시계획시설로써 9홀이상 골프장 건설시
	관한 법률	적용
	(제49조내지 제52조)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
		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



골프장 신설사업 관련 법규 -계속

버 검	주 요 내 용
변 경	
	•제2종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기준
	-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시설결정금지
	- 제1종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일반공업지
	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
	연환경보전지역
	- 체육시설의 규모는 3km²이내
	* 스키장과 같이하는 경우6km이내
	- 체육시설용지는 전체부지면적의60% 이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건축시설의 용지는 전체부지면적의 5%미만
관한 법률	-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녹지, 복원녹지, 완충용녹지
(제49조내지 제52조)	등으로 구획하고 전체부지 면적의 40%이상
	- 전체부지경계에서 국도, 지방도 그밖에 폭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확보
	- 부지면적 1km'미만 8M, 그이상은 10M
	- 단지내 도로는 폭 4m이상
	- 상수도 시설은 수용인원 1인1일 150L 이상 확보
	- 발생하는 하수는 BOD 10PPM이하로 처리
	- 체육시설용지는 20%이상 원형보전
	- 건축물의 용적율은 100%이하, 건폐율 40%이하
	- 건축물 층수는 5층 이하, 공작물 높이는 20m 이하
	∘개발행위의 허가(개발행위의 규모, 토지의 형질변경)
	- 주거, 상업, 자연녹지, 생산녹지 :1만㎡미만
	- 공업지역 : 3만m²미만
	- 보전녹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미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관리지역, 농림지역: 3만㎡미만
관한 법률	* 동규모 이상개발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여야
(제56,62,63조)	개발가능
	- 대상사업 : 건축물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등
	- 처리기간 : 15일(협의,심의기간 별도), 18개 항목
	인·허가 의제
	관한 법률 (제49조내지 제5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골프장 신설사업 관련 법규 -계속

구 분	법 령	주 요 내 용
1 4	H 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62,63조)	 ○개발행위의 준공검사 -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사용승인 얻은 경우 제외) ○녹지지역등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거나 조수류 등의 서식,우량농지의 보전지역 개발제한 ○주변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등이 오염, 손상우려지역 하가제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등으로 용도지구변경 우려지역 허가제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역 ○기반시설부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역
		∘너비 4m이상 도로를 확보, 도로는 인근도로와 연결
국토 해양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 제1종제2종 전용주거지역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 유통상업지역내, 전용·일반 공업지역내, 보전녹지지 역내, 보전·생산 관리지역내, 농림지역내, 자연환경 보전지역내, 자연취락지구내, 시가화 조정구역내,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입지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78,79,80,81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한 - 주거지역(70%), 상업지역(90%), 공업지역 (70%), 녹지지역(20%),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20%), 계획관리지역(40%)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제한 - 주거지역(500%),상업지역(1천500%),공업지역(400%), 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100%),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80%) ○용도지역 미지정,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에 준함 ○개발제한구역내 입지규제 - 경사도가15도를 넘는 부분이 사업계획면적의 100분
		- 경사도가15도를 넘는 무준이 사업계획면적의 100분 50이상 지역, 절·성토높이가 15미터 초과, 원형으로 보존되는 임야의 면적은 골프장의 사업계획면적의 100분의60 초과



골프장 신설사업 관련 법규 -계속

구 분	법 령	주 요 내 용
	н о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신고사항의 변경
		·건축허가의 제한
		- 건국이기ㅋ 세현 -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
		관이 국방문화재보존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상 특
		히 필요하다고 인정, 요청하는 경우(국토해양부 장
		관)
		-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도지사)
		·가설건축물의 신고 및 착공신고
	_1 =	·공사감리자 및 시공자의 선정
	건축법	- 허가를 받은 건축물(공사감리자), 연면적 495㎡이상
	(제4조, 제5조, 제8조,	건축물(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의한 시공자)
국토	제10조, 제12조, 제14조,	
해양부	제15조, 제16조, 제18조,	
" " "		∘대지안의 조경(200㎡이상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39조,제40조)	-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이상을 도로 접하여야함.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
		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 또는 예외규정
		·건축선의 지정
		- 소요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너비의 2분의 1에 상당하
		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
		·구조안전의 확인
		- 층수 3층이상 건축물, 연면적 1천㎡이상 건축물, 높
		이 13미터이상 건축물, 처마높이 9미터이상 건축물,
		기둥과 기둥사이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이상인 건축물



골프장 신설사업 관련 법규 -계속

구 분	법 령	주 요 내 용
, =	ц о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 등
국토해양부	건축법 (제4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7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39조,제40조)	- 5층이상 또는 지하2층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 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 - 건축물의 피난층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 -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 - 공동주택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에 한한다)은 같은 건축물안에 함께 설치금지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이상인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금 ─ 기반시설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위해방지 ㆍ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
	(제118조)	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
	건축법 (제43조, 제49조, 제53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사용 ○대지의 분할제한 -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은 60㎡ 이상으로 분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전용·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 4m이하인 부분은 1m이상, 높이 8m이하는 2m이상,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은 당해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이상 확보



골프장 신설사업 관련 법규 -계속

그님 비러 조스케 (
구 분	법 령	주 요 내 용
		·하천 연안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 하천부속물 손괴, 하천에의 토사유입이나 홍수범람
	하천법	우려가 있는 하천에 인접된 일정한 하천구역 경계
		로부터 500미터 범위
		·하천공사의 시행허가(비관리청 허가)
국토		○하천의 점용허가
해양부	사도법	아사도의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제4조, 제7조)	-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시장 군수의 허가
		•사도 통행의 제한 또는 금지의 허가
	도시공원법(제8조)	·도시공원지역내 점용허가의 제한
	공유수면관리법(제5,8조)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공유수면매립법(제9조)	·공유수면 매립의 면허
	011 1 包 11 日 日 (11 0 工)	∘공유수면점용의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문화재보호법 (제20, 48, 74조)	·문화재 영향심의
		- 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서 검토지역 범
청		위설정하고 영향이 있는 경우 심의
0		* 서울 100m, 광역시 200m, 도지역 500m내에 국가
		지정문화재는 문화재심의위원회(국가 또는 지방)
		∘문화재 지표조사 (사업면적 3만㎡이상)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의 지정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의 행위제한
		∘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운영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 일정규모 이상의 골프장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제27조~제29조,	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지하수 인공 함양시설
제주도	(세27조~세29조, 제23조의2, 제59조,제62조)	∘개발사업의 시행 및 변경승인
		-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
		승인을 얻어야함 (개발사업지구내)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 개발사업중 영향평가 대상인 사업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No2. 평가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자료목록 및 출처

				구	분	출 처	축 척
	7	지형드	Ē	수치지형도		국토지리정보원	1:5,000, 1:25,000
	7	지질.	Ē	수치지질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0,000
				토지종합정보도	E면(LMIS도면)	지자체	_
	-	지적도	-	지적도면전산지	· 구료	지자체	1:500
		1742	<u>.</u>	토지특성도		국토지리정보원	1:5,000
				지가현황도		지자체	1:5,000
				도시개발구역형	변황도	지자체	_
			기	지구단위계획구	구역현황도	지자체	_
			개 발	산업(농공)단지	시(예정지)현황도	지자체	-
			지	개발진흥(개촉	산촉)현황도	지자체	_
			현 황	취락지구현황도	Ē	지자체	
도		개	도	관광단지현황도	Ē	지자체	_
면 자		발 기		유통단지·복합화	화물터미널현황도	지자체	_
- ^r - 료		기 준	고	교통시설도	고속도로iC,도로,철도 등	수치지형도, LMIS	_
			0공6	공공시설도	공공청사	지자체	_
	주 제		언익		학교,운동장,도서관 등	지자체,수치지적도,LMIS	_
	도		공공편이시설현황도	공급 및 환경기초시설	상·하수도,전기,가스시설	지자체,유관기관,LMIS	_
			자	자연환경현황도	도(생태자연도,임상도,녹지자연도)	환경부	1:25,000
		보 전	연 보 전	산림이용기본5	Ē	산림청	1:25,000
		기	수	하천유역도(수	자원단위지도)	한국수자원공사	1:25,000
		준	질	집수구역도(저	수지현황 전산자료)	농업기반공사,유관기관	1:25,000
			보 전	상수원보호구역	- 부현황도	지자체,LMIS	_



평가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자료목록 및 출처 - 계속

				구	분	출 처	축 척
					사방지현황도	지자체	_
					연약지반현황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0,000
				재해발생	상습침수지역현황도	지자체	_
				위험지역	재해위험구역현황도	지자체,LMIS	_
				현황도	재해위험지구현황도	지자체,LMIS	_
					재난위험지구현황도	지자체,LMIS	_
					중점관리대상지역현황도	지자체,LMIS	_
					개발제한구역현황도	국토이용계획도	_
			계		수산자원보호구역현황도	지자체,자연환경현황도	_
도		보	획보		보전임지도(생산·공익)	산림이용기본도,LMIS	_
도 면	주	전 기	전		문화재보호구역현황도	LMIS,산림이용기본도	-
자	제 도	건 준			도시자연공원현황도	지자체	_
豆				공적규제	특별대책지역현황도	지자체,LMIS	_
				지역	수변구역현황도	지자체,LMIS	_
				현황도	습지보호구역현황도	지자체	_
					제한구역현황도	지자체,LMIS	_
					생태계보전지역,야생동식물특별 보호구역,자연생태계특별보호구 역	지자체,LMIS	_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현황 도	LMIS,자연환경현황도	_
				경지정리지역현	현황도	지자체,농지이용현황도	_
				용도지역현황도	(구법상 국토이용계획도)	지자체	_
속	개	별지	가	개별공시지가전	선산자료(*.mdb)	지자체	_
성 자 료	국	·공유	-지	국·공유지대장		지자체	_

No3. 전국등록골프장 현황(2008. 12. 31 기준)

○총계																	
기 비	지	서	부	대	인	광	대	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구분	역	울	산	구	천	주	전	산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합계	437	0	7	2	5	3	3	4	139	46	27	18	22	36	47	33	45
회원	237	0	5	1	2	1	1	2	84	22	15	10	7	15	22	21	29
대중	200	0	2	1	3	2	2	2	55	24	12	8	15	21	25	12	16

○운영중																	
7.14	지	서	부	대	인	광	대	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구분	역	울	산	구	천	주	전	산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합계	311	0	5	2	4	0	2	3	110	37	19	10	11	21	31	18	38
회원	183	0	4	1	1	0	1	2	73	20	11	6	4	9	14	13	24
대중	128	0	1	1	3	0	1	1	37	17	8	4	7	12	17	5	14

ㅇ건설중																	
7 11	지	서	부	대	인	광	대	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구분	역	울	산	구	천	주	전	산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합계	99	0	2	0	1	3	1	1	24	5	7	5	10	14	12	11	3
회원	49	0	1	0	1	1	0	0	10	2	4	3	3	6	7	8	3
대중	50	0	1	0	0	2	1	1	14	3	3	2	7	8	5	3	0

ㅇ미착공																	
그 ㅂ	지	서	부	대	인	광	대	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구분	역	울	산	구	천	주	전	산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합계	27	0	0	0	0	0	0	0	5	4	1	3	1	1	4	4	4
회원	5	0	0	0	0	0	0	0	1	0	0	1	0	0	1	0	2
대중	22	0	0	0	0	0	0	0	4	4	1	2	1	1	3	4	2



No4. 전국등록골프장 현황(2008. 12. 31 기준) - 운영중인 회원제골프장 현황

시도별	골프장명	사업자명	위 치	홀수	등록일	비고
부산	동래베네스트	삼성물산㈜	금정구 선동	18	'89.12.	
(4)	부산	(사)부산컨트리클럽	금정구 노포동	18	'89.12.	사단법인
	아시아드	부산관광개발㈜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27	'02.08.	
	해운대	경원개발㈜	기장군 정관면 병산리	27	'05.09.	
대구 (1)	팔공	우경개발㈜	동구 도학동	18	'87.07.	
인천 (1)	인천국제	㈜신태진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8	'70.08.	
대전 (1)	유성	유성관광㈜	유성구 덕명동	18	'75.10.	
울산	울산	(사)울산개발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27	'88.06.	사단법인
(2)	보라	㈜반도개발	울주군 삼동면 금곡리	27	'04.11.	
경기	한양	㈜한양컨트리클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36	'64.09.	
(73)	뉴코리아	신고려관광㈜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18	'66.11.	
	안양베네스트	삼성에버랜드㈜	군포시 부곡동	18	'67.11.	
	리베라	㈜관악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	36	'72.02.	
	파인리조트	㈜파인리조트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27	'72.11.	
	남서울	경원건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18	'74.11.	
	수원	㈜삼흥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36	'75.04.	
	레이크우드	로얄개발㈜	양주시 만송동	27	'76.05.	
	여주	IGM㈜	여주군 여주읍 월성리	27	'76.10.	
	프라자	한화리조트㈜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36	'80.06.	
	태광	㈜태광관광개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27	'84.04.	
	한성	한성관광개발㈜	용인시 구성구 보정동	27	'84.06.	
	캐슬렉스	사조개발㈜	하남시 감이동	18	'86.03.	
	제일	㈜제일스포츠센타	안산시 부곡동	27	'86.08.	
	골드	기흥관광개발㈜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36	'86.09.	
	덕평	덕평관광개발㈜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	18	'86.10.	
	뉴서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주시 삼동	36	'87.10.	
	중부	애경개발㈜	광주시 실천면 곤지암리	18	'87.10.	
	88	국가보훈처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36	'88.05.	



전국등록골프장 현황(2008. 12. 31 기준) - 운영중인 회원제골프장 현황(계속)

시도별	골프장명	사업자명	위 치	홀수	등록일	비고
경기	양주	근영농산㈜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18	'90.12.	
	솔모로	㈜한일레저	여주군 가남면 양귀리	36	'91.07.	
	기흥	삼남개발㈜	화성시 동탄면 신리	36	'91.08.	
	남부	금보개발㈜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18	'91.12.	
	이포	보광개발㈜	여주군 금사면 장흥리	18	'92.02.	
	한원	㈜한원cc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27	'70.10.	
	블루헤런	하이트개발㈜	여주군 대신면 상구리	18	'92.03.	
	발안	신창기업㈜	화성시 팔탄면 해창리	18	'92.08.	대중9홀 별도
	금강	㈜금강레저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	18	'92.08.	대중9홀 별도
	신원	일신레저㈜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27	'92.08.	
	필로스	㈜선운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27	'92.09.	
	안성	㈜한일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	18	'93.04.	
	자유	신세계건설㈜	여주군 가남면 삼군리	18	'93.05.	
	서서울	서서울관광㈜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18	'93.06.	
	아시아나	아시아나레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36	'93.06.	
	은화삼	용인개발㈜	용인시 처인구 남면	18	'93.06.	
	태영	㈜태영레저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18	'93.08.	대중9홀 별도
	곤지암	㈜서브원	광주시 도척면 도웅리	18	'93.12.	
	뉴스프링빌	㈜이덕	이천시 모가면 두미리	36	'94.06.	대중9홀 별도
	지산	지산리조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27	'94.06.	대중9홀 별도
	코리아	뉴경기관광㈜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27	'94.06.	대중9홀 별도
	경기	태우관광개발㈜	광주시 실촌면 오향리	18	'94.12.	대중9홀 별도
	신라	삼공개발㈜	여주군 북내면 덕산리	27	'95.03.	
	송추	㈜티에스개발	양주시 광적면 비암리	18	'95.06.	
	일동레이크	농심개발㈜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18	'95.08.	대중9홀 별도
	김포씨사이드	해강개발㈜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18	'95.10.	
	화산	화산개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18	'96.09.	
	강남300	자인관광㈜	광주시 목동 497-6	18	'97.05.	
	레이크사이드	㈜서울레이크사이드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18	'97.09.	대중36홀별도
	광릉	광릉레저㈜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18	'97.10	대중6홀 별도
	레이크힐스	일송개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27	'98.06.	대중9홀 별도



전국등록골프장 현황(2008. 12. 31 기준) - 운영중인 회원제골프장 현황(계속)

시도별	골프장명	사업자명	위 치	홀수	등록일	비고
경기	신안	신안종합레저㈜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18	'99.02.	
	포천아도니스	㈜아도니스	포천시 신북면 고일리	27	'99.03.	대중9홀 별도
	다이너스티	H&H레저㈜	동두천시 하봉암동	18	'99.03.	
	안성베네스트	삼성에버랜드㈜	안성시 금광면 삼흥리	27	'99.06.	대중9홀 별도
	썬힐	다함레저㈜	가평군 하면 하판리	18	'99.09.	대중18홀별도
	비전힐스	㈜비전힐스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18	'00.06.	
	파인크리크	㈜동양레저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	18	'00.06.	대중9홀 별도
	그린힐	신안개발㈜	광주시 실촌면 이선리	18	'00.06.	대중9홀 별도
	서원밸리	서원레저㈜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18	'00.06.	대중9홀 별도
	이스트밸리	청남관광㈜	광주시 실촌면 건업리	27	'01.10.	
	스카이밸리	태성관광개발㈜	여주군 북내면 운촌리	27	'02.03.	대중9홀 별도
	마이다스밸리	㈜더디엔에스	가평군 설악면 이천리	18	'02.04.	대중6홀 별도
	렉스필드	렉스필드컨트리클럽㈜	여주군 산북면 상품리	18	'03.06.	대중9홀 별도
	비에이비스타	삼풍관광㈜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36	'03.06.	대중9홀 별도
	프리스틴밸리	㈜평산투자개발	가평군 설악면 이천리	18	'03.08.	
	남촌	남촌레저개발㈜	광주시 실촌면 이선리	18	'03.12.	
	캐슬파인	캐슬파인리조트㈜	여주군 강천면 부평리	18	'04.02.	
	몽베르	㈜동우개발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36	'04.06.	18홀 등록
	크리스탈밸리	㈜한송	가평군 상면 항사리	18	'04.09.	
	가평베네스트	㈜삼성에버랜드	가평군 상면 상동리	27	'04.09.	
	리츠칼튼	㈜청송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	27	'05.08.	
	윈체스트	㈜다림개발	안성시 서운면 오촌리	18	'07.06.	
	해비치	해비치컨트리클럽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18	'07.03.	
강원	설악프라자	한화리조트(주)	속초시 장사동	18	'84.07.	
(20)	용평리조트	㈜용평리조트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18	'89.05.	대중9홀 별도
	라데나	두산큐빅스㈜	춘천시 신동면 정족리	27	'90.08.	
	강촌	GS건설㈜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27	'97.03.	대중10홀별도
	오크밸리	한솔개발㈜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36	'98.06.	대중9홀 별도
	오크힐스	한솔개발㈜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18	'06.11.	
	휘닉스파크	㈜보광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18	'99.04.	대중6홀 별도
	파인밸리	㈜동양레저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18	'03.10.	



전국등록골프장 현황(2008. 12. 31 기준) - 운영중인 회원제골프장 현황(계속)

시도별	골프장명	사업자명	위 치	홀수	등록일	비고
강원	센추리21	센추리개발㈜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18	'03.10.	대중9홀 별도
	센추리21(Ⅱ)	센추리개발㈜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18	'05.10.	
	버치힐(용평2차)	㈜용평리조트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18	'04.07.	
	제이드팰리스	한화리조트㈜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18	'04.09.	
	비발디파크	㈜비발디파크씨씨	홍천군 서면 팔봉리	18	'05.04.	대중9홀 별도
	파인리즈	진흥레저개발㈜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18	'06.07.	
	샌드파인	㈜승산레저	강릉시 저동	18	'07.02.	
	오스타	현대시멘트㈜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	18	'07.05.	
	동원썬밸리	성운전설㈜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18	'07.08.	
	골든비치	㈜새서울레저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27	'07.08.	
	청우	삼대양레저㈜	횡성군 우천면 하대리	18	'08.07.	
	오투	태백관광개발공사	태백시 황지동	18	'08.10.	대중9홀 별도
충북	그랜드	청주개발㈜	청원군 오창면 화산리	27	'99.09.	
(11)	임페리얼레이크	㈜신천지리조트	충주시 금가면 월상리	18	'90.10.	
	중앙	중앙관광개발㈜	진천군 백곡면 성대리	27	'92.04.	
	천룡	천룡종합개발㈜	진천군 이월면 신계리	27	'95.08.	대중9홀 별도
	시그너스	주시그너스컨트리클럽	충주시 앙성면 중전리	27	'96.08.	
	떼제베	옥산레저㈜	청원군 옥산면 환희리	27	'01.12.	대중9홀 별도
	썬밸리	㈜연흥개발	음성군 삼성면 대사리	18	'03.09.	
	실크리버	삼영흥발㈜	청원군 남이면 산막리	18	'04.09.	
	레인보우힐스	㈜동부월드	음성군 생극면 생리	18	'07.09.	대중9홀 별도
	상떼힐	㈜상떼힐	충주시 앙성면 지당리	18	'07.12.	
	센테리움	금강종합건설	충주시 노은면 신효리	18	'08.06.	
충남	도고	㈜도고칸추리구락부	아산시 선장면 신성리	18	'75.10.	
(6)	코오롱우정힐스	그린나래㈜	천안시 동남구 목천면	18	'93.05.	
	IMG National	대명개발㈜	연기군 전의면 유천리	27	'94.11.	
	에딘버러	㈜부토	금산군 진산면 행정리	18	'03.06.	
	버드우드	㈜버드우드	천안시 병천면 매성리	18	'06.08.	
	태안비치	리치빌개발㈜	태안군 근홍면 정죽리	18	'06.08.	
전북	상떼힐익산	성원개발㈜	익산시 덕기동	18	'73.10.	대중6홀 별도
(4)	태인	우진관광개발㈜	정읍시 태인읍 증산리	18	'97.07.	대중7홀 별도



전국등록골프장 현황(2008. 12. 31 기준) - 운영중인 회원제골프장 현황(계속)

시도별	골프장명	사업자명	위치	홀수	등록일	비고
전북	무주	㈜무주리조트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18	'05.08.	
	군산	군산레저산업㈜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18	'07.02.	대중63홀별도
전남	광주	광주관광개발㈜	곡성군 옥과면 합강리	27	'83.10.	
(9)	남광주	남광주관광㈜	화순군 춘양면 양곡리	18	'91.09.	
	승주	㈜승광	순천시 상사면 오곡리	27	'92.08.	
	클럽900	㈜클럽900	화순군 도곡면 쌍옥리	27	'95.09.	
	파인힐스	㈜보성레저산업	순천시 주암면 문길리	18	'04.11.	대중9홀 별도
	다이너스티	㈜광주일보사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18	'05.01.	
	골든레이크	나주관광개발㈜	나주시 공산면 우산리	18	'06.09.	대중18홀별도
	담양다이너스티	에이취에이취㈜	담양군 금성면 외추리	18	'07.12.	
	레이크힐스	㈜레이크힐스	순천시 주암면 행정리	18	'08.03.	대중18홀별도
경북	대구골프장	경산개발㈜	경산 진량 선화	27	'75.03.	
(14)	경주신라	㈜경주신라CC	경주 신평동	36	'79.09.	
	파미힐스	㈜한길	칠곡 왜관 매원	36	'93.03.	
	선산	㈜구미개발	구미 산동 인덕	18	'94.06.	
	마우나오션	㈜마우나오션개발	경주 양남 신대	18	'99.07.	
	포항	영우개발㈜	포항 송라 대전	18	'05.11.	
	서라벌	㈜서라벌	경주 외동 석계	18	'05.12.	
	THE HONORS	㈜태영	경주 천군동	27	'06.08.	
	오션뷰	㈜오션뷰	영덕군 강구면 삼사	18	'06.10.	
	헤븐랜드	㈜연우개발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18	'07.05.	
	떼제베이스트	안동개발㈜	안동 일직 조탑	18	'07.08.	
	오펠	부성개발㈜	영천 고경 동도	27	'07.09.	
	청도그레이스	㈜태왕아너스	청도 이서 각계리	27	'07.09.	
	인터불고경산	㈜인터불고경산	경산 평산	27	'07.10.	
경남	창원	㈜창원컨트리클럽	창원시 봉림동	18	'84.09.	
(13)	통도	㈜동일리조트	양산시 하북면 답곡리	36	'85.12.	
	가야	가야개발㈜	김해시 삼방동	45	'92.03.	
	부곡	현일개발㈜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18	'91.01.	
	용원	용원개발㈜	진해시 용원동	27	'91.11.	
	진주	진주개발㈜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18	'96.11.	



전국등록골프장 현황(2008. 12. 31 기준) - 운영중인 회원제골프장 현황(계속)

시도별	골프장명	사업자명	위 치	홀수	등록일	비고
경남	동부산	㈜동부산컨트리클럽	양산시 웅상읍 매곡리	27	'97.12.	
	에이원	에이원컨트리클럽㈜	양산시 웅상읍 매곡리	27	'99.05.	
	정산	정산개발㈜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27	'05.11.	
	에덴밸리	신세계관광개발㈜	양산시 원동면, 어곡동	18	'06.05.	
	레이크힐스경남	㈜레이크힐스경남	함안군 칠원면 운곡리	18	'06.07.	
	아델스코트	해인레저산업㈜	합천군 가야면 성기리	27	'07.09.	
	스카이힐김해	㈜롯데산업	김해시 진례면 송현리	18	'08.10.	
제주	오라	오라관광㈜	제주시 오라동	36	'79.08.	
(24)	제주	제주칸트리클럽㈜	제주시 영평동	18	'86.03.	대중9홀 별도
	중문	한국관광공사	서귀포시 색달동	18	'89.05.	
	캐슬렉스제주	(주)캐슬렉스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18	'95.04.	대중9홀 별도
	크라운	(재)관정이종환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8	'98.06.	대중9홀 별도
	핀크스	㈜핀크스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18	'99.01.	대중9홀 별도
	해비치	해비치리조트㈜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27	'99.09.	대중9홀 별도
	나인브릿지	CJ개발㈜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18	'01.07.	대중6홀 별도
	레이크힐스제주	㈜레이크힐스	서귀포시 중문동	27	'02.12.	
	라온	라온레저개발㈜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7	'04.10.	
	엘리시안	GS건설㈜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27	'04.11.	대중9홀 별도
	블랙스톤	㈜블랙스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8	'05.06.	
	스카이	㈜호텔롯데	서귀포시 색달동	27	'05.02.	대중9홀 별도
	로드랜드	㈜로드랜드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27	'05.02.	
	사이프러스	제주리조트㈜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7	'05.06.	
	제피로스	제피로스㈜	제주시 조천읍 외홀리	18	'06.09.	
	에버리스	신안관광개발㈜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18	'06.12.	대중9홀 별도
	라헨느	라헨느리조트㈜	제주시 봉개동	18	'07.02.	
	한라산	㈜부건	제주시 오등동	18	'07.05.	
	테디벨리	㈜에이에스개발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8	'07.09.	
	세인트포	㈜에니스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36	'07.11.	
	부영	남광건설산업㈜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18	'08.01.	대중9홀 별도
	우리들	㈜우리들리조트	서귀포시 상효동	18	'08.09.	
	더클래식	㈜효원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18	'08.09.	



No5. 전국등록골프장 현황(2008. 12. 31 기준) - 운영중인 대중제골프장 현황

시도별	골프장명	사업자명	위 치	홀수	등록일	비고
부산 (1)	하이스트	㈜정상개발	강서구 지사동	9	'08.11.	
대구 (1)	냉천	 냉천개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9	'87.10.	
인천	송도	㈜송도골프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8	'91.11.	
(3)	인천그랜드	임 재원	인천시 서구 원창동	18	'01.10.	
	sky72	스카이72㈜	인천시 중구 운서동	72	'05.07.	
대전 (1)	대덕연구단지 체육공원	대덕연구개발특구 복지센타	유성구 전민동	9	'93.02.	
울산 (1)	삼남	㈜삼남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9	'05.10.	
경기	1.2.3	㈜1.2.3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6	'74.02.	
(37)	레이크사이드	㈜서울레이크사이드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36	'90.10.	병설대중
	올림픽	조영관광㈜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9	'90.12.	
	베어스타운	㈜예지실업	포천시 내촌면 소학리	9	'91.03.	
	발안	신창기업㈜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9	'92.08.	병설대중
	태영	㈜태영레저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9	'93.08.	병설대중
	코리아	뉴경기관광㈜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9	'96.03.	병설대중
	라비돌	㈜라비돌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9	'96.12.	
	태광	태광관광㈜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9	'97.01.	병설대중
	뉴스프링빌	㈜이덕	이천시 모가면 두미리	9	'98.09.	병설대중
	지산	지산리조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9	'99.02.	병설대중
	포천아도니스	㈜아도니스	포천시 산북면 고일리	9	'99.03.	병설대중
	썬힐	다함레저㈜	가평군 하면 하판리 산	18	'99.09.	병설대중
	글렌로스	삼성에버랜드㈜	용인시 처인구 포곡면	9	'99.09.	
	레이크힐스	일송개발㈜	안성시 양성면 산정리	9	'00.05.	병설대중
	남여주	한국체육진흥㈜	여주군 여주읍 하거리	18	'00.05.	
	파인크리크	㈜동양레저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	9	'00.06.	병설대중
	안세사트대중	삼성에버랜드㈜	안성시 금광면 삼흥리	9	'00.09.	병설대중
	스카이밸리	태성관광개발㈜	여주군 북내면 운촌리	9	'02.03.	병설대중
	광릉	광릉레저㈜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6	'02.10.	병설대중
	신안퍼블릭	신안종합레저㈜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	9	'02.11.	병설대중



전국등록골프장 현황(2008. 12. 31 기준) - 운영중인 대중제골프장 현황(계속)

시도별	골프장명	사업자명	위 치	홀수	등록일	비고
경기	비에이비스타	삼풍관광㈜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9	'03.07.	병설대중
	렉스필드	렉스필드컨트리클럽㈜	여주군 산북면 상품리	9	'03.10.	병설대중
	베어크리크	삼보개발㈜	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36	'03.10.	
	서원밸리대중	서원레저㈜	파주시 광탄면 발랑리	9	'04.04.	병설대중
	용인대중	㈜용인C.C	용인 처인구 백암면	9	'05.11.	
	석천대중	석천씨씨㈜	용인 처인구 백암면	9	'05.11.	
	빅토리아	㈜성산레저	여주군 가남면 송림리	9	'06.02.	
	금강대중	㈜금강레저	여주군 여주읍 연라리	9	'06.09.	
	소피아그린	교원나라레저개발㈜	여주군 점동면 현수리	27	'06.09.	
	상록GC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화성시 동탄면 신리	18	'06.10.	
	아리지	㈜한조개발	여주군 가남면 양귀리	27	'07.04.	
	더반	㈜딤플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	9	'07.09.	
	노스폴컨트리	㈜덕송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9	'08.04.	
	웨스트파인	동양레저㈜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18	'08.05.	
	제이퍼블릭	㈜포스메이트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6	'08.05.	
	화성골프클럽	㈜리더스	화성시 북양동	9	'08.10.	
강원	용평리조트대중	㈜용평리조트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9	'88.04.	병설대중
(37)	알프스	㈜대영	고성군 간성읍 흘리	6	'93.05.	휴업중
	동서울레스피아	㈜동서울레스피아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9	'94.08.	
	파크밸리	강원레저개발㈜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산	18	'96.05.	
	영랑호	한일합섬㈜	속초시 금호동	9	'96.10.	
	휘닉스파크	㈜보광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6	'98.07.	병설대중
	비발디파크	㈜대명레저산업	홍천군 서면 팔봉리	9	'98.07.	
	대명설악	㈜대명레저산업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9	'98.08.	
	한탄강	㈜귀뚜라미랜드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18	'01.02.	
	오크밸리	한솔개발㈜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9	'01.06.	병설대중
	하이원CC	㈜강원랜드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18	'05.06.	
	오스타	현대시멘트㈜	횡성군 둔내면 두원리	9	'05.08.	
	강촌리조트	GS건설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10	'05.08.	
	설악썬밸리	㈜동광개발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27	'05.10.	
	센추리21	센추리개발㈜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9	'06.10.	



전국등록골프장 현황(2008. 12. 31 기준) - 운영중인 대중제골프장 현황(계속)

시도별	골프장명	사업자명		위	치	홀수	등록일	비고
강원	블랙밸리	블랙밸리컨트리클럽㈜	삼척시	도계읍	상덕리	18	'06.12.	
	오투	태백관광개발공사	태백시	황지동		9	'08.10.	
충북	천룡	천룡종합개발㈜	진천군	이월면	신계리	9	'99.09.	병설대중
(8)	떼제베	옥산레저㈜	청원군	옥산면	동림리	9	'05.01	병설대중
	중원	㈜다함넷	충주시	산척면	영덕리	27	'05.05.	
	오스타단양	현대시멘트㈜	단양군	매포읍	고양리	18	'05.06.	
	레인보우힐스	㈜동부월드	음성군	생극면	생리	9	'07.09.	
	골드나인	호정개발	청원군	낭성면	호정리	9	'08.01.	
	히든밸리	㈜아름다운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	18	'08.01.	
	센테리움	금강종합건설	충주시	노은면	신효리	9	'08.06.	
충남 (4)	천안상록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천안시	수신면	장산리	27	'97.02.	
	프린세스	공주개발㈜	공주시	정안면	인풍리	18	'07.07.	
	파인스톤	㈜파인스톤	당진군	송산면	무수리	18	'08.04.	
	백제	대국건설산업㈜	부여군	은산면	나령리	18	'08.09.	
전북	태인	우진관광개발㈜	정읍시	태인면	증산리	7	'96.01.	
(7)	금과	금과관광레저타운	순창군	순창읍	방축리	6	'03.05.	
	아네스빌	㈜ 벽원레저개발	김제시	황산면	봉월리	9	'05.05.	
	군산	군산레져산업㈜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63	'06.02.	조건부등록
	고창	동호레져㈜	고창군	심원면	고전리	21	'06.06.	
	OK	㈜오케이	완주군	소양면	년 화심리	9	'08.08.	
	선운산	㈜선운레이크밸리	고창군	아산면	년 용계리	18	'08.09.	회원제에서전환
전남	무안	남화산업㈜	무안군	청계면	도대리	36	'97.09.	
(12)	파인힐스	㈜보성레저산업	순천시	주암면	년 문길리	9	'04.11.	병설대중
	아크로 영암	영암관광개발㈜ 영암급	여야그 그저면 제근기	27	'03.09.	회원제(18홀)		
			정답신	형암군 금정면 세류리	21	'05.04.	에서전환	
	나주	㈜나주컨트리클럽	나주시	공산면	년 상방리	9	'05.09.	
	골든레이크	㈜나주관광개발	나주시	남평읍	유 우산리	18	'05.09.	회원제18홀별도
	백양	프린스산업개발㈜	장성군	북이면	년 사거리	6	'06.08.	
	창평	㈜담양골프랜드	담양군	창평면	면 오강리	9	'06.09.	
	힐사이드	㈜죽산기업	순천시	별양면	죽산리 산	9	'07.03.	
	조아밸리	㈜조아개발	화순군	도곡면	대곡리	9	'07.05.	



전국등록골프장 현황(2008. 12. 31 기준) - 운영중인 대중제골프장 현황(계속)

시도별	골프장명	사업자명	위 치	홀수	등록일	비고
전남	레이크힐스	㈜레이크힐스	순천시 주암면 행정리	18	'08.03.	
	보성	㈜완이엔텍	보성군 조성면 대곡리	18	'08.05.	
	영광	대호관광개발㈜	영광군 영광읍 구수리	18	'08.09.	
경북	보문	(주)경북관광개발공사	경주 신평동	18	'87.10.	
(17)	코오롱호텔기든	㈜코오롱글로텍	경주 마동	8	'88.08.	
	경주	보문개발㈜	경주 북군동	18	'92.02.	
	제이스	㈜구미개발	구미 산동 인덕	18	'99.09.	
	우리	㈜퍼블릭개발	경주 양남 신대	9	'03.09.	
	서라벌	㈜서라벌	경주 외동 석계	18	'05.12.	
	제이스cc시사이드	㈜구미개발감포지점	경주 감포 나정	18	'06.03.	
	문경레저타운	㈜문경레저타운	문경 마성 외어	18	'06.12.	
	선리치	월성종합건설㈜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9	'07.06.	
	청하이스턴	㈜이스턴	포항 청하 신흥	9	'07.08.	
	포항	영우개발㈜	포항시 송라면 화진리	9	'08.03.	
	오렌지	링스이엔씨	상주시 모서면 화현리	18	'08.04.	
	뉴스프링빌Ⅱ	㈜동승레저	상주시 모서면 호음리	18	'08.05.	
	오션뷰	㈜오션뷰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6	'08.05.	
	유니밸리	고령컨트리클럽㈜	고령군 고령읍 내곡리	9	'08.09.	
	가산	㈜대교디앤에스	칠곡군 가산면 학하리	9	'08.09.	
	한맥&노블리아	한맥개발㈜	예천군 호평면 황지리	18	'08.12.	
경남	가야	가야개발㈜	김해시 삼방동	9	'05.08.	
(5)	선베이CC	에머슨퍼시픽㈜	남해군 남면 덕월리	9	'06.11.	
	선베이GC	에머슨퍼시픽㈜	남해군 남면 평산리	9	'06.11.	
	의령친환경대중	의령군수	의령군 의령읍 대산리	9	'08.06.	
	리더스	㈜리더스컨트리클럽	밀양시 활성동	27	'08.08.	
제주	캐슬렉스제주	㈜캐슬렉스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9	'95.04.	병설대중
(14)	크라운	(재)관정이종환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9	'98.06.	병설대중
	핀크스	㈜핀크스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9	'98.09.	병설대중
	해비치	해비치리조트㈜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9	'99.05.	병설대중
	나인브릿지	CJ개발㈜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6	'04.11.	병설대중
	제주	㈜제주CC	제주시 영평동	9	'03.02.	병설대중
	봉개프라자	한화국토개발㈜	제주시 봉개동	9	'04.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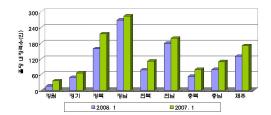
전국등록골프장 현황(2008. 12. 31 기준) - 운영중인 대중제골프장 현황(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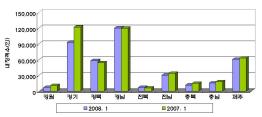
시도별	골프장명	사업자명	위 치	홀수	등록일	비고
제주	엘리시안	GS건설㈜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9	'03.02.	병설대중
	스카이	㈜호텔롯데	서귀포시 색달동	9	'05.02.	병설대중
	블랙스톤	㈜블랙스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9	'05.02.	병설대중
	수농	㈜수농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9	'05.07.	
	사이프러스	제주리조트㈜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9	'06.12.	병설대중
	에버리스	신안관광개발㈜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9	'06.12.	병설대중
	부영	남광건설산업㈜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9	'08.01.	병설대중



No6. 지역별 골프장 내장객 현황(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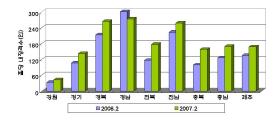
지 역	홀당내장객수		내장객수	
시 ^학	2008. 1	2007. 1	2008. 1	2007. 1
강원	17	36	6,936	11,079
경기	49	66	93,010	122,292
경북	158	215	58,383	54,277
경남	268	283	120,561	119,848
전북	77	111	6,919	5,993
전남	179	198	30,690	33,878
충북	53	79	11,964	14,986
충남	79	109	15,709	17,729
제주	130	170	60,793	62,838
계	95	117	404,965	442,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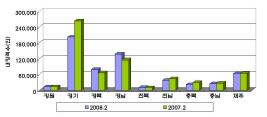




지역별 골프장 내장객 현황(2월) - 계속

지 역	홀당내장객수		내장객수	
	2008.2	2007.2	2008.2	2007.2
강원	33	43	13,740	13,867
경기	107	142	202,105	263,176
경북	213	264	78,755	66,423
경남	304	273	137,017	115,349
전북	117	177	10,524	9,552
전남	223	258	38,213	44,092
충북	99	158	22,293	29,802
충남	126	169	25,037	27,309
제주	135	167	63,325	64,537
계	139	177	591,009	634,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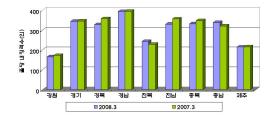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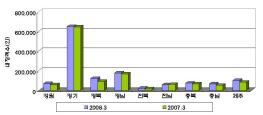




지역별 골프장 내장객 현황(3월) -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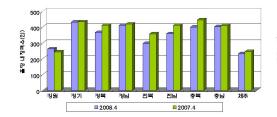
지 역	홀당내장객수		내장객수	
7 7	2008.3	2007.3	2008.3	2007.3
강원	166	173	68,777	56,075
경기	345	347	649,023	642,606
경북	329	359	121,389	90,395
경남	395	396	177,697	167,716
전북	244	229	21,971	16,496
전남	331	358	56,521	61,136
충북	333	349	74,974	65,943
충남	339	322	67,134	52,183
제주	216	217	101,150	84,163
계	315	323	1,338,636	1,236,713





지역별 골프장 내장객 현황(4월) - 계속

지 역	홀당내	장객수	내장객수	
	2008.4	2007.4	2008.4	2007.4
강원	262	243	108,524	83,270
경기	431	433	811,023	799,127
경북	365	411	141,395	103,591
경남	411	418	184,765	176,973
전북	296	357	26,647	25,677
전남	358	411	61,196	70,360
충북	399	445	100,666	84,041
충남	402	410	79,548	66,411
제주	230	245	107,593	96,856
계	378	391	1,621,357	1,506,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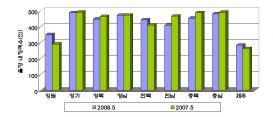






지역별 골프장 내장객 현황(5월) -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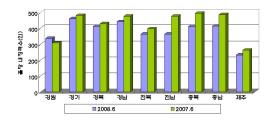
지 역	홀당내	장객수	내장객수	
7 7	2008.5	2007.5	2008.5	2007.5
강원	348	290	137,867	101,884
경기	487	490	916,788	904,631
경북	447	464	173,106	116,845
경남	471	471	212,170	199,246
전북	442	409	39,787	29,434
전남	407	465	69,604	79,439
충북	452	487	113,787	92,073
충남	480	489	94,978	79,229
제주	283	262	132,595	108,309
계	440	441	1,890,682	1,711,090





지역별 골프장 내장객 현황(6월) - 계속

지 역	홀당내	장객수	내장객수	
A =	2008.6	2007.6	2008.6	2007.6
강원	335	307	132,847	107,668
경기	459	479	874,985	891,859
경북	411	427	158,997	115,324
경남	440	474	197,948	200,637
전북	363	395	32,679	28,450
전남	362	474	61,826	80,981
충북	411	493	110,997	93,144
충남	412	484	88,975	78,373
제주	231	261	108,003	108,101
계	406	435	1,767,257	1,704,5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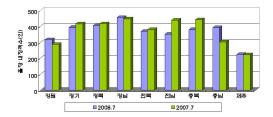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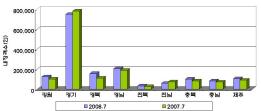




지역별 골프장 내장객 현황(7월) -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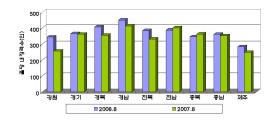
지 역	홀당내장객수		내장객수	
^1 1	2008.7	2007.7	2008.7	2007.7
강원	317	288	125,575	101,107
경기	394	417	751,854	784,479
경북	406	418	157,285	112,834
경남	457	448	205,745	189,385
전북	370	380	33,302	27,347
전남	351	440	60,071	75,222
충북	380	443	102,697	83,641
충남	393	304	84,866	72,757
제주	225	223	105,145	92,389
계	373	390	1,626,540	1,539,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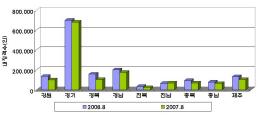




지역별 골프장 내장객 현황(8월) - 계속

지 역	홀당내	장객수	내장객수	
A =	2008.8	2007.8	2008.8	2007.8
강원	344	256	136,343	101,515
경기	366	361	698,623	679,634
경북	408	355	157,866	102,294
경남	451	414	202,772	175,256
전북	384	331	34,549	23,863
전남	387	401	66,121	68,587
충북	346	362	93,319	68,464
충남	361	352	77,965	63,282
제주	283	248	132,322	102,690
계	367	345	1,599,880	1,385,5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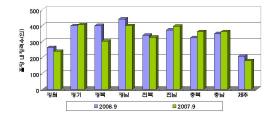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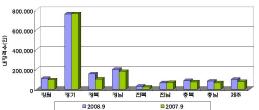




지역별 골프장 내장객 현황(9월) -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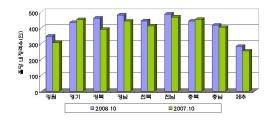
지 역	홀당내	장객수	내장객수	
^1 1	2008.9	2007.9	2008.9	2007.9
강원	262	239	108,436	94,573
경기	398	405	759,838	761,535
경북	400	302	154,633	103,196
경남	441	398	198,649	179,158
전북	339	326	30,523	23,463
전남	372	396	63,696	67,722
충북	323	361	87,188	74,669
충남	349	361	81,740	64,955
제주	207	179	100,375	77,496
계	359	350	1,585,078	1,446,7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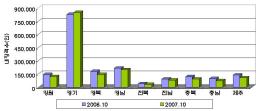




지역별 골프장 내장객 현황(10월) - 계속

7) OJ	홀당내	장객수	내장객수	
지 역	2008.10	2007.10	2008.10	2007.10
강원	347	306	143,760	121,195
경기	434	451	827,280	847,901
경북	461	391	178,529	144,129
경남	481	442	216,292	199,037
전북	443	413	39,878	29,745
전남	487	468	92,090	79,959
충북	442	453	119,376	93,730
충남	418	404	97,804	72,641
제주	283	254	137,751	107,447
계	418	408	1,852,760	1,695,7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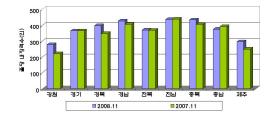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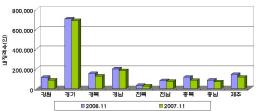




지역별 골프장 내장객 현황(11월) -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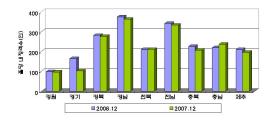
지 역	홀당내	장객수	내장객수		
^1 1	2008.11	2007.11	2008.11	2007.11	
강원	278	222	114,952	88,084	
경기	366	366	705,565	687,600	
경북	399	348	154,478	128,339	
경남	428	406	200,236	182,752	
전북	371	369	33,419	26,540	
전남	437	440	82,581	75,251	
충북	434	405	117,283	83,875	
충남	376	392	88,044	70,535	
제주	298	250	144,671	117,173	
계	368	348	1,641,229	1,460,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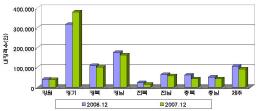




지역별 골프장 내장객 현황(12월) - 계속

지 역	홀당내	장객수	내장객수		
^1 ₹	2008.12	2007.12	2008.12	2007.12	
강원	98	97	40,423	38,440	
경기	165	102	317,426	380,593	
경북	282	276	109,077	101,697	
경남	375	364	175,685	163,709	
전북	210	211	22,645	15,224	
전남	343	334	64,828	57,101	
충북	226	207	60,951	42,800	
충남	220	237	51,536	42,790	
제주	210	196	105,937	91,789	
계	211	223	948,509	934,143	







골프산업에 대한 인식과 산업정책 만족도에 관한 의식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골프산업에 대한 인식 차이를 규명하고 인구통계적인 특성, 참여 장소, 골프산업에 대한 인식이 골프산업 정책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여 골프산업 인식에 따른 골프산업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규 명하여 이를 토대로 체계화되고, 과학적이며, 검증된 자료를 근거로 적합한 골프산업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골프산업에 대한 인식에 따른 골프산업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의식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질문에 성의껏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0월

A. 가구원의 일반구성			
1. 참여장소	① 골프장 □	② 연습장 □	
2. 성 별	① 남 □	② 여 🗆	
2 여 권	① 30대 이하 🗆	② 40대 🗆	
3. 연 령	③ 50대 🗆	④ 60대 이상 🗆	
	① 200백만원 미만 🗆	② 200~400백만원 🗆	
4. 월 소 득	③ 400~600백만원 □	④ 600~800백만원 □	
	⑤ 800백만원 이상 □	⑥ 대졸 이상 □	
	① 1년 미만 🗆	② 1~3년 🗆	
5. 골프경력	③ 3~7년 🗆	④ 7~9년 🗆	
	⑤ 10년 이상 🗆		



B. 골프산업에 대한 인식						
구 분		매우 긍적적	궁적적	보통	미약	매우 미약
1	국제교류 기대					
2	경제성장 기여					
3	고용촉진 및 증대					
4	국민소득 증대					
5	투자유치 및 개발					
6	생활의 질 향상					
7	스포츠시설 증대					
8	스포츠문화 촉진					
9	문화상품 개발					
10	시민단체 교류					
11	문화 및 정서 이해					
12	국가이미지 제고					
13	환경친화적 산업					
14	환경보존의식 제고					



C. =	C. 골프산업정책에 대한 만족도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투자유치 제도적 장치					
2	수익사업 규제완화					
3	골프산업 미디어 정비					
4	시설 및 훈련장 확충					
5	대중골프장의 양적 확충					
6	관련 세제 및 제도 개선					
7	산업체간 정보망 확보 지원					
8	e-biz 활성화					
9	마케팅 정보 및 유통망 구축					
10	국내 인증제도 도입					
11	골프산업 연구기관 기능강화					
12	전문 연구기관 및 인력 지원					
13	골프관광 상품 개발					
14	골프관광 기반시설시설 확충					
15	골프관광의 국내외 홍보 확대					
16	골프산업의 교류 지원					
17	참여스포츠 기회의 활성화					
18	적극적인 골프대회 유치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토목공학과 학 번 20067577 과 정 박사				박사	
성 명	한글 : 박 한 생 한문 : 朴 漢 生 영문 : Park, Han-Saeng					
주 소	서울 송파구 가락동 극동아파트 4동 604호					
연락처	E-MAIL : typhoon94@naver.com					
노 ㅁ	한 글 : 골프산업 인식에 따른 정책만족도에 관한 연구					
논 문 제 목	영 문 : A Study of Golf I		Satisfaction accord	ling to rec	cognition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 반대 ()

2009년 04월

저작자: 박 한 생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